

2014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8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4. 7. 9 (수요일), 14:00 ~ 19:4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김정배, 고희령, 김권구, 김종일, 노중국,  
박소현, 손영식, 이재근, 채미옥, 최성락,  
홍승재(이상 11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목 차

## 【심의사항】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2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내 야간경관조명 신설(허가사항 변경허가)	
3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순성안내쉼터 조성	
4	사적 제86호 성주 성산동 고분군 내외 전시관 건립 및 탐방로 정비	
5	사적 제232호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주변 이순신 순국 공원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6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주변 수질복원센터 부지 조성	
7	사적 제125호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8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과 건릉 주변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 시설 설치	
9	사적 제477호 상주 복룡동 유적 내 공원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10	사적 제496호 김제 금산사 일원 내 처영기념관 신축	
11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신축	
12	사적 제503호 보은 범주사 내 설법전 개축	
13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내외 녹지조성 공사	
14	사적 제30호 경주 흥덕왕릉 보호구역 내 정비 공사	
15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보호구역 내 하수도 확충 공사	
16	사적 제191호 고양 공양왕릉 주변 운동시설 등 설치	
17	사적 제269호 하남 미사리 유적 주변 근린생활 시설 신축 등	
18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주변 관광호텔 신축	
19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20	사적 제210호 양주 온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21	사적 제329호 용인 서리고려백자 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22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23	사적 제522호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안) 마련	
<b>【검토사항】</b>		
24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25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 사적 추가지정 검토	
26	사적 제381호 여수 충민사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검토	
27	사적 제164호 진주 평거동 고분군 사적 지정 해제 검토	
28	당진 솔피마을 천주교 성지 사적 지정 검토	
29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 지정명칭 변경 검토	
30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옛 서울시장공관 리모델링 검토	
31	사적 제441호 시흥 오이도 유적 종합정비 사업 검토	
32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안) 협의 요청 검토	
<b>【보고사항】</b>		
33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축성 600주년 기념 중장기 정비계획(안) 보고	
34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성벽 위험구간 조치계획 보고	
35	사적 제194호 서울 현릉과 인릉 산책로 관리계획 보고	
36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5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3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4-08-001

###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2권역과 3권역에 속하는 22필지 2,992㎡를 추가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4년 문화재위원회 제6차 회의('14.5.14.)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2014.5.21.(공고 제2014-139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의견없음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지정신청
  - 기존지정 면적 : 1,065필지 344,373.6㎡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22필지 2,992㎡
  - 추가지정 후 면적 : 1,087필지 347,365.6㎡
- (4) 지정사유
  -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4.04.24)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으로 향후 유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82-5	대	179	179		
2	"	87-30	대	185	185		
3	"	126-97	대	99	99		
4	"	165-4	대	208	208		
5	"	144-18	대	112	112		
6	"	141-6	대	99	99		
7	"	306-27	대	142	142		
8	"	230-11	대	165	165		
9	"	298-15	대	116	116		
10	"	142-23	대	159	159		
11	"	142-111	도로	6	6		
12	"	222-128	대	149	149		
13	"	252-17	대	176	176		
14	"	126-22	대	175	175		
15	"	133-16	대	174	174		
16	"	222-51	대	136	136		
17	"	151-8	대	119	119		
18	"	222-99	대	119	119		
19	"	94-16	대	93	93		
20	"	175-2	대	238	238		
21	"	130-3	대	126	126		
22	"	126-73	대	17	17		
합계		22필지		2,992	2,992		

## 2. 서울 한양도성 내 야간경관조명 신설(허가사항 변경허가)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내에 야간경관조명을 신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인왕구간 2km구간 중 950m 구간에 야간경관조명을 신설하고자 2013년도 제13차 문화재위원회('13.11.13) 회의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설치개수 및 위치 등을 조정하여 허가사항 변경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중구, 종로구 등 일원
- (3) 신청내용<한양도성 인왕지구 야간경관조명 신설>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산3번지 40호 등(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시설구간 : 923m
    - 조명유형 : LED(광원), 3000K 백색(색온도)
    - 설치방법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여장부분 조명연출	30개, LED 20W×2개 기존 전신주 활용	70개, LED 20W×2개 목재폴(4m)	40개 증
성벽내측 투광조명	47개, LED 20W 석재함	33개, LED 20W 석재함	14개 감
성벽내측 난간조명	369개, LED 3W×2개 난간(0.5m)	41개, LED 20W 목재폴(1.2m) 블라드형 투광조명	328개 감
계	446개	144개	

##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의견('13.11.08/문화재위원 ○○○, ○○○)

- 본 건은 광화문을 중심 조망점으로 설정하고 광화문에서 조망되는 인왕산의 한양도성 성곽이 야간에도 효과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한양도성 인왕지구 약 2km 구간 중 950m 구간에 야간경관조명(LED)을 신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야간조명 계획은 높은 조명으로 기존 전신주(1992년 경 설치 추정/높이 약 16m) 5개소를 활용하는 구간(연장 약 180m), 낮은 조명으로 성곽 내부(620m/성곽과 약 4~5m 이격)와 외부(150m/성곽과 약 2m 이격)의 지면에 조명을 설치하는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음
- 서울 한양도성은 많은 구간에 걸쳐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시는 한양도성 경관조명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설치하거나 성곽과 이격하여 지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3.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순성안내쉼터 조성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순성안내쉼터를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에 한양도성 정보를 제공 및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순성안내쉼터를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 중구, 종로구, 성북구 일원
- (3) 신청내용<한양도성 순성안내쉼터 조성>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7-1(문화재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부지면적 : 110m<sup>2</sup>
    - 건축면적 : 36m<sup>2</sup>
    - 높이 : 2.3~4.3m
    - 조성시설 : 계단형 벤치, 정보게시대, 파고라
    - 재료 및 제작방법
      - 파고라 구조물 : 스틸 플레이트 위 도장(경량구조 건식법)
      - 정보안내벽체 : 반사재 스틸플레이트(비노출식)
      - 벤치 및 계단 : 석재(개비온) 위 목재 깔기

## 라. 참고사항

### (1) 2차 현지조사의견('14.07.07/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서울 한양도성의 인왕산 구간 순성로 진입부의 보호구역내에 기존 정자와 운동시설을 철거하고 건축면적:36㎡, 높이:2.3~4.3m의 지붕을 구성하여 정보안내판과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형을 이용하여 계단(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지붕을 씌우는 것으로 공모안을 선정되었음
- 현지조사에서 일부 절토가 수반되는 곳이 있어 이를 지형을 이용하여 절토 없이 계획된다면 경관개선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 1차 현지조사의견('14.07.03/문화재위원 ○○○)

-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진입부분에 설치된 기존의 파고라 및 운동시설을 철거하여 한양도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현재의 지형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계단형 벤치와 스틸 지붕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는 성곽주변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짐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검토의견대로 함.
  - \* 시설명칭은 알기쉬운 용어로 변경

## 4. 성주 성산동 고분군 내외 전시관 건립 및 탐방로 정비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성주군 소재 사적 제86호 「성주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건립 및 탐방로 정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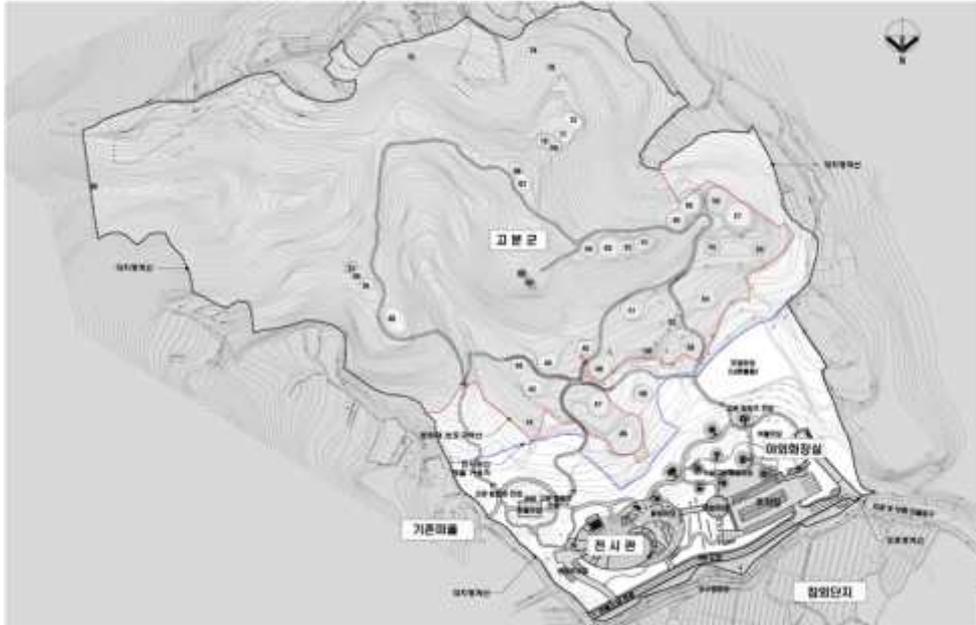
- 성주 성산동 고분군 주변의 전시관 건립과 사적지 내 탐방로를 정비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성주 성산동 고분군(사적 제86호)
  - 소재지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산 61번지
- (3) 신청내용<전시관 건립 및 탐방로 정비>
  - 위치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823번지 일원(지정구역, 1구역)
  - 사업내용
    - 전시관 건립(1구역)
      - 대지면적 : 47,386㎡(14,334평)
      - 건축면적 / 연면적 : 2,450㎡(741평) / 2,600㎡(786평)
      - 규모 및 구조 : 1동, 지하1층/지상1층, 철근콘크리트구조
    - 도로개설로 이전했던 유구의 석실고분체험장 설치(1구역)
    - 탐방로 정비(지정구역)

## 라. 참고사항

### ○ 전체 배치평면도



### ○ 조감도



## 마. 의결사항

### ○ 조건부가결

- 시·발굴조사 선행, 전시계획 등 가시화 필요

## 5.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주변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 (허가사항 변경허가)

###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사적 제232호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주변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14년 사적분과 제7차 위원회('14.06.11)에서 '성·절토 최소화 계획을 제출 받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었으나, 남해군으로부터 국도 19호선 도로폭 확장과 관련하여 성·절토 최소화계획 등 보완자료가 제출('14.6.27)되어 재상정함
-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주변에 이순신 순국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1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8차 회의('11.07.13) 시 조건부 가결되었으나, 당초허가조건의 일부가 이행이 불가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부지 인근에서 시행 중인 국도 19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허가조건 중 ①이락사 부분과 기존 산 지형과 연계 필요, ②진입도로 위치는 유적지에서 이격하여 조성, ③4차선 도로와 공원부지의 차폐식재와 관련된 사항을 금번에 변경허가 신청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사적 제232호)
  - 소재지 :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산125번지 등
- (3) 신청내용<이순신 순국공원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723번지 일원

○ 내용

구분	당초 허가내용('11.7.13/'14.3.28)	금회 신청내용	비고												
부지면적	87,586㎡	좌동													
건축면적	1,404.68㎡	좌동													
규 모	지상 1층, 지하 1층	좌동													
최고높이	12m	좌동													
사업내용	○ 휴양 및 편의시설, 교양시설, 광장시설물, 주차장 조성 등 - 하늘바다휴게소, 추모의제단, 각서공원, 이순신밥상체험관, 리더쉽체험관, 시골장터	좌동													
허가조건	상징조형물 현상공모 또는 제외하는 방안 검토	현상공모 추진예정													
	하천의 동선은 곡선형으로 조정	허가조건 기이행													
	테마파크적 요소는 지양하고 자연적 요소로 조성	허가조건 기이행													
	화려하지 않은 수목을 선택하여 배식 필요	허가조건 기이행													
	이락사 부분과 기존 산 지형과 연계 필요	국도 19호선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개착터널(안)을 기존도로를 보완활용하는 것으로 재조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당초 ('14.06.11)</th> <th>보완 ('14.06.27)</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절토고</td> <td>5.61m</td> <td>5.93m</td> <td>증 0.32m</td> </tr> <tr> <td>성토고</td> <td>4.49m</td> <td>1.0m</td> <td>감 3.39m</td> </tr> </tbody> </table> <p>※ 기존도로(국도 19호선) 폭 확장 시 성토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이락사 전면의 기존 산지형을 절토하게 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절토고가 높아짐</p>		당초 ('14.06.11)	보완 ('14.06.27)	비고	절토고	5.61m	5.93m	증 0.32m	성토고	4.49m	1.0m	감 3.39m	
		당초 ('14.06.11)	보완 ('14.06.27)	비고											
	절토고	5.61m	5.93m	증 0.32m											
성토고	4.49m	1.0m	감 3.39m												
진입도로 위치는 유적지에서 이격하여 조성	국도 19호선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진입도로 위치 재조정														
4차선 도로와 공원부지의 차폐식재	국도 19호선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재조정														
기타	-	국도 19호선 노선변경 및 진입도로 위치 조정으로 순국공원 조성사업 내용 일부 변경 - 소형 주차장 면수 감소 (당초 199면 → 변경 169면) - 회전 교차로 화단 조성(A=180㎡) - 국도 19호선 도로와 연결한 법면(절토구간) 전통 석축쌓기 및 차폐식재 추가													

## 라. 추진경과

- 2011.06.08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부결
- 2011.07.13 : 내용 보완 후 재심의를 통한 조건부 가결
- 2011.08.24 : 허가조건 이행을 위한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사업 진출입로 위치 변경 협의(남해군→부산지방국토관리청)
- 2011.09.09 : 진출입로 변경(안) 수용곤란 회신(부산지방국토관리청→남해군)
- 2012.01.02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남해군)
- 2012.02.08 : 문화재위원회 심의(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2012.02.23 : 문화재청 현지조사(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2012.05.21 : 현상변경 허가조건 이행계획서 제출(남해군→문화재청)
  - 국도 19호선 확장과 관련, 개착터널 및 진입로 위치변경(안) 제출
- 2012.05.27 : 허가조건 이행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문화재청→남해군)
  - 개착터널은 이락사와 맞은편 지형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간의 길이를 당초(60m)보다 연장하여 문화재로부터 조망되지 않도록 계획 보완
  - 터널의 중심은 이락사 축과 일치시켜 좌, 우 대칭될 수 있도록 보완
  - 진입로 부근 조경계획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적절한 수종과 위치를 검토하여 설계변경 후 식재할 것
- 2013.11.05 : 개착터널 시공관련 관계전문가 자문(문화재위원 ○○○, ○○○, ○○○)
  - 국도 19호선 확장공사는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형질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존도로를 보완 활용토록 함
- 2014.03.28 : 허가사항 변경허가(1차, 허가기간 연장)
  - 당초 : 2011.7.15~2014.3.30 / 변경 : 2011.7.15~2014.6.30
- 2014.06.11 : 문화재위원회 심의(2차, 허가사항 변경허가)
  - 보류 : 성·절토 최소화 계획을 제출받아 재검토
- 2014.06.27 : 보완자료 제출(남해군→문화재청)

## 마.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3.11.05/문화재위원 ○○○, ○○○, ○○○)

- 상기 건(국도 19호선 확장공사)과 관련하여서는 이락사의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도로가 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락사 앞을 통과하는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방식이 이락사 주변의 형질을 최소로 변경하는 방식이라고 판단되므로 기존도로를 보완하여 활용하기 바람
- 형질변경이 크게 생기는 터널공사는 피하기 바람

## (2) 남해군 검토의견

- 기 조건부 허가된 사항 중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 중인 국도 19호선 공사와 관련한 이락사 부분과 기존 산 지형과 연계, 진입도로 위치는 유적지에서 이격하여 조성, 4차선 도로와 공원부지의 차폐 식재(안)에 대한 심의로, 당초 문화재위원의 심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존 국도노선을 활용하여 남해 이충무공 유적 앞을 통과하는 국도 19호선의 노선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음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6. 익산 제석사지 주변 수질복원센터 부지 조성

###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주변에 수질복원센터 부지 조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익산 제석사지 주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 부지를 조성하려는 사항임
- 2014년 사적분과 제7차 위원회('14.06.11)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제석사지(사적 제405호)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번지
- (3) 신청내용<수질복원센터 건립>
  - 위치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887-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20m 이격/3, 4구역)
  - \*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 4구역 :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공통사항 :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은 개별심의
  - 사업내용
    - 부지면적(수질복원센터 이외의 산업단지 일부면적 포함)

구분	소계(m <sup>2</sup> )	3구역(m <sup>2</sup> )	4구역(m <sup>2</sup> )	비고
녹지	6,282	921	5,361	
도로	12,888	1,177	11,711	
저류지	6,022	6,022	-	
수질복원센터	22,385	20,716	1,669	- 수질복원센터 총 면적 : 26,000m <sup>2</sup> - 3·4구역 면적 : 22,385m <sup>2</sup> - 허용기준 이외 면적 : 3,615m <sup>2</sup>
산업시설용지	11,084	-	11,084	
합계	58,661	28,836	29,825	

- 단계적 현상변경 허가신청
  - 1차(금회) : 수질복원센터 부지 조성 및 위치 등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 2차 : 저류지, 폐수처리장 등 수질복원센터 조성

## 라. 참고사항

### (1) 2차 현지조사의견('14.07.04/문화재위원 ○○○, ○○○, ○○○, ○○○,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익산 제석사에서 220여 미터 이격된 식품클러스터 부지 내 수질복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질복원센터 부지를 확대하여 완충녹지구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부지 내 오수처리 시설은 문화재로부터 최대한 이격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 1차 현지조사의견('14.05.29/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 본 현상변경 허가 건은 문화재에서 약 200m이상 이격되었고, 큰 규모의 시설물이 들어서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은 진행하되, 배치와 시설물, 수질처리 방법과 농도 등에 대해 사업시행 시 상세계획을 작성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 신청계획안에서 관리동은 제석사와 최대한 이격하고 저류지와 오폐수처리 시설 상부는 공원화하면서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조정하며, 수질복원센터 관리동 건축계획은 고도의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질복원센터 설치에 있어 다음 사항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하시설이지만 악취 포집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 악취발생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  
(초기 모니터링에 대한 대책 강구)
  - 빗물 저수지로 방류수가 유출되어 공원화하기 위해서는 고도(高度)수처리 시설을 통해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공정을 수립

마. 참고자료

(1) 수질복원센터 단면도 및 배치도



(2) 타 하수처리장 악취 측정현황 (측정단위 : 배수)

폐수 처리장	측정지점	측정치	허용기준 (회석배수)	명칭	측정지점	측정치	허용기준 (회석배수)		
익산 국가산단 폐수처리장 (3만톤)	1	유입시	669	-	수지 레스 피아 (11만톤)	유입시	-	-	
		배출구	373	500이하		유입시	-	-	
	2	유입시	300	-		타워	배출구	66	500이하
		배출구	173	500이하		정문	부지경계선	3	15이하
88년부터 가동	3	부지경계선	4	15이하	인접	부지경계선	4	15이하	
	4	부지경계선	4	15이하	후문	부지경계선	3	15이하	

\* 자료출처 : 익산시

**(3) 타 하수처리장의 악취발생 조사결과(익산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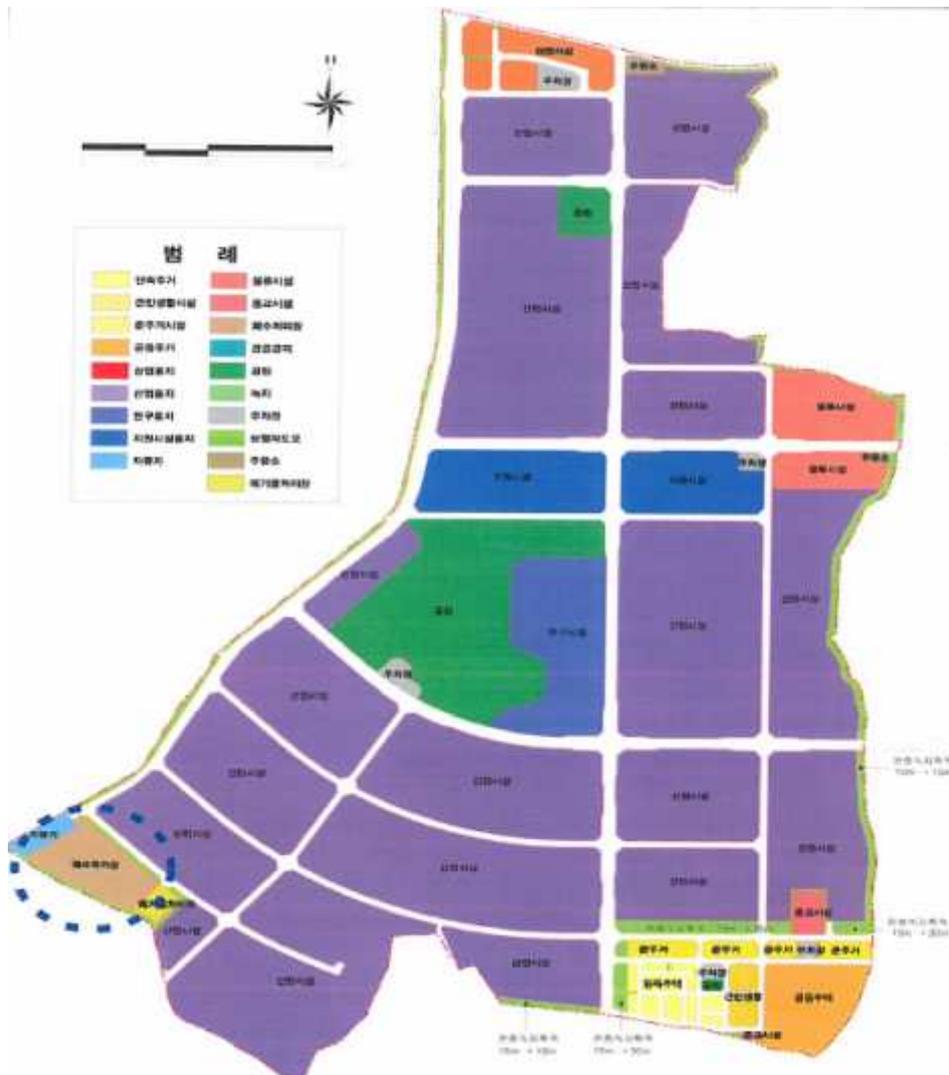
- 가동 후 26년이 경과한 인접 익산국가산단 폐수처리장의 경우에도 악취 측정현황 및 탐문결과 악취발생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 비교적 최근에 가동된 수지 레스피아는 익산 국가산단보다 악취발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 기술발달 등을 고려할 경우 금회 시공하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악취 발생은 수지 레스피아 수준으로 맞추겠음

**(4)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부지 추진경과**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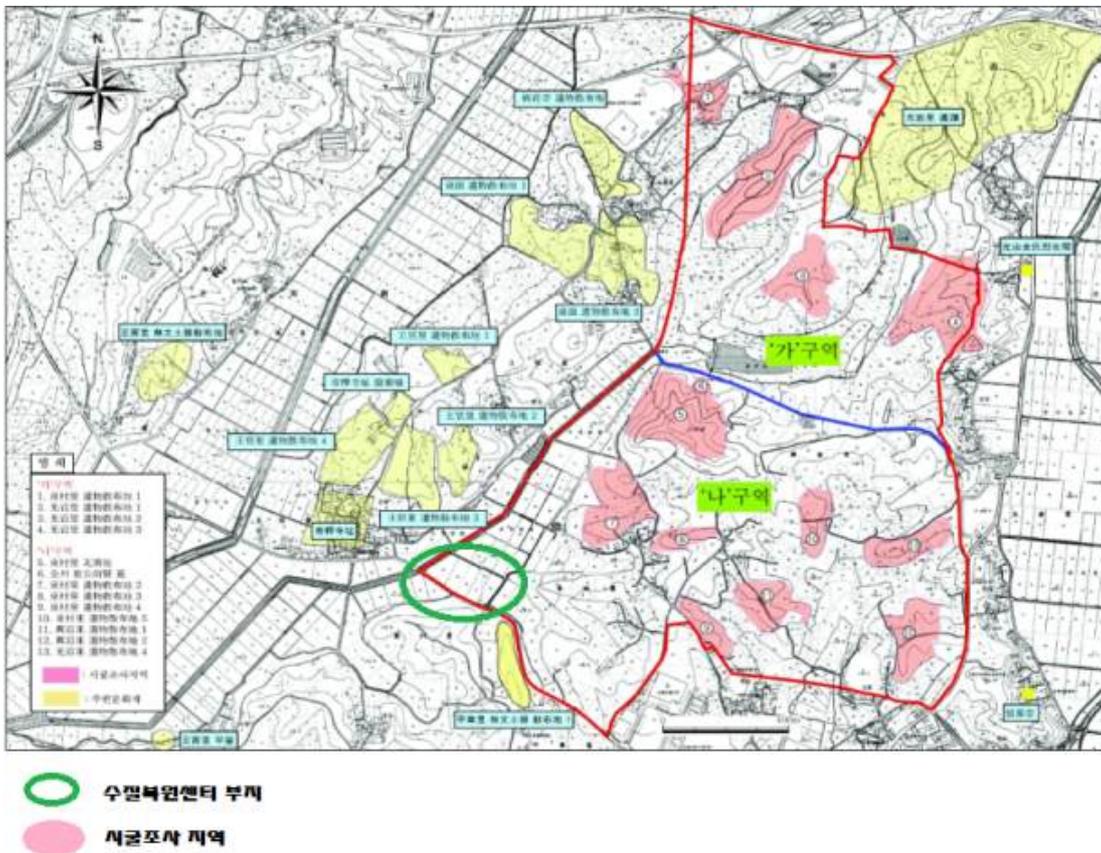
조성규모(m <sup>2</sup> )				착공일	준공일	현공정 (%)
계	분양면적	처리장부지	기타			
2,322,676	1,717,693	26,000	578,983	'14.03	'16.12	-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부지 매장문화재 조사 추진 현황
  - 주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 지표조사/발굴조사기관 :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재)한국고고환경연구소
  - 조사경과
    -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2009.3.30 ~ 6.2 / 현장조사 12일)
      - : 조사결과 동촌리유물산포지1 등 유물산포지 12개소, 고묘 1개소 확인
      - 문화재위원회 의견('11년 12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2011.12.23) : 원안가결
      - ※ 수질복원센터부지는 지표조사 결과 유적 및 유물이 확인되지 않음
    - 문화재 시굴조사 실시(350,798㎡ / 허가기간 : 2014.2.12 ~ 2014.6.29)
      - :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동촌리유물산포지1 등 유물산포지 12개소에 대한 시굴조사 실시(발굴허가/13.12.18)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확인 현황(지표조사보고서)>



## 바. 의결사항

- 보류
  -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시설계획 보완 후 재검토

## 7.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5호 「종묘」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사적125호 종묘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42m 이격된 곳(3구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강○○
- (2) 대상문화재명 : 종묘(사적 제125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 1-2호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91, 92-1호(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42m 이격 /3구역(건물최고 높이 평지붕14 m(경사지붕17m)))
  - 사업내용

구분		신청내용('14.07.09)	비 고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94.50㎡	
	건축면적/연면적	63.7㎡/318.5㎡	
	최고높이	평지붕 20.0m(지상 5층)	
	이격거리	42.0m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07.01/문화재위원 ○○○, ○○○, ○○○)
  - 본 신청 건은 종묘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42m 이격된 위치에 최고 높이 20m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사항임(현상변경 허용기준의 3구역 <평지붕 14m, 경사지붕 17m>에 해당)

- 본 건의 경우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나, 허용기준 고시 이후에도 신청지 북쪽돈화문과 종묘 사이 비슷한 이격거리(허용기준 3구역)에 개별적으로 신청된 2건이 사적분과 심의('11년, '12년)를 통하여 허가된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8.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

###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에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90m 이격된 곳(4구역, 7구역)에 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본 위원회 사적분과 심의('12.12.12/'13.2.13/'13.04.10)에서 3차례 '부결'되어 신청인이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재신청한 사항으로, 지난 제7차 사적분과회의('14.06.11)에서 현지조사 후 재검토로 보류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안녕동)
- (3) 신청내용<공동주택 및 도시기반시설 설치>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15-222외 27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90m 이격/4, 7구역)
    - \* 4구역 : 건물최고 높이 : 평지붕 11m(경사지붕 15m)
    - \* 7구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사업내용(구역외 포함 총 면적:70,693㎡→66,097㎡(4,596㎡,감), 19개동→12개동(7동,감))

구분		1차('12.12.12/부결)		3차('13.04.10/부결)		금회('14.6.11)		비 고 (1차↔금차)
		4구역	7구역	4구역	7구역	4구역	7구역	
공동주택	부지면적	15,527㎡	8,863㎡	좌동	좌동	12,429㎡	8,540㎡	총 3,421㎡, 감
	규모	11층~15층 7동	13층~15층 3동	10층~12층 7동	13층~15층 3동	10층~12층 4동	12층~15층 2동	4구역 3층 감 3개동 감
	최고높이	44.8m	44.8m	37.70m	46.25m	36.25m	44.8m	4구역 8.55m,감
	이격거리	317~470m	441~500m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변동없음
도시기반시설 등	도로	3,716㎡ 폭 11~23.5m	2,527㎡	좌동	좌동	5,506㎡	2,950㎡	2,213㎡ 증
	완충녹지	1,595㎡	-	좌동	-	1,230㎡	-	365㎡ 감
	공원	3,643㎡	1,304㎡	좌동	좌동	2,167㎡	-	2,780㎡ 감

※ 2차('13.2.13/부결)심의 : 건물10동 11층~15층(최고높이 4구역=40.55m/7구역=46.25m)

## 라. 참고사항

### (1) 3차 현지조사의견('14.07.04/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신청 건은 2012.12.12. 1차 문화재위원회심의 부결 후 4차에 걸쳐 보완되어 심의 요청된 사항으로 아파트 세대수의 축소, 건물높이의 하향조정 등의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용건릉과 본 대상지 사이에는 25m 폭의 서부우회도로가 나 있어 녹지가 단절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폭 10m 이상, 길이 200m 이상의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여 교목으로 차폐식재가 요구됨
- 이를 전제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 (2) 2차 현지조사의견('14.06.05/문화재위원 ○○○)

- 본 신청 안건은 용건릉 북측에 위치하여 해당문화재로부터 시선은 열려있지 않지만 문화재의 역사문화 경관의 관리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됨
- 본 신청 대지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청대지에 접하면서 서측과 서북측에서 용·건릉으로 이어지는 래(來)맥의 지형은 향후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3) 1차 현지조사의견('12.11.21/문화재위원 ○○○)

- 화성 용릉과 건릉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나 구릉성 지형의 훼손이 심함  
- 표고(45m~20m)차가 있는 지형의 절·성토를 통한 지반 평탄화 작업 후 11~15층 APT건립.

- 지형 훼손을 최소화 하는 건물 배치 및 입지계획 필요.
- 화성 용릉과 건릉 높이, 인근 신미주 아파트 높이, 동 사업 부지의 건물 높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 보강 필요.
- 추후 용건릉 인근의 건물 배치 및 차단녹지 설치, 방음벽 설치에 대한 계획 조정 필요

#### (4) 지자체 의견('13.03.27/화성시 의견)

- 위 사업은 기존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된 사항으로 이번 신청에서 건축물 높이를 재조정(10~15층) 하여 접수한 사항이나, 4구역의 허용 기준안을 초과하므로 문화재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3차) 현지조사의견대로 함

## 9. 상주 복룡동 유적 내 공원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상주시 소재 사적 제477호 「상주 복룡동 유적」 내 공원 조성 사업 중 화장실 설치와 공사기간 연장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상주 복룡동 유적 내 화장실 설치와 공사기간 연장 신청하는 사항으로, 전차 심의 시 부결되어, 금회 사업내용을 조정하여 다시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상주 복룡동 유적(사적 제477호)
  - 소재지 : 경북 상주시 복룡동 230-3 일원 283-7
- (3) 신청내용<화장실 신축 및 공사기간 연장>
  - 위치 : 경북 상주시 복룡동 283-7(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화장실 신축

구분	1차 신청	금회 신청	비고
층수 및 높이	1층, 높이 6.0m	1층, 높이 3.2m	높이 2.8m 감
형태	풍차형태	경사지붕형태	디자인 변경
구조	경량목구조	경량목구조	변경없음
건축면적	54m <sup>2</sup>	44m <sup>2</sup>	10m <sup>2</sup> 감

- 공사기간 연장 : 2011.11.24~2015.05.31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05.07/문화재위원 ○ ○ ○)
  - 새롭게 건축하려는 시설물이 사적공원 내의 화장실인 점을 고려할 때 설치할 필요성은 인정됨

- 그러나 화장실의 규모와 외관은 유적공원의 성격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하며, 화장실의 건축위치도 발굴결과 확인된 유구의 위치를 고려하여 필요 시 재조정하기 바람(발굴여부 확인 후)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0. 김제 금산사 일원 내 처영기념관 신축

###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김제시 소재 사적 제496호 「김제 금산사 일원」 내에 처영기념관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문화재구역 내 처영기념관을 건립하는 사항이 문화재와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 2010년도 제10차 사적분과 심의 시('10.10.27.) 가결되었으나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허가기간이 경과하여 재신청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금산사주지
- (2) 대상문화재명 : 김제 금산사 일원(사적 제496호)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처영기념관 신축>

구분	허가	금회신청	비고
위치	금강문~천왕문사이 마당		
규모	면적 654.54㎡ 높이 12.93m	면적 730.35㎡ 높이 13.08m	76.35㎡ 증 0.15m 증
양식, 구조	정면 11칸, 측면 5칸, 팔작지붕, 겹처마 이별대 장대석기단		
조경	차폐수목 식재		
기타	화장실 면적 68.04㎡	화장실 면적 82.22㎡, 평면 조정	14.18㎡ 증

### 라. 의결사항

- 보류
  -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조치 후 재검토

## 11.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신축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종로구, 성북구 일원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 11-99(문화재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35.4m<sup>2</sup>
    - 건축면적 : 11m<sup>2</sup>
    - 연면적 : 19.94m<sup>2</sup>
    - 규모 : 지상2층(높이 6.3m)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 기존 조립식 건물 : 건축면적 18.54m<sup>2</sup>

###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검토의견('14.06.30/문화재전문위원 ○○○)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에 기존의 조립식 가건물(샌드위치 판넬)을 철거하고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 부지가 한양도성에 가장 인접되어 있어 2층으로 신축할 경우 현재보다 3m 이상 높게 건립되어 성곽의 조망을 차폐하게 되므로 경관상 크게 저해할 것으로 판단됨

## (2) 서울시 한양도성 도감 의견

- 신청 지역은 서울 한양도성의 보호구역으로 한양도성 보존 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에서도 관리기준을 유산구역(문화재구역+보호구역)은 건축물, 시설물의 설치 등 건축행위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12. 보은 법주사 내 설법전 개축

###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 사적 제503호 「보은 법주사」 내 설법전을 개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보은 법주사 문화재구역 내에 위치한 동암에 설법전을 개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사적분과 제6차위원회('14.05.14) 시 '위치 및 규모 재검토'를 사유로 부결되었으며, 규모 및 위치 등을 변경하여 신청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권○○
- (2) 대상문화재명 : 보은 법주사(사적 제503호)
  - 소재지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동암 설법전 개축>
  - 위치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209번지(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구분	기존 설법전 현황	'14.5.14 심의	금번 신청
대지면적	5,524㎡	좌 동	좌 동
건축면적(연면적)	109.35㎡	68.85㎡	68.85㎡
규모	지상1층(반지하)	지상1층(6.4m)	지상1층(6.1m)
구조	시멘트벽돌구조	한식목구조 (정면5칸, 측면2칸)	한식목구조 (정면5칸, 측면2칸)
양식	-	겹처마, 팔작지붕, 초익공양식	홀처마, 맞배지붕, 초익공양식
위치	동암 동편	동암 협문	동암 동편

## 라. 참고사항

### (1) 기존심의 시 관계전문가 검토의견('14.04.29/문화재위원 ○○○)

- 현재의 설법전이 암자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경역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암자의 전체적인 경관을 고려하여 대응전보다는 건물규모와 기단이 낮아지는 소박한 규모로 개축되어야 될 것임
- 대지 종·횡단면도를 작성하여 개축되는 설법전과 주변 건물과의 고·저차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이며, 공포의 양식은 좌·우 승방과 같은 초익공 형태의 간단한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개축되는 설법전은 기존 담장을 따라 헐문을 철거하고 정면에 신축되는 것이므로 오·폐수가 하천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의견대로 함

### 13. 수원 화성 내외 녹지조성 공사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내외 녹지조성 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수원 화성 성곽 외부(장안문~화홍문) 지역에 녹지를 조성하려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수원 화성(사적 제3호)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55-23일원
- (3) 신청내용<녹지조성 공사>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45-5번지 일원
  - 내용
    - 면적 : 약 7,200㎡, 성토 392㎡, 불력건기 등 포장 공사
    - 현장 내 수목 이식 느티나무 등 261주, 수목 식재 배롱나무 등 3,826주
    - 기타 부대공사

####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14. 경주 흥덕왕릉 보호구역 내 정비 공사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0호 「경주 흥덕왕릉」 내 정비 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흥덕왕릉 내 정비공사를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흥덕왕릉(사적 제30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산42번지

(3) 신청내용 <경주 흥덕왕릉 진입부 화장실 건립 및 주변 정비>

-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육통리 산42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세부내역	사업규모
임시화장실 철거	- 이동식 화장실 1동 철거(A=4.89㎡) - 인터로킹 철거(A=14.76㎡) - 화강석 경계석 철거(A=4.6㎡) - 자연석 배수로 철거(L=7.0m)
화장실 건립	- 화장실 1동 건립(A=12.96㎡) - PE오수받이 1개소 설치, D200 이중벽관(오수) 25.0m
주변정비 공사	- 자연석 석축 설치(L=9.0m), 집수정 설치 - DE200 이중벽관(우수)(L=10.0m) 등

- 사업예정기간 : 허가일로부터 3개월

- 사업비용 : 90,900천원(도비 50,000천원 시비 40,900천원)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4.06.02/전문위원 ○○○)**

- 본 건물은 경주 흥덕왕릉 지정구역 내에 있는 기존 간이 화장실을 철거하고 전통 한옥 양식의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이 필요하기는 하나, 흥덕왕릉과 제실 사이에 위치하여 그 위치가 적절치 않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위치는 조정하도록 함

## 15. 경주 문무대왕릉 보호구역 내 하수도 확충 공사

###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58호 「경주 문무대왕릉」 인근 수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주 문무대왕릉 인근 수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위하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문무대왕릉(사적 제158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앞 해중(대왕암)
- (3) 신청내용<수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 위치 :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산 112-1번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동
    - 면적 1,569㎡, 지하2층 연면적 186.88㎡, 건물최고높이 0.95m



<사진. 준공예상도(동일시설물)>

- 사업예정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사업비 : 1,072백만원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4.06.02/전문위원 ○○○)

- 본 건은 경주 문무대왕릉 보호구역 내 해안가 변으로 주변 마을의 오수 처리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정비를 위하여 주변시설을 철거하고 정비하고 있는 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16. 고양 공양왕릉 주변 운동시설 등 설치

###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91호 「고양 공양왕릉」 주변 운동시설 등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고양 공양왕릉 주변에 운동시설(구기장, 풋살장) 및 가설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한○○
-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공양왕릉(사적 제191호)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65-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운동시설 및 부대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03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5m 이격)
  - 내용
    - 신청면적 1,715㎡, 건축면적/연면적 84㎡/84㎡, 최고높이 4.5m, 지상 1층

###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17. 하남 미사리 유적 주변 근린생활 시설 신축 등

### 가. 제안사항

경기도 하남시 소재 사적 제269호 「하남 미사리 유적」 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하남 미사리 유적 주변에 근린생활 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사항임
  - 동 건은 지난사적분과 소위원회 제3차 회의('14.04.24)에서 조건부 허가 (발굴조사 실시 및 관계전문가의 설계검토를 받도록 함.)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김○○
- (2) 대상문화재명 : 하남 미사리 유적(사적 제269호)
  -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557-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95-16번지의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7.9m 이격)
  - 내용
    - 사업면적 330㎡, 건축면적/연면적 189.54㎡/296.32㎡, 지상 2층, 최고높이 9.7m, 일반 철골조
    - ※ 지난소위원회 신청내용(조건부 허가)
    - 위치 :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95-2번지의 2필지(이격거리 7.9m)
    - 내용 : 단독주택 신축, 사업면적 330㎡, 건축면적/연면적 68㎡/68㎡, 지상 2층, 최고높이 7.5m, 일반 철골조

## 라. 참고사항

### (1) 기 조건부허가 신청 건 현지조사의견('14.04.18/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하남 미사리 유적에서 약8m 이격된 1구역(보존구역)에 건축면적:68㎡, 연면적: 68㎡, 높이:7.5m, 지상 2층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미사리 유적은 현재 한강 제방으로 성토된 5m 지하에 존치되고 있으며, 연접하여 건물들이 잔존하고 있고, 현상변경 심의에서 단층 5m 규모의 단독주택이 허가되어 연접필지에 건립되어 있는 바, 단층 5m 정도의 규모에서 건축이 허가된다면 역사문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룰 것으로 판단됨. 단, 유물산포지에 해당하므로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18. 서울 탐골공원 주변 관광호텔 신축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354호 「서울 탐골공원」 주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탐골공원에서 약 68m 이격된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서○○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탐골공원(사적 제354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38-1
- (3) 신청내용<관광호텔 신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34-2번지 외 7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68m 이격/3구역)
  - \* 3구역 : 문화재구역 경계지표면에서 높이 12m 기준하여 양각 27° 적용, 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622.40m<sup>2</sup>
    - 건축면적 : 372.73m<sup>2</sup>
    - 연 면 적 : 4,638.06m<sup>2</sup>
    - 규 모 : 지하3층, 지상13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벽식구조
    - 외벽재료 : 벽돌 타일, 목재, 로이복층유리

##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검토의견('14.07.07/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서울 탑골공원에서 68m 이격된 3구역(문화재구역 지표 경계로부터 높이 12m 기준하여, 양각 27°적용/공통사항:아파트 신축 및 재건축(재개발)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에 건축면적:372.73㎡, 연면적:4,638.06㎡, 높이:49.870m, 지하3층, 지상13층의 호텔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에서 직접 인지되지 않고,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높이를 충족하며 대단위 필지의 개발이 아닌 소규모 개발로서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19. 이천 설봉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이천시 소재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이천 설봉산성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난 사적분과 회의('13.04.10), ('13.05.29), ('13.07.10)에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사유로 부결되어, 설계변경 후 재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유○○ 외 1인
- (2) 대상문화재명 : 이천 설봉산성(사적 제423호)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산24번지
- (3) 신청내용<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164-23(문화재구역으로부터 430m 이격)
  - 사업내용
    - 대지면적 9,408㎡ 건축면적/연면적 458.72㎡/458.72㎡ 규모 2동 지상 1층, 최고높이 5.2m, 질토량 84,883㎥, 소나무 등 4,340주 식재
    - 참고사항

구 분	1차 신청내용 ( '13. 4.10/부결)	2차 신청내용 ( '13. 5.29./부결)	3차 신청내용 ( '13. 7.10./부결)
대지면적	12,175㎡	10,646㎡	9,408㎡
건축면적	760㎡	좌동	좌동
연면적	760㎡	좌동	좌동
규 모	2동, 지상 1층	좌동	좌동
구 조	경량철골조	좌동	좌동
최고높이	5.6m	좌동	좌동
성토량	67,362㎥	-	좌동
절토량	6,652㎥	96,211㎥	좌동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06.30/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이천 설봉산성에서 450여m 이격된 1구역(보존구역)에 기존의 임야를 절토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근린생활시설 2개동(1동:건축면적:290.86㎡, 단층, 높이:6.2m / 2동:건축면적:194.86㎡, 단층, 높이:5.2m)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지의 북측과 동측에 연접한 부지가 절토됨으로서 신청 부지와 13m 에 이르는 단차가 생겨 법면의 위험성과 경관에 있어서도 이질감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금회 제출된 안치림 잔여 능선부를 절토하고 연접 부지와 높이를 맞추므로써 법면의 위험성과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역사문화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단, 주변을 구성하는 계곡부의 배수계획 검토와 부지 내 조경계획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함

##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20. 양주 온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적 제210호 「양주 온릉」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우리 청에서 추진 중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합리적 조정」과 관련하여 양주 온릉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대해 조정 요청한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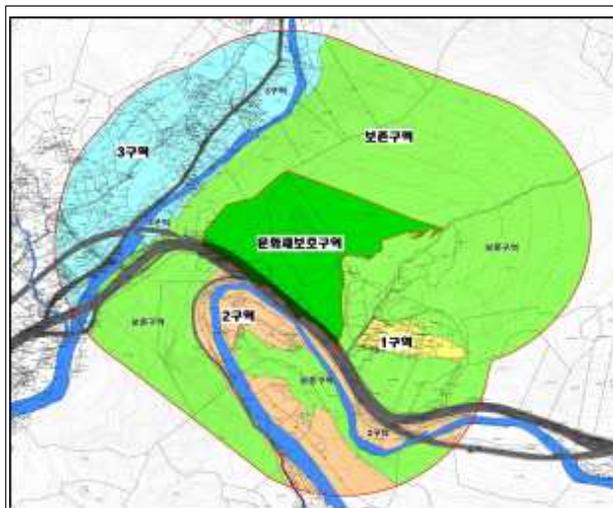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 (2) 대상문화재명 : 양주 온릉(사적 제210호)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41
- (3) 신청내용<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 현행(2008.02.18.문화재청 고시)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절대보존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지형 보존, 건물 신축 불가</li> <li>○ 기존건물 범위내 개축 허용</li> <li>○ 군사시설에 한해 허용</li> </ul>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2층)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2층)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3층)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3층)	
3구역	○ 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절토 및 성토금지</li> <li>○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li> </ul>		

○ 신청(안)

구 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양주시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li> <li>○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구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li> <li>○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li> <li>○ 건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li> <li>○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아래와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현상변경허가신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수도 및 가스관로, 소방시설 설치 행위</li> <li>- 오·폐수 처리 관로시설 매설 행위</li> <li>- 기존 도로, 철도, 항만 교량의 개·보수 행위</li> </ul> </li> </ul>		



<현 행>



<신청(안)>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03.28/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 본 건은 양주 온릉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양주시에서 신청된 건으로서, 현재 양주 온릉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은 서측의 도로 건너편은 기 개발되어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남측 하천 주변 임야와 북·동측 임야는 1구역(원지형 보존구역), 하천을 끼고 주변에 산재한 주택은 2구역(평지붕:11m 이하, 경사지붕:15m 이하)로 구성되어 있음
- 이를 양주시에서는 서측의 하천 안쪽 능선과 남측의 도로 건너편을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구역으로 하며, 1구역(보존구역), 2구역(평지붕:8m 이하, 경사지붕:12m 이하), 3구역(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구역)으로 신청하였음.
- 현지조사에서 검토한 결과, 양주 온릉은 세계유산으로서 지정신청 당시 현상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준용하여 코어존(core zone)과 버퍼존(buffer zone)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서측의 능선, 남측의 석산(우백호), 하천을 포함하여 구릉(안산) 등으로 구성되어 이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현황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은 현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21. 용인 서리고려백자 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용인시 소재 사적 제329호 「용인 서리고려백자 요지」 주변 현상 변경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우리 청에서 추진 중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합리적 조정」 과 관련 용인시에서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대해 조정 요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용인 서리고려백자 요지(사적 제329호)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3-4번지 일원

(3) 신청내용<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현행

구분 (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범위)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1층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1층 이하)
3-1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 터파기 공사시 관계전문기관 입회	
3-2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2층 이하)
4 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3층 이하)
5 구역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	○ 기존 건물 범위 내에서 개·재축 가능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	

- 신청(안)

- 기존 허용기준에서 문화재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축소 조정의견

라. 검토의견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 터파기 공사 시 관계전문기관 입회	
4 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5 구역	○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200m 이내 하천 제방공사 시 개별심의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도요지 지정구역으로부터 주택, 축사(현재 축사내 버섯 재배), 소하천과, 2차선 지방도, 근린생활 시설, 임야로 전면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면 하천지역을 경계로 허용기준 범위를 조정하고, 좌·우측 및 요지 배면 지역에 대해서는 매장유적의 경관설정 범위를 신청안과 같이 수용하되 지적 경계선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4.06.30/문화재위원 전문위원 ○○○, ○○○)

- 본 건은 용인 서리 고려 백자요지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500m 범위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지자체에 의해 신청된 건으로서, 용인 서리 고려 백자 요지는 현재 비스듬이 남북을 가로지르는 4차선의 백자로를 분절되어 있으며, 가로변을 중심으로 공장들과 소규모 주택이 입지해 있으며, 요지의 전면과 배면은 임야로서 1구역(보존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음. 요지 바로 전면에는 소규모 주택이 입지하며, 도로와 연결해 하천이 흐르고 있음. 그리고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에 의하면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는 별표3에 그 영향검토범위를 300m 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현황에 임야의 능선을 검토하여도 300m 범위 내로 정한다면 능성 내부가 전부 포함됨. 또한 도시계획에서도 건너편

임야와 배면 임야는 경사가 급한 보전녹지와 생산녹지로서 개발이 어려운 현황임. 따라서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는 현상변경허용기준의 적용범위를 300m까지 조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 요지 전면의 주택 등을 매입하여 요지로서 하천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경관을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단, 공통사항에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임

(2) 이해 관계자 등 공람·공고 의견 : 없음

#### 바. 의결사항

#####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구역조정은 검토의견대로 함. 공통사항 수정 포함

## 22. 용인 보정동 고분군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용인시 소재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우리 청에서 추진 중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합리적 조정」 과 관련 용인시에서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대해 조정 요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용인 보정동 고분군(사적 제500호)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 문화재 등 보존·관리시설 허용 ○ 기존 건물 및 시설물 개축·보수 가능(기존범위 내)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2층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4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4층 이하)
5구역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 시 2m 이내의 절토 및 성토를 허용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 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문화재청 심의 대상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신청(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건물 신축 및 신규 시설물 설치 불가 - 문화재 등 보존·관리시설 허용 ○ 기존 건물 및 시설물 개축·보수 가능(기존범위 내)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2층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4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4층 이하)
4구역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 시 2m 이내의 절토 및 성토를 허용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 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보호구역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문화재청 심의 대상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라. 검토의견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 개별 심의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4구역	○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관련(축사, 도축장, 도계장) 시설은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일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관계법령 변경 시 문화재청 협의(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고분군 주위 수지~신갈, 광고~삼막, 경부선 등 도로가 유적 주변 경관을 이미 훼손하여 주변 경관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과, 수지~신갈 도로 개설 시 발굴 복원된(복개 후 도로 위) 고분군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고속도로 안 지역, 삼막곡저수지, 유적을 감싸고 있는 임야(200m 내) 지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06.30/문화재위원 전문위원 ○○○, ○○○)

- 본 건은 용인 보정동 고분군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200m 범위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지자체에 의해 신청된 건으로서, 용인 보정동 고분군은 2개소의 지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정구역의 남북으로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에 의해 동측과 남측은 개발이 가능한 구역으로, 북측과 서측의 고분군과 일체화된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1구역(보존구역)으로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운영되고 있음. 금회 지자체의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은 서측의 100m~200m 사이에 있는 민원성의 3필지를 연결한 3구역(평지붕 8m 이하/ 경사지붕 11m 이하)인 곳으로 변경 요청된 것으로서, 고분군에서 직접 인지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고분군과 일체화된 지형을 이루고 있어 보존될 필요가 있으며, 다른 1구역(보존구역)의 필지와 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용인 보정동 고분군 주변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후 현상변경허용기준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현황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검토의견대로 조정, 시행하고, 구역경계는 문화재청에서 검토처리토록 함

## 23.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522호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12.05.17 사적으로 지정된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용담동 유적(사적 제522호)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용담2동 2696-3회
- (3) 신청내용<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소음, 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 유물산포지역 내에서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 시에는 매장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06.18/문화재위원 ○○○, ○○○, ○○○, 전문위원 ○○○)
  - 본 건은 2012.5.17 사적으로 지정된 제주 용담동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용담동 주변 환경으로는 서측에 제주 비행장이 연접하고 북측은 1.4km 떨어진 곳에 바다가 있으며, 유적 바로 동쪽으로는 한천이라는 하천이 흐르고 있음.
  - 유적과 연접하여서는 주위로 1~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시계획에서는 4층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여져 있음.

- 이에 지자체에서는 유적 주변에 4층 이하의 건물이 들어서도 역사문화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으로서 도시계획 및 조례에 의한 구역으로 신청함
- 제주시에서 실시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에서는, 연접한 곳은 1층 규모 그 다음 켜는 2층 규모로 하여 약 50m 범위까지는 규제를 하되, 그 밖은 도시계획 및 조례에 의한 구역으로 검토된 바 있으며, 주민들은 비행고도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문화재로 인한 추가적인 규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임
- 이러한 건축 현황과 지자체의 요청, 주민 의견,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보다 정밀한 데이터와 사적의 유형별 경관 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제주 용담동 유적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2014년도 내에 사적의 유형별 경관관리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2) 추진경과

- ('12.05.17) 제주 용담동 유적 사적 지정
- ('12.10.30)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제출 (제주시→문화재청)
  - 반경 500m 이내 모두에 대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령 적용
- ('12.11.06)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보완제출 요청 (문화재청→제주시)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취지가 반영되지 못함
- ('13.04.30)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용역 실시 (제주시)
  - 유적과 연접한 구역 1층, 반경 50m 이내 2층
- ('13.08.01~8.16)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공람 실시
- ('13.08.15)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13.08.17~8.30) 주민공람 연장
  - 주민의견 접수(105건) : 해당유적은 취락지구 형성 이후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으로, 장기간 공항 소음이 발생하고, 그린벨트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곳으로, 현재 '자연취락지구' 및 '공항공도제한지역'에 해당되어 개별법을 적용하더라도 최고 4층높이로 제한된 지역임에 따라 문화재로 인한 고도 제한(사유재산권 침해)은 부당함.
- ('13.11.25)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재제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청)
  - 최초 제출(안)과 동일

## 마. 의결사항

### ○ 보류

- 사적 유형별 허용기준 설정 지침 마련 후, 재검토

##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4-08-024

###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2권역, 3권역에 속하는 23필지 2,761m<sup>2</sup>를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기존지정 면적 : 1,065필지 344,373.6m<sup>2</sup>
  - 추가지정 신청면적 : 23필지 2,761m<sup>2</sup>
- (4) 신청사유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14.06.30)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으로 향후 유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2-39	대	112	112		
2	"	126-50	대	126	126		
3	"	268-26	대	109	109		
4	"	268-25	대	112	112		
5	"	229-4	대	152	152		
6	"	133-12	대	81	81		
7	"	87-17	대	145	145		
8	"	222-85	대	99	99		
9	"	144-26	대	112	112		
10	"	126-27	대	165	165		
11	"	279-19	대	165	165		
12	"	142-85	대	155	155		
13	"	152-50	대	99	99		
14	"	222-76	대	96	96		
15	"	144-19	대	112	112		
16	"	144-21	대	112	112		
17	"	144-27	대	112	112		
18	"	123-26	대	122	122		
19	"	131-83	대	109	109		
20	"	222-118	대	162	162		
21	"	131-17	대	109	109		
22	"	132-7	대	99	99		
23	"	126-98	대	96	96		
합	계	23필지		2,761	2,761		

## 2. 파주 수길원 사적 추가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파주 수길원의 사적 지정구역을 추가지정 하려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수길원(사적 제359호) /1991.10.25.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번 일원/관리단체 : 파주삼릉관리소

(3) 신청내용

- 기존지정 면적

- 파주 수길원 : 3필지 294,420㎡

- 추가지정 면적 : 1필지 26,083㎡

- 추가지정 후 면적 : 4필지 320,503㎡

(4) 지정신청사유

- 파주 수길원 주산의 용맥과 청룡의 용맥에 해당하는 지역을 사적 지정 구역으로 추가지정하여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함

### 라. 지정조사보고서('14.05.30/문화재위원 ○ ○ ○, ○ ○ ○, 전문위원 ○ ○ ○)

1.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59호(1991.10.25 지정)

2. 문화재 명칭 : 파주 수길원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위치하고 있는 수길원은 북쪽으로 발랑리와 송추 CC가 있고 남쪽으로는 서울CC, 서울시립공동묘지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마장리가, 동쪽으로는 기산리가 위치하고 있음.

- 수길원 지구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영역이 축소되고 능역 내 사유지 점유, 주변골프장 및 도로개설 등으로 경관이 훼손된 실정임

#### 4. 연혁 유래 및 특징

- 파주 수길원
  - 조선 21대 영조(재위 1724~1776)의 후궁인 정빈이씨(1693~1720)의 무덤이다. 정빈이씨는 영조의 맏아들인 효장세자(진종 : 정조의 양아버지)를 낳았다.
  - 봉분 주변을 둘러싸는 곡장이 있으며, 비석과 문인석을 비롯하여 여러 석물들이 있다. 위패는 조선시대 역대 왕이나 추존된 이의 생모인 후궁들의 위패를 모신 칠궁의 하나인 연호궁에 안치되어 있다.
  - 남서쪽 아랫부분에 남서방향으로 정자각을 세웠으나 현재 기단부만 남아있으며 수복방도 주춧돌만 남아있다.

####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조선왕릉 파주 소령원의 안산으로 수길원의 주산의 용맥과 청룡의 용맥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 6. 지정 대상 및 범위

- 현행 지정면적 : 3필지, 294,420㎡
- 추가 지정면적 : 1필지, 26,083㎡(문화재구역과 연접/보존구역)
- 지정 후 면적 : 4필지, 320,503㎡

####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추가지정 대상지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임.
-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은 추후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에 포함하여 조정

####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및 소령원, 수길원 능제복원 기본계획에 따라 보존관리
- 조선왕릉 공개제한지역 개방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 추진
  - 2016년 소령원, 수길원 공개

#### 9. 종합 의견

- 해당지역은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1991.10.25.지정) 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 및 소령원, 수길원 능제복원 기본계획에 따라 보존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임.
- 향후 조선왕릉 공개제한지역 개방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 및 관리 추진하는 지역으로 2016년 소령원과 함께 공개대상 지역임.

- 추가 국가사적 지정 대상지는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으로 1필지, 26,083㎡ (문화재구역과 연접/보존구역)로 땅 소유주가 국가사적 지정요청에 따라 추진되는 지역임.
- 해당지역은 조선왕릉 파주 소령원의 안산이며 수길원의 주산의 일부이며 수길원 좌청룡의 용맥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임.
- 해당지역은 산림구역으로 임목이 양호하며 일부 리기다소나무 등 외래수종도 분포하고 있음.
- 신청지역은 수길원의 주산의 일부에 위치하며 좌측 청룡 능선의 일부가 되기도 하는 지역으로 능역의 주산보존 및 좌청룡 보존을 위한 국가사적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3. 여수 충민사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사적 제381호 「여수 충민사」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여수 충민사 문화재구역을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여수 충민사(사적 제381호)
  - 소재지 : 전남 여수시 덕충동 1808 외
- (3) 지정신청
  - 기지정 면적 : 84필지 96,753㎡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1필지 659㎡
  - 추가지정 후 면적 : 85필지 97,412㎡
- (4) 신청사유
  - 신청구역(1865-1번지)은 충민사 지정구역의 맨 가장자리에 위치하였으며, 사당과는 약 220m 정도 이격되어 있음
  - 해당 필지는 현재 토지매입 및 철거공사를 완료한 필지 옆에 위치하고 있고 경계구역이 철거건물의 마당, 배수로, 수목 등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출입구가 신청필지에 위치하여 사업 시행 시 재산권침해 등 문제가 있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신청함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04.17/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 신청 필지는 여수·여천 박씨 종친회의 제각 부지로 사용되었던 대지로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연접 필지(1865번지)는 여수시에서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 정비함

- 원래 한 필지로 조성된 땅이었으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일부(1865-1번지)를 양도하고 또 이를 문중 일가 명의로 재매입하는 과정에서 두 필지로 나뉘게 됨
- 신청 필지는 연접 필지(문화재구역)와 동일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두 필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여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검토의견('13.11.22/가결)**

- 신청부지와 연접한 필지를 매입하여 건물 등을 철거했으나, 동 필지가 진입로 상에 위치하여 정비사업 추진 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동 필지를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매입, 정비코자 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여수 충민사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지적별 면적조서**

소재지	지 번	지목	지 번 면적(m <sup>2</sup> )	지정신청 면적(m <sup>2</sup>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여수시 덕충동	1865-1	대	659	659		
계			659	659		

## 4. 진주 평거동 고분군 사적 지정 해제 검토

###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제164호 「진주 평거동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해제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진주 평거동 고분군은 분묘에 새겨진 금석문 등을 근거로 연대와 주인공이 확인된 정씨 가족 공동무덤으로 축조방식 등 학술적 가치가 높아 1968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되었으나, 최근들어 정씨 문중간의 이견과 대립으로 인해 사적 지정해제 신청이 접수됨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 지정해제 민원 신청인 : 나주정씨 중앙총회

(2) 대상문화재명 : 진주 평거동 고분군(사적 제164호/1968.12.19 지정)

○ 소재지 : 경남 진주시 평거동 산44-2번지 일대

(3) 신청내용<진주 평거동 고분군 사적 지정 해제>

○ 수량 : 고분 6기

○ 면적 : 4필지 46,097㎡/문화재구역

(4) 관리단체 : 진주시

(5) 신청사유

○ 경상남도

- 진주 평거동 고분군 해제는 지정권자인 문화재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 민원인(나주정씨 중앙총회)

- 진주 평거동 고분군은 피장자와 축조연대를 근거로 하여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되었으나, 나주정씨 시조인 정윤종과 3대조인 정량이 진주에 거주하였다는 자료도 없고, 평거동 고분군이 위치한 진주 석갑산 일원 역시 나주정씨 문중과 아무런 연고가 없으므로 3호분(피장자 정윤종)과 6호분(피장자 정량)의 매장자는 허위임

- 이에 피장자를 근거로 하여 지정된 사적 제164호 진주 평거동 고분군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라. 현지조사 의견('14.05.23/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1) 문화재 현황

- 석갑산 남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이 무덤들은 모두 6기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형태상으로 볼 때, 6기 모두 잘 다듬은 돌을 사용하였다. 호석의 형태는 지대석, 우주가 있는 면석 그리고 갑석을 올린 형식과 면석을 석축식으로 쌓고 갑석을 올린 형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그 위에 흙으로 봉분을 만든 형식이다. 평면이 형태는 경사진 지형에 2~3단의 단을 형성한 후 방형의 봉분을 구성한 것이 대부분이나 3, 4호분은 '凸'자 형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구조이며, 3호분에 시문되어 있는 '삼두화문' 또한 고려시대의 석물에 주로 사용된 문양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처럼 평거동 고분군은 긴 사각형 모양의 봉분 아래에 사각형으로 호석을 돌렸는데, 이와 비슷한 형식은 경주 구정리 무덤, 고려시대의 거창 둔마리 무덤 및 후기의 여러 무덤, 조선 초기의 명신들의 무덤에서 찾아볼 수 있어 형태와 양식상 전형적인 고려시대 형식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신라 이후 꾸준히 이어져온 전통형식이라 할 수 있다.
- 무덤들의 주인공과 만들어진 연대가 무덤에 새겨져 있어 이 무덤들이 고려시대인 1079년부터 1229년까지 150년간에 걸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새겨진 글자를 보면 고려시대 사람인 정열<丁悅>을 비롯해서 모두 정씨 집안의 무덤임을 알 수 있다. 이 정씨 집안의 무덤들은 만들어진 연대가 뚜렷하고 형태가 독특해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무덤의 형식변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평거동 고분군은 고려 중·후기 가족 공동무덤으로 확인된 점, 형태와 양식상 전형적인 고려시대 형식이라는 점, 돌에 무덤의 주인공 이름과 연대를 새겨 놓은 진주지방 호족의 무덤이라는 점에서 신라 이후 꾸준히 이어져온 전통형식으로 고려시대에 축조된 동일 가계(家系)의 묘제양식 및 축조방식 등에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아 사적으로 지정·보호되고 있다.

(3) 종합 의견

- 상기와 같이 진주 평거동 고분군은 당시의 묘제와 축조방식을 보여주는 유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아 사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 이 고분군의 사적지정 해제를 신청한 나주정씨 중앙총회에서는 고분의 피장자에 대한 유래와 근거가 불분명하고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적의 해제와 존치를 주장하는 양방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지 확인 결과

고분의 피장자 확인 문제는 향후 발굴조사 등을 통하여 밝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평거동 고분군은 상기와 같이 피장자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하나, 지정 근거는 고려시대에 축조된 동일 가계(家系)의 묘제양식 및 축조방식 등에 있어 학술적·문화적 가치와 희소성이 높아 사적으로 지정되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경상남도 관계전문가 현지조사의견(2014.4.14)

##### (1) 前 문화재위원 ○○○

○ 신청인의 해제 신청 사유 조항에 따라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① ‘여유당전서 등 역사적 고증자료에서도 본건 고분군은 허위임이 입증됩니다.’ 라는 사항에 대한 조사자 의견
  -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에 나오는 「정씨육충변」의 글은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 쓴 글인 듯 느껴질 정도로 그 글의 뜻에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정변의 변(木+弁)자에 고친 흔적이 있다고 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보아도 동조하기 어렵다. 술선록에 보이는 정윤중 묘비음기의 글 가운데 ‘유명(有明)’이란 글이 실제 새겨진 것인지 옮겨 적은 자의 실수인지 지금의 비석에서는 너무 마모가 심해 확인되지 않는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탁본 자료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분명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 ② ‘정윤종과 정량은 진주 땅에 기거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라는 사항에 대한 조사자 의견
  - 이들이 진주에 기거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워낙 오래 된 일이라 아무도 증명할 수 없다.
- ③ ‘진주의 어떠한 역사 기록 자료에서도 정씨가 진주 땅에 묻혔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라는 사항에 대한 조사자 의견
  - 1200년 무렵부터 1700년 무렵 사이에 이 고충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은 명문이 처음부터 있어 왔다면 어떻게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170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 ④ ‘고분군의 비문 상태에 대한 조사결과도 비문은 후세에 새로 새겨놓았다는 결론입니다.’ 라는 사항에 대한 조사자 의견
  - ‘정해(1107년) 12월 10일에 정변이 매장되었다.’는 매우 구체적인 연월일이 새겨진 것과 같은 솜씨로 그 현손인 정언진(1133-1215)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은 의문을 가질 만한 점이나, 지금까지의 자료로서는 얼마나 후대에 세워진 것인지 또는 후세에 누가 개변했다는 것인지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⑤ ‘본 건 고분군이 지정된 계기인 고증서는 정확한 인용근거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사항에 대한 조사자 의견

- 지금으로서는 고분의 보호석에 새겨진 글이나 묘전에 세워진 비석의 내용을 기준으로 매장자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고분군을 현지답사 해 본 결과 원래 새겨진 글자를 바꾸었다거나 의도적으로 없앴다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글자가 새겨진 연대를 과연 1100년 내지 1200년 당시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하기 어렵다. 1200년대로부터 이 고분군이 알려진 1700년대까지 약 500년 동안 왜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분군의 피장자가 정씨가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할 만한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위에 제시한 사유로 인해 해제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나주정씨 또는 압해정씨 문중 내부에 이 고분군의 각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음을 추가로 기록해 두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2) (재)동아문화재연구원 ○○○

○ 상기 고분군의 6기 모두 전체적인 분묘의 축조양식이 지대석, 우주석, 갑석을 갖춘 전형적인 고려시대 축조방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3·4호분은 평면형태가 ‘凸’字 상으로 축조되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구조이며, 3호분에 시문되어 있는 ‘삼두화문’은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유물로 보아 1230년대로 편년되는 강화도 능내리 석실분의 난간석 등에도 양각되어 있어 고려시대의 석물에 주로 사용된 문양으로 보여진다. 또한 조선시대에 해당하지만 전주 유세화 묘역과 같이 다른 가지능선을 선정하여 향렬에 따른 배치를 보이고 있어 당 시대 家系에 따른 묘역 선정 연구에 주요한 고분군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고려시대에 축조된 동일 가계의 고분군으로 판단되며 축조방식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고분군이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추진경과

- 2014.03.26 : 국가지정문화재 해제 신청(나주정씨 중앙종회→진주시→경상남도)
- 2014.04.04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경상남도)

- 2014.04.17 : 진주 평거동 고분군 지정해제 반대 청원서 진달  
(압해정씨대종회→진주시→경상남도)
- 2014.04.18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 본 건은 지정권자인 문화재청에 진달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4.04.28 : 국가지정문화재 해제 신청 및 청원서 진달(경상남도→문화재청)

## 사. 지정해체 신청인(나주정씨 중앙종회) 제출의견

### 국가지정문화재 해제신청서

신 청 인 : 나주정씨 중앙종회

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부서 : (진주시) 문화재 담당자

제 목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64호 지정 해제신청

신청인의 법률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64호의 지정해제를 신청하니 귀 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 신청취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64호로 지정된 '진주 석감산 고분군(이하 '본건 고분군'이라 합니다)'은 그 피장사와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의 매장을 근거로 하여 지정된 사적이므로 그 지정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즉, 본건 사적 제164호는 고분군 중 제3호분의 피장자는 정윤종(丁允宗, 이

하 인명 뒤 존칭 생략)으로, 제6호분의 피장자는 정 량(丁 良)임을 유력한 근거로 하여 지정되었는 바, 위 정윤중, 정 량은 조선왕조의 문과급제자 50인을 배출하였을 뿐 아니라 다산 정약용 등 저명 학자들이 속한 나주 정씨(羅州 丁氏) 문중의 일원으로 위 정윤중은 나주 정씨의 시조이고, 위 정 량은 3대조입니다.

**해설의의**

그러나 위 정윤중, 정 량은 진주에 거주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며 본건 고분군이 위치한 진주 석갑산 일원 역시 나주 정씨 문중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바 이는 아래 제2항의 신청사유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2. 신청사유 : 국가지정문화재 해제사유 및 첨부 입증자료에 대한 설명**

(1) 여유당 전서 등 역사적 고증자료에서도 본건 고분군은 허위임이 입증됩니다

‘진주석갑산정씨분산변’(정재원, 정범진 역, 동문선, 2002년), ‘석갑산정씨육충변 정약용 여유당전서’(정범진 역, 동문선 2002년)에 의하면, 다산 정약용은 부친인 정재원이 진주목사 근무시 현재 진주 소재 석갑산 고분군을 방문한 후 여유당전서2 문집1인 ‘석갑산정씨육갑충변’에서 “후손들이 날조된 허위를 알지 못하여 거짓을 사실로 믿는 일이 생길 것을 경계하여 이 글을 남긴다”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자료에 의하면 정약용이 명백히 ‘본건 고분군이 낭혜(朗慧)라는 사람에게 의하여 란진(亂眞; 진실을 은폐하여 어지럽힘) 개각(改刻; 다시 고쳐 새겨넣음)되었다’라고 말한 사실도 있어 새로 고쳐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

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나주 정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정윤종과 정 량은 진주 땅에 기거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본건 고분군의 매장자라는 위 정윤종과 정 량은 나주 정씨의 시조와 3대 조로, 나주 정씨 7대조가 개경으로 그 주거지를 옮기기 전까지 압해(현재 행정구역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합해면입니다) 땅에서 지내다가 그 곳에서 세거하였고 문히게 되었으므로 진주(진양)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으며 이 역시 고증자료에 의하여 입증됩니다(압해정씨술선독, 정시걸 저술, 한국전신문화연구원 소장).



이는 또한 '진주평거동고려고분군연구(신천식 저 경인문화사 2002년)' 라는 서적에서도 위 정윤종과 정 량은 본건 고분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입증됩니다.

(3) 진주의 어떠한 역사기록 자료에서도 정씨가 진주 땅에 묻혔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진주의 역사를 기록한 진양지(晉陽誌)에서도 정약용의 시조가 진주 땅에 묻혀있다는 취지의 기록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사원록, 정범진 역 저, 동문선 2002년 중 '진양지를 통해 본 나주정씨와 석갑산고분' 부분 참조)

만일 진주에서 다산 정약용의 선조가 매장되어 있는 고분군이 실제한다

고 확인되었다면 이는 그 고장의 경사로 진주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서에 이 매장 사실이 전혀 기록되지 아니할 리가 없다는 사실로도 입증됩니다.

(4) 고분군의 비문 상태에 대한 조사결과도 비문은 후세에 새로 새겨놓았다는 결론입니다

배장지

본건 고분군의 비문의 상태를 연도별로 비교검토 한 논문은 지구의 마멸 상태를 통해 비문의 제작연대를 고찰하고 있는 바, 비문의 상당 부분이 고려 시대가 아닌 근세에 각입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다산 일가 역시 비문이 위 낭해에 의해 개각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진주평거동고려고분군연구 중 '명문의 검토' 부분, 신천식 저, 경인문화사 2002년)(나주정씨선계연구, 이수건 김언종 신천식 이민홍 안영익 정범진 공조, 나주정씨월헌공파총회 간, 서경출판사 2002년)

즉, 고려시대에 작성되었어야 할 본건 고분군의 비문이 후세에 다시 고쳐졌다는 사실의 확인만으로도 본건 고분군의 매장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유력한 증거라고 하겠습니까.

(5) 본건 고분군이 지정된 계기인 고증서는 정확한 인용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본건 고분군 지정의 강력한 근거자료라는 위 '진주평거동고려고분군 미술자료 9호(1964. 12. 김원룡 저, 국립박물관)'는 신청인 총중에 전래하여 온 정보(正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일부 교수(정 모씨)가 제공하였다는 작자와 연대 미상의 사보(私譜)에만 의존하는 한편 위 교수 역시 "그저 분묘

의 외부구조만을 소개하여 두고자 하는 바이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 문제가 된 고분군의 실제 매장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외부구조만을 소개함에 그치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위 교수의 근거없는 견해를 반박하기 위하여 별첨자료로 정감진 저 '미술자료' 중 '요약과 문제점' 부분을 첨부합니다.



### 3. 결론 : 사적 제164호 지정해제 혹은 오류시정 요청

본건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신청인 나주 정씨 일가의 명예와 관련된 중대사안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될 정도로 그 근거가 분명하고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할 국가의 귀중한 유산이므로 그 지정 근거에 있어 조그마한 허위사실이 게재되어 있을 경우라도 취소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분군의 실제 매장자가 전혀 엉뚱한 사람임이 여러 고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이는 '조그마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고분군을 사적으로 지정한 근본취지가 잘못된 것이므로 그 문화재 지정은 당연히 해제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귀원에서는 첨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셔서 나주 정씨 일가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취지가 타당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적 제164호의 오류



에게 연락주시면 하시라도 귀청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입증방법(첨부자료)

1. 사적지정 회의록(국가기록원)
2. 진주평거동 기년고려고분군(김원룡 논문, 국립박물관 미술자료 제9호 6쪽 수록, 1964. 12.)
3. 진주석감산정씨분산변(정재원 저, 정범진 역), 동문선 2002년
4. 석감산정씨옥총변(정약용 저, 정범진 역) 동문선 2002년
5. 옥총 비문의 1748년 1791년 상태와 2001년의 현황('나주정씨선계연구' 중에서 발췌), (김언중 저), 동문선, 2002년
6. 이른바 정윤중비음기의 오류('나주정씨선계연구'중에서 발췌), (김언중 저), 동문선 2002년
7. 나주입해정씨 술선록, (정시걸 저, 정범진 역), 동문선 2003년
8. 진주평거동 고려고분군연구 - 명문의 검토와 종합고찰(신천식 저), 경인문화사 2002년
9. 한국의 성씨와 족보연구(입해정씨를 중심으로),(이수건 저) 동문선 2002년
10. 진양지를 통해 본 나주정씨와 석감산 고분('사원록' 중에서 발췌), (정범진 역저), 동문선 2002년
11. '진주평거동 기년고려고분군(김원룡 저, 국립박물관간행 미술자료9호)'의 문제점, 정감진 저
12. 사적164호로 잘못 지정된 석감산의 현재실태(나주정씨중앙총회)

입증자료(책자) - 이 신청서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 나주정씨 선계연구(나주정씨월헌공파총회 편)
2. 사원록(나주정씨월헌공파총회 편)



법무법인 태원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5, 405,407,409호 (서초동, 김도빌딩)  
 전화: (02)535-5546,7 (406,407호) 팩스: (02)535-5585  
 전화: (02)535-7234 (409호) 팩스: (02)535-7235

- 3. 나주압해정씨술선록(정시걸 찬술, 정범진 역)
- 4. 진주 평거동 고려 고분군 연구(신천식 저)

변호사위임장 첨부

2014. 3. 5.

2014. 3. 5.

위 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태원



진주시(민원담당실) 귀중

수 신 : 문화재청 보전정책과

참 조 :

발 신 : 법무법인 태원

제 목 : 국가지정문화재 해제신청 관련 추가 입증자료 제출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1. 2014. 3. 4. 우리 법무법인이 대리하여 진주시청에 제출한 나주정씨 중앙종회 제기 국가지정문화재 해제신청과 관련하여 불임과 같이 나주정씨 중앙종회측의 추가 주장내용(입증자료)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임 : 진주 석갑산 육충과 나주정씨와의 관계

2014. 6. 25.

법무법인 태원



문화재청 귀중

## 晉州 石岬山 六塚과 羅州丁氏와의 關係

(2014. 5. 23 작성)

### 1. 진주 석갑산에 나주정씨 조상의 무덤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高麗史》를 참고해 보면, 우리나라 모든 氏族의 姓은 통일신라시대에 중국과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상류사회로부터 서서히 중국의 姓을 襲用하게 되고, 고려 太祖 23년 경 王建이 土姓分定을 시행할 무렵에(940년경)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성씨 즉 姓과 貫籍制度가 자리를 잡기에 이른다. 그러나 나주정씨는 이때까지도 史書에 공적을 기록할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 후 500년 《高麗史》에 간간히 이름을 올린 정씨가 있었지만 두각을 크게 들어내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대부분 후대 그 어느 정씨에게도 분명하게 혈연적 또는 문헌적 連繫가 이루어진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약 4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처음으로 세종14(1432)년 《世宗實錄》〈地理志〉에 전라도 압해현의 土姓으로 집단적 登載가 된다.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이 실제 토성으로 지방호족의 자리 잡은 것은 물론 이보다는 훨씬 앞설 것이다.

어쨌든 우리 나주(압해) 정씨는 이렇게 압해에서 대대로 살아왔고, 한 때 즉 조선 조 太祖9(1409)년에 押海縣이 羅州牧의 屬縣으로 있다가 廢縣이 되면서 縣司도 閉鎖되었지만 그래도 丁氏는 土姓으로서 縣司를 지키면서 鄉役을 세습해 왔었다. 그것은 다음의 《押海丁氏述先錄》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시조 允宗---2세 奕材---3세 良---4세 信---5세 俊---6세 公逸---7세 元甫--  
檢校大將軍 中郎將同正 別將同正 別將同正 別將同正 散員同正 檢校護軍

《押海丁氏述先錄》은 顯宗 1(1660)년 丁時傑의 撰으로 거기에는 始祖 이래 上系 世葬地로 羅州의 押海, 開京의 德水, 白川의 西江 栗壑, 幸州의 土堂 茂院, 廣州의 樂生, 忠州의 丹月 등 여덟 곳을 山勢地圖를 곁 드려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압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경기지방이며, 단월 한 곳이 북부 충청도이다. 시대로 보더라도 대개가 이미 조선조로 넘어온 이후의 세장지들이다. 그렇다면 7세

휘 元甫가 開京으로 이주하기 이전 6세까지는 변함없이 다 압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 묻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압해와 진주는 바다를 건너야 하는 수 백리 거리이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대략 900년 전 교통수단이 심히 어려웠던 시대에, 아무런 특별한 원인도 없이 조상의 시신을 운구하여 그 먼 곳으로 가서 매장했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 혹시 그게 아니고 만의 하나 우리 조상들이 진주 근방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지는 않았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도 전혀 가능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진주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晉陽誌》를 살살이 훑어보아도 어느 한 구석 어느 한 글자 나주정씨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정범진 작 <진양지를 통해서 본 석갑산 고분과 나주정씨와의 관계> 참조) 세간에 돌아다니는 믿지 못할 어느 私譜의 기록처럼 나주정씨가 고려조에서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상위층 門閥이라면 어찌서 《高麗史》는 물론 《晉陽誌》에도 압해정씨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인가? 그리고 나주정씨의 역대 어느 족보에도 진주 석갑산에 조상의 분묘가 있다고 하는 기록은 없다. 따라서 진주 석갑산의 고분이 정씨의 墳墓라고 말하는 것은 큰 무리요 억지주장이다. 따라서 석갑산의 고분 중 특히 나주정씨의 족보에 올라 있는 시조 휘 允宗과 제3세 휘 良의 무덤은 나주정씨가 아닌 타성의 무덤을 중간에 그 어떤 부당한 목적으로 날조한 것이 틀림이 없다.

押海는 나주정씨의 本籍地다. 그래서 애초부터 조선조 영조시대까지는 아직도 압해정씨로 살아왔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와서 압해가 한때 廢縣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주의 屬縣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압해는 잘 알려져 있는 지명이 아닌데 반하여 나주는 너무나 유명한 큰 도시이니 본관을 나주로 쓰더라도 무방할 것이라는 조상님들의 중론에 따라 貫籍을 나주로 바꾸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國朝榜目》을 참고하면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거기에 보면 조선 전기에 급제한 조상은 모두 압해정씨로 되어 있는데, 顯宗 때부터 나주가 나오기 시작해서 한 동안은 압해와 나주를 혼용하다가 후기 즉 대략 정조 시대부터는 완전히 나주정씨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나주정씨는 곧 압해정씨 후래의 명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 2. 진주 石岬山 古墳은 朗慧에 의해서 亂眞되었다.

석갑산의 所謂 丁氏六塚에 대해서는 이미 조선 正祖시대의 丁志譜, 그의 아들 晉州牧使 丁載遠, 재원의 아들 丁若鏞의 祖父子 세분과 그리고 근자 譜學의 권위자

영남대학교 李樹健 교수, 고려대학교 金彦鍾 교수, 진주출신 명지대학교 申千湜 교수 등에 의해 상세히 考證된 바가 있다. 그들의 결론은 이들 육충은 朗慧라는 자가 亂眞해 놓은 것으로 “결코 나주정씨 조상의 무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1729년에 朗慧라는 요승이 경기도 馬峴으로 茶山 선생宅을 방문해서, 다산 선생의 증조부(諱恒愼, 1691~1733)에게 진주 石岬山에 始祖 등 6기의 정씨 墳墓가 있음을 보고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육충은 丁良 丁悅 丁拚 丁允樺 丁允宗 丁彦眞이고, 그 중 나주정씨의 족보에 등재되어 있는 조상은 시조 諱 允宗과 제 3세 諱 良 두 基였다. 제2세 諱 奕材는 第三世 良의 墓石에 刻字만 보이고 實墓는 존재하지 않는다.

六塚에 대한 亂眞이 모두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다산 선생의 증조부는 39세였는데 4년 뒤 사망하였고, 조부(諱志譜, 1712~1756)가 1748년 즉 37세 때 진주 석갑산을 직접 답사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세한 기록을 남긴다.

본문에서는 두 분 나주정씨의 조상에 대한 부분만을 인용하고 기타 정씨에 관해서는 나주정씨와는 무관하므로 언급을 생략한다. 우선 다산선생의 조부이신 志譜공의 기록부터 引用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그 大將軍墓라고 한 곳은 표석 전면에는 ‘大將丁公允宗之墓’ 라고 여덟 글자를 새겨놓았고, 작은 글자로 된 舊刻 11행의 자취가 보이는데, 그것은 단정하게 안배한 것이 역력하고, 글자 모양 또한 여러 형태였으며, 깎고 갈아 개각한 흔적이 뚜렷하여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을 살필 수가 있었다. 陰記에는(문장이 길어 여기에는 수록치 않음) 生卒 履歷 代系 子孫을 기록해 놓았으나 글자의 모양이 웅졸하고 바르지 못하고, 상하의 크고 작음이나 疏密함이 고르지 않았으며, 수많은 해가 흘렀는데도 글자의 마모가 없었다.

그 侍中墓라고 한 곳은 臺石에 ‘紹定元年乙丑三月七日侍中丁公良之墓父令同正奕材合墓在上’ 이라는 27자를 새겨놓았는데 자획이 가늘고 얇으며, 자행이 가지런하지 못해 최근에 전각한 모양이 뚜렷했다. 돌의 품질은 푸르러 숫돌과 같았으며, 작은 칼로 시험 삼아 새겨보았더니 새기기에 매우 유연하였다.

.....

이에 먼저 대장 묘를 파보고, 다음으로 정변 정언진 시중 묘를 차례로 파보았으나 그 어느 곳에서도 誌石을 얻지 못하고, 본래대로 흙을 돋우고 때를 다시 입힌 다음 돌아왔다.”

다음은 다산공의 부친이신 진주 牧使公 휘 載遠의 기록이다.

“雍正 기유(1729)년에 朗慧라는 僧이 있었는데, 자기도 丁氏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 그는 스스로 堪輿術을 팔면서 손님으로 대접받는 것을 매우 과시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진주의 서면 石岬山(平居驛 뒤 山麓)에 정씨 여러 대의 분묘가 있다고 하면서, 沙臺石에 새겨 놓은 것과 표석 등에 있는 문자를 탁본해 왔기에 오랫동안 썼으나 뭔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무진(1748)년 봄에 나의 先親께서 홀로 천릿길을 가시어 그 진위를 조사해보셨는데, 과연 여섯 개의 돌로 꾸민 무덤이 세 산록에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새겨진 글자를 살펴보고 전해들은 말을 참작해 본다면 그것은 丁氏의 무덤으로 되어 있었다. 비록 분명한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僞造된 흔적과 의심나는 점이 한 가지의 단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대저 允宗 奕材 良三公은 비록 우리 시조 이하 삼대로 보첩에 실려 있지만, 대장묘의 표석 앞뒷면은 모두가 의심나는 일의 端緒라고 하겠다. 낭혜가 비를 뽑아내어 씻고, 이를 메고 왔다 갔다 하였다는 상황이 어지럽게 전해 와서 사람들의 눈과 귀에 박혀있었으며, 시중묘의 연한 돌은 글자 새기기가 쉬웠던 점 등 역시 진실이 아닌 것이 많았다. 진주 墳岡에 대해서는 지난날 옛 사람의 의문을 제기한 글이 없는데다가 또 妖僧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진실을 어지럽게 만든 흔적이 많으니, 나로서는 감히 우리 선조의 무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물며 그 나머지 네 분묘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家籍에 전해오지 않음에 있어서이랴?

丁彦眞 같은 경우는 湖南譜에도 나타난 바가 없다. 시중 묘는 紹定 원년에 매장했다 하였고, 언진 묘는 嘉定 팔 년에 매장했다 하였으니, 宋 寧宗 가정 을해 년과 理宗 소정 을축년은 그 사이가 15년에 지나지 않는데, 언진은 또 어느 파에서 분파된 사람이란 말인가? 나는 의심해보기를, 朗慧가 湖南譜에 丁悅 丁拚 丁允樞가 실려 있는데 진주에는 주인 없는 산이 있는 것을 알고, 姓名을 서로 부합시켜서 마침내 정씨의 墳山임을 알리고, 우리 대장군 시조 및 良 兩代의 무덤도 이곳에 두기로 하고 표석과 대석을 거듭 갈아 글자를 개각하고 그 본형을 변조하여 古跡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이를 우리 종중에 공을 세울 기화로 삼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 비록 낭혜 이전에 진정 입증할 만한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무슨 방법으로 알 수 있겠는가?

대개 이 산은 후손이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이미 정씨 무덤의 일대 판국이 되어 버렸지만 그러나 산 아래의 원래 거주인 遂安齋 李得舟 家は 여러 대에 걸쳐 그곳을 몰래 점거하여, 그 무덤에 대해서는 누누이 맥을 누르고, 오르는 계단도 여지없이 허물어버리고, 대석을 파내어 새겨놓은 글자를 깎아버림으로써 흔적을 湮滅한

것은 이미 필연의 형세였는데, 여기에 또 낭혜로 말미암아 찾아낼 수 있는 기회마저 영원히 없어지고 말았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최근에 들으니 호남의 정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조상의 묘역으로 알고 찾아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이는 필시 사실을 따져보지도 않고 오직 성명이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보와 부합하는 것을 보고 그들 조상의 무덤인 줄 알고 와서 지내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변해서 무덤만 있고 석물은 산화해서 부서진 뒤, 호남 쪽의 말이 크게 유행하되 증빙할만한 근거가 없으면 그때 가서는 우리 대장군 선조의 자손들이 진정한 우리 조상의 묘라고 생각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내 이 점을 두려워하여 삼가 선친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 골라 뽑아서 후일의 증표로 대비하는 바이다.

朗慧라는 자는 그 후에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시 還俗하여 스스로 이름을 旻愼이라고 했다가 또 南愼이라고 고치고, (대개 우리 집의 신자 항렬을 따른 것임) 나의 칠대 방조 監司公 允祐의 아들 好謹派의 무후한 밑에 투탁하여, 한 譜冊을 만들어서 지방의 정씨 성을 가진 자들에게 퍼뜨리다가 결국은 탄로나, 諸宗에서 法司에 제소하였던 바, 그 간사함이 밝혀져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었다.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진주 석갑산 사건은 더욱 그 情狀이 지극히 교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음은 茶山公의 踏查(1791-辛亥) 후 <石岬山丁氏六塚辨>의 기록이다.

“大將軍墓에 비석을 세우고 ‘檢校大將軍丁公允宗墓’ 라고 새겨놓았는데, 자획은 제법 고르고 바르며, 새기기도 조금은 정교하다. 그러나 받침대 위로 나온 碑身이 碑根에 비교해서 두께가 2푼이나 줄어들었으니(오직 전면만 그러함) 이는 깎고 갈아 개각한 것이 분명하다. 비의 陰記의 자획은 비스듬히 기울었고, 새긴 방법은 마치 초동이 낮 끝으로 아무렇게나 그어놓은 것 같으며, 문장은 괴상하여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기록한 벼슬은 모두가 옛날의 높은 官爵들이다.

.....

신해 년 봄에 선친께서 진주 牧使로 가 계실 때, 나는 이미 藝文館 檢校를 사직하고 마침내 휴가를 청해 얻어서 진주로 놀러 가 선친을 따라 가서 육충을 살펴보기 되었다. 그 때 선친께서는 이미 여섯 무덤을 다 살펴보고 나시더니 나에게로 다가오셔서 물으셨다. “어떠냐? 이 모두가 낭혜가 저질러놓은 것이다. 다만 정변의 묘에 새긴 정자는 과시 고적으로 보이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저 정자를 전면에 새기지 않고 좌측에 새긴 것은 무슨 뜻이며, 정변 묘라 하지 않고 하필

정변 장이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며, 변자가 망치와 끝질로 개각된 것은 무슨 까닭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선친께서 “잘 생각해 보아라.” 하셨다. 그제야 나는 “그 이유를 알만합니다. 무릇 묘에는 ‘某公某名之墓’ 라고 쓰는 것이고, 埋葬은 ‘某年某月某甲葬’ 이라 쓰는 법이므로 저 丁字의 아래에는 반드시 丑 卯 酉 亥와 같은 干支 자가 있어야 하는데, 朗慧가 그것을 깎은 것입니다. 고인의 이름 같은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선친께서 부채로 손바닥을 치고 웃으시며 “네가 알았구나. 나의 생각도 바로 그렇다.” 고 하시면서 마침내 산에서 “석갑산 六塚은 정씨의 葬墓가 아니다.” 라고 단정해 말씀하셨다. 산 아래의 거주민들은 朗慧가 비를 뽑아서 깎아 세우고 간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 3. 所謂 大將軍墓의 陰文은 撰人도 虛僞이고 내용도 虛構다.

陰文의 撰人으로 되어 있는 崔世輔(? ~ 1193, 고려 명종23)는 人名辭典에 따르면 원래 천민출신으로 禁軍의 隊正이 되었다가 流矢의 變의 혐의를 받고 남해로 유배되었다가 武臣이 득세하자 복직, 1181년(명종11년) 知樞密院事, 1184년 門下侍郎平章事 判兵部事 上將軍에 올랐다. 1186년 武官으로서는 최초로 同修國史가 되어 《毅宗實錄》에서 왕의 殺害顛末을 왜곡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많이 기록하게 했다. 1189년 判吏部事가 되어 뇌물을 많이 받아 巨富가 되었고 이듬해에 守太師에 오른 인물이다.

이상과 같은 이력을 가진 그가 死亡하고 175년 뒤에 明(1368~1622) 나라가 건국되었는데 어떻게 알고 음문의 서두에 ‘有明高麗國’ 云云이란 말을 쓴단 말인가? 또 丁允宗의 출생지라고 한 義昌縣은 新羅 이래 義安郡으로 부르던 군을 고려 충렬왕 8(1282)년에 개명한 것인데, 1193년에 죽은 최세보가 약 90년 후에 개명된 郡名을 어떻게 먼저 알고 쓸 수 있단 말인가? 뿐만 아니라 그의 本貫을 羅州라고 했는데 그 당시 나주정씨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압해정씨가 본관을 나주로 바꾼 것은 조선조 영정조 시대였으니 고려시대에 무슨 나주정씨가 있단 말인가? 또 丁瓊의 벼슬을 都承旨(정5품)라 했는데 도승지의 최초 設職年代는 충렬왕 24(1298)년이다. 1193년에 죽은 최세보가 105년 뒤의 일을 어떻게 알고 그 官名을 쓴단 말인가?

《高麗史》에 의하면, 고려시대 5품 이상의 관직에 오른 丁氏 人物은 顯宗朝 親終郎將 丁悅, 明宗朝 兵部尙書 丁黃載, 神宗朝 內侍 丁公弼, 神宗朝 將軍 丁守弼, 神宗朝 樞密院副使 丁光叙, 高宗朝 知門下省事 丁彥眞, 高宗朝 尙書右僕射 丁公壽, 高宗朝 上將軍 丁純祐, 恭愍王朝 西北面都兵馬使 丁贊 등 9명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高麗朝科學事蹟》에 등재된 丁氏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고관을 지낸 文臣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陰文에 나오는 丁允宗 등의 官職이 門下侍中 中書門下平章事 大將軍 등과 같은 높은 官職이라고 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高麗史》에는 한 구절의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단 말인가?

따라서 이상과 같은 모든 虛構的 사실은 그 어떤 謀事者가 史實을 잘 알지 못하고 대충 그럴듯하게 造作해서 崔世輔의 명의를 빌려서 갖다 붙여놓았다는 사실을 檢證할 수 있는 명확한 證據라고 보여 진다.

朗慧가 다산가에 와서 석갑산 이야기를 한 것이 1729년이고, 다산선생이 <私譜辨>을 쓰신 것이 1791년으로 62년의 期間인데 그 사이 석갑산의 '大將軍丁公允宗之墓'에서 이미 앞 4자가 마멸되고, 丁良의 墓라고 주장하는 곳에는 '父令同正奕材' 6자가 마멸 되었다. 1079년에서 1228년까지 약 150년 간 조성되었다는 비석의 음문이나 사대석에 새긴 글자가 최소한 丁志譜가 명문을 베낀 1748년까지 520년간 161자 가운데서 겨우 5자가 마멸되었다면, 그 후 茶山선생 시대까지 62년 사이에 벌써 10개 이상의 글자가 마멸되고, 그 후 현재까지 겨우 28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모든 석물의 각자가 거의 判讀할 수 없을 만큼 마멸되었다는 것은 이는 朗慧가 활동하던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석갑산 육총의 비문 등이 일시에 變造되었음을 강력하게 示唆하는 物證이기도 하다.

#### 4. 마무리 말

이상 여러 가지 情況으로 볼 때 진주 석갑산 고분군의 육총을 정씨의 분묘라고 指定한 것은 역사적 사실은 물론 상식에도 어긋나는 지극히 잘못된 處事이며, 더욱이 나주정씨 선조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國史 및 譜史의 歪曲이며 錯誤였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참고로, 金元龍 박사의 논문은 오직 위작된 私譜만을 참고하였으며, 譜學界에서 公認하는 우리 측의 나주정씨족보는 전혀 참고조차 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아. 지정해제 반대 청원인(압해정씨 대종회) 제출의견

## 압해정씨 대종회

수신 : 진주시장, 경남도지사 귀중

참조 : 진주시 문화관광과(문화재계),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64호 지정 해제신청에 대한 기각 요청

귀 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위 압해정씨대종회(押海丁氏大宗會)는 압해정씨(押海丁氏) 선조들의 분묘가 있는 진주평거동 고려고분군의 수호 관리를 위해 귀 시의 많은 지원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음 사유로 나주정씨중앙종회와 그 대리인이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64호 지정 해제신청에 대해 기각 요청을 드리오니 선처바랍니다.

### 1. 기각신청 요지

첨부 청원내용은, 2014년 4월 4일(금) 실시된 진주평거동고려고분 현장 실사에 본 대종회 정○○ 사무총장과 정○○ 부회장이 대표로 참석하여 보고한 내용에 의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금번 실사는 丁氏 문중의 소계파인 ‘나주정씨중앙종회(羅州丁氏中央宗會)’와 그 단체의 위임을 받고 법무법인 태원(변호사 ○○○ 외1인)에 의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64호 지정 해제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건으로, 본 압해정씨대종회(押海丁氏大宗會)에서는 귀 시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신청인이 제기한 사적 제164호 지정해제 신청을 다음 내용을 검토하여 즉각 기각(棄却)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 나주정씨종회는, 2001년에 나주정씨종친회(羅州丁氏宗親會)와 나주정씨족보편찬위원회(羅州丁氏族譜編纂委員會)를 신청인으로 정씨상계문제(丁氏上系問題)에 이의를

제기, 압해정씨대중회가 추진하여 2002년 간행된 압해정씨대동보(押海丁氏大同譜) 임오보(壬午譜)의 제작, 출판,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고려시대 검교 대장군을 지낸 정윤종(丁允宗)을始祖로 주장하며 압해정씨시조 정덕성(丁德盛) 공을始祖로否認하면서 위 정윤종을 위 정덕성의 16세로 하여 15대를 날조하여 압해정씨족보를 편찬함은 나주정씨종중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주정씨족보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2. 2. 4경 서울지방법원의 제1심에서 위 나주정씨종친회는 패소(기각) 하였고(서증1: 2001카합2593 결정), 또 위 나주정씨종친회에서는 다시 항고하였으나 2002. 8. 14경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패소, 위 항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서증2 : 2002라108 결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나주정씨종친회에서는 이번에 또 다시 법무법인 태원(변호사 ○○○ 외 1인)에 위임하여 위 정윤종(丁允宗)과 손자 정량(丁良)이 진주와 아무런 연고가 없으므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64호 지정 해제 신청’을 진주시 문화재 담당과에 제출한 너무나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 위 나주정씨종친회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대부분의 자료는 2001년 정○○을 비롯하여 김○○, 신○○, 이○○ 등에 의해 작성된 허위 날조된 자료이며, 위 나주정씨종친회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작성하고, 실제적 진실을 왜곡하여 작성된 허위 문건이며, 이미 2001년 당시 법원에도 제출한 바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문건 뿐입니다.

따라서 본 압해정씨대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요약한 첨부 내용으로 소위 ‘나주정씨중앙종회’란 소계과의 임의 단체와 그 위임을 받은 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원(변호사 ○○○ 외1인)이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64호 지정 해제신청을 즉각 기각(棄却)시켜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 2. 기각신청 사유

1) 이번 문화재 지정해제를 신청한 나주정씨중앙종회(羅州丁氏中央宗會)는 압해정씨 5개 관파 중 하나인 나주파의 대표기관이 아니며 소계과인 월헌공계과의 일부 문중이기주의자들의 종원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로 나주파의 대표성이 없습니다.

압해정씨 통합구심체인 압해정씨대종회(押海丁氏大宗會: 고유번호:220-82-64943)에는 영광파(靈光派), 후창원파(後昌原派), 창원파(昌原派), 나주파(羅州派), 의성파(義城派) 등 5개 관파(貫派)가 있으며, 나주파(羅州派)에는 교리공계, 월헌공계, 생원기용계, 연안부사공계, 덕천공계, 사간공계 등 6개 소계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민원을 신청한 나주정씨중앙종회(羅州丁氏中央宗會)는 월헌공계파가 주류를 이루어져 형성된 단체이며, 월헌공계도 일부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나주파의 대표성이 전혀 없는 소규모 임의단체입니다.

2) 뿐만 아니라 진주 석갑산에는 신청인들이 자신들의 시조(始祖)라고 주장하는 제3호분의 피장자 정윤종(丁允宗)과 제6호분 위 정윤종의 손자인 피장자 정량(丁良)의 묘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원파, 의성파, 신녕거주 나주파의 中始祖인 제2호분의 피장자 정윤화(丁允樞)를 비롯하여, 제4호분은 丁允樞의 손자인 丁彦眞 분묘이고, 제5호분 피장자 丁桢은 제2호분 피장자 丁允樞, 제3호분 피장자 丁允宗의 祖父이며, 제1호분 피장자 정열(丁悅)은 丁允樞, 丁允宗의 증조(曾祖)에 해당하므로 석갑산은 압해정씨(押海丁氏) 전 관파의 선조 분묘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 나주정씨중앙종회의 지정해제 요청 자체가 자격없는 몰지각한 문중이기주의자들의 망발이며,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3) 위 나주정씨종회 신청인의 주장은 위 정윤종(丁允宗)과 위 정량(丁良)은 진주에 거주하였다는 자료도 없으며 본건 고분군이 위치한 진주 석갑산 일원 역시 나주정씨 문중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다 라는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64호 지정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이 주장은 사실과 달리 위 종중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위 종중에서 일부 학자들을 동원하여 작성한 터무니없는 허위자료에 근거한 주장일 뿐입니다.

4) 그 이유는 제3호분 피장자 대장(大將) 丁允宗의 碑文의 전문을 비롯하여 제1호분 丁悅의 묘지장과 6분의 선조의 분묘의 호석에 새겨진 금석문이 영남대 고서실에서 발견되었고, 이 자료는 위 나주정씨종회 한공파인 초암공파 후손이 서기 1751년 경 작성한 ‘압해정씨술선록(押海丁氏述先錄)의 부록’ 형태로 실려 있습니다.(서증 3)

위 ‘압해정씨술선록(押海丁氏述先錄)의 정윤종의 비문에 의하면 비문을 찬서(撰書)한 사람은 고려사 열전에 등장하는 최세보(崔世輔)이며, 정윤종은 진주와 가까운 의창현(義昌縣)에서 1093년에 출생하여 1170년에 사망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의 부(父)는 정경(丁瓊)이고, 조부(祖父)는 제5호분 피장자 정변(丁旻)이며, 증조(曾祖)는 제1호분 피장자 정열(丁悅)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압해정씨 대종회는 1999년 3월 경상남도 문화재위원인 김무조(金茂祚) 교수 등에 위 술선록의 진위(眞僞)여부를 의뢰하였습니다.

위 술선록 원문이 정윤종의 비문(금석문) 탁본, 본 압해정씨대종회가 소장하고 있는 1761년 정최대(丁最大)가 편찬한 영광정씨족보(靈光丁氏族譜) 권수(卷首)에 기록된 압해정씨족보(押海丁氏族譜)(서증 4)기록, 서기 1881년 정주우(丁周祐) 등이 편찬한 압해나주정씨족보(押海羅州丁氏族譜)(서증 5)의 정씨상대족보(丁氏上代族譜) 기록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비교 검토한 결과 모두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서증 6) 당시 김○○ 교수의 보고에 의하면 위 ‘정윤종의 비문을 탁본한 결과 최세보찬(崔世輔撰)이란 네자는 확실하게 위 술선록 기록과 같고 삼행(三行)에 있는 문하시중휘경조대상중서령(門下侍中諱瓊祖大相中書令)부분은 읽혀질 것 같다’ 라고 하였고, 이 술선록의 발견은 1000년의 석갑산 묘역의 전모를 밝혀 주는 지보(至寶)이며 지금 영남대 소장의 술선록은 석갑산 금석문을 대본(臺本)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이 가는 문헌’이라고 조사 결과보고를 발표하였습니다.(서증 6)

5) 또한 그 결과를 2000년 10월 위 신청인 나주정씨중앙총회의 고암공종회(羅州丁氏 顧菴公宗會)가 주최하여 ‘진주석갑산 분산변의 문제(晉州石岬山 墳山辨의 問題)’란 제목으로 관련자료를 배포하고 발표회도 하였습니다.(서증 6).

6) 이 조사결과는 국가사적 지적당시 1964년 국립박물관간행 미술자료 9호에 게재된 김○○ 교수의 ‘진주평거동 기년고려고분군(晉州平居洞 紀年 高麗古墳群)’의 논문(서증 7)과 서로 부합되는 결과임을 다시 입증하였습니다.

7) 또한 정윤하 교수는 당시 영남대 소장 押海丁氏述先錄에 대해 영남대 고서실에 근무하는 옥○○박사 (現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해제기록과 당시 김○○ 교수의 조사보고서를 요약하여 ‘대장정윤종의 비문’ 내용을 1999년 11월 10일 간행된 압해정씨종보 제42호 70-74쪽에 발표하였습니다(서증 8)

8) 그 후 2004년 3월 31일 압해정씨종보 제45호에 투고한 논고에서 정○○ 교수는 그 동안의 진행된 여러 결과를 다시 요약하여 ‘찬란한 진주석갑산 丁씨 선영(사적 제164호)의 왜곡’이란 제목으로 논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서증 9).

이 논고에 의하면 위 신청인 종중에서 시장 학자들에 의뢰하여 작성한 문건이 압해정씨 상대 선조의 족보사실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관직이나 외명부 명칭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간략히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신○○ 교수는 고려고분군의 명문(銘文)의 검토에서, 이농서(李隴西)의 묘지명을 적시하고 이농서는 사망년도가 1059년(문종13년)으로 제1호분 丁悅과 동시대의 인물이다. 아버지인 彦昇이 大相左右律大將軍을 역임하였는데 大相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 大相이란 국초의 官階大相이 아니고 鄉職으로 그 출신 배경을 말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彦昇의 관직이 大相左右律大將軍이면 鄉職의 品階가 될 수 없을 것이고 무슨 근거로 신○○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하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大將軍은 고려의 六衛에 속했던 종3품의 관직이며, 제1호분 주인공인 丁悅의 분묘의 호석의 면석에 새겨진 元豐2년 10월1일 大相丁悅之墓와 시기적으로 일치하며 서기 991년 출생한 丁悅이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1011년(顯宗2년) 거란 침입시 약관 21세에 別將(정7품)에서 親從郎將(정6품)으로 승진하였고, 朗將인 정열은 고려시대 무관 정6품을 역임하였고 거란 침입시 王인 顯宗을 직접 호종하였으므로 그 후 정열은 승승장구하여 출세의 가도를 달려 고관으로 되었다고 주장해야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 교수는 ‘丁悅의 호석의 면석에 새겨진 ‘大相丁悅之墓’의 大相을 9품의 鄉職으로서 大相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논리가 전혀 맞지 아니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은 ‘고려시대 夫人에게 주어진 묘지명이나 묘비명에 貞敬夫人, 貞夫人, 淑人 이란 호칭을 본 일이 없고 이들 명칭은 조선시대에 사용한 외명부 명칭이었다고 단정하나,

1968년 李蘭英 편저 韓國金石文추보에 실린 卞韓國大夫人柳氏墓誌銘(1344년)에 特贈諡卞韓國...淑大夫人이 있으므로 특별히 시호를 받아 淑大夫人이란 外命婦 호칭이 추가로 특별히 추증된 사실이 나타나고(서증 10),

卞韓國大夫人崔氏墓誌銘(1347년)에서도 .... 拜首相夫人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점 (서증 11)으로 볼 때 신천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貞敬夫人의 외명부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9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간행)에 고려 成宗때 문무상참관(文武上參官)이상의 모와 부인에게 封한 것으로 李英淑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은 丁允宗의 碑文을 撰書한 최세보(崔世輔)를 지칭하며 그런 무식하고 한미한 가정에 태어난 일천한 자에게 丁允宗의 비문을 부탁하였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인의 주장이라 판단하기 어렵고 이들 문건도 위 신청인의 종회의 지원을 받아 신천식은 '진주평거동 고려고분군 연구(2002년)'이란 서책까지 발행하여 당시 법원재판에도 위 신청인 종회가 이용하였습니다.

이○○ 교수는 위 신청인의 종회의 지원을 받고 간행한 한국의 성씨와 족보연구(押海丁氏를 중심으로)이란 논고에서 주장하기를 압해정씨(押海丁氏) 시조는 정윤종(丁允宗)이며 세종 14년(1432년)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나타나는 토성(土姓)은 고려 태조 23년(940년)전후하여 각읍별로 최다 10여 성에서 최소 3, 4성을 (土姓) 分定을 했던 것이며, 羅州牧의 屬縣이었던 押海縣의 土姓인 丁朴 朱 江南氏도 이때를 기하여 姓과 本貫을 갖게 되었다고 본다. (李樹健 저 2002년 나주정씨선계연구 중)라는 주장은 너무나 황당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많은 문제점과 뒤틀린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기 1170년경 사망한 丁允宗이 어떻게 230년 前인 고려 태조23년(940년)년에 押海縣에 土姓의 分定을 받아 押海丁氏 始祖가 수 있는지를 反問하게 합니다. 따라서 高麗 초기 王建에 의해 토성(土姓)분정을 받은 押海丁氏는 서기 853년 당나라에서 귀양 온 押海丁氏시조 丁德盛공과 그의 후손들이 土姓의 分定을 받았다고 해야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수의 압해정씨에 대한 그의 주장이 학계의 보편적 학설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형태가 되었고 김○○ 교수의 고려초기의 본관제도의 논문(서증 12-1)에서도 이수건 교수의 土姓分定說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보편적 학설이 아님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소위 다산 정약용이 쓴 政丞墓辨에서 주장하는 丞相이란 漢나라 관직이지 唐나라에는 그러한 관직이 결코 없었다 라고 단언하였으나 본 압해정씨 대종회에서 조사한 결과 唐書 本紀의 여러 곳에 丞相과 大丞相의 관직이 있고, 大唐六典에는 封君 封爵제도 나타나므로 제4호분 주인공인 丁彦眞이 쓴 丁氏世蹟序(華補齋 太傅公舊序, 1209년)에 押海丁氏 始祖 大陽君 丁德盛공이 唐나라에서 大丞相을 역임했고 大陽君으로 封君받았다는 族譜 서문 내용은 족보 차원을 넘어 史料的 가치를 지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정○○ 교수는 낭혜가 다산 조부자 3대에 걸쳐 실지를 답사결과를 근거로 제시 하며 정윤종의 비를 요승 낭혜(朗慧) 丁南愼이란 자가 제3호 피장자 丁允宗의 비문을 비롯하여 비문을 나주정씨 조상인 것처럼 날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번 실사에도 분명히 밝혀진 바와 같이 丁允宗의 비문 前面에 새겨진 允宗 부분은 날조된 흔적이 전혀 없고, 특히 제5호분 丁桡의 桡자를 현장실사에서 심사위원도 확인 한 바와 같이 殘刻으로 보아 정변(丁桡)의 桡자중 아직도 木의 부분과 彳의 글자의 殘劃이 선명히 남아 있으므로 위 신청인들이 주장이나 다산 조부자 3대의 조사결과가 분명히 錯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 교수가 1964년 사적 지정 당시 발표한 바와같이 제5호분(丁桡) 명문은 高麗體의 楷書인데 丁桡의 桡자만은 표면이 탈락되어 石色이 새로우나 殘劃으로 보아 原刻이 틀림없으며, 族譜에 실린 丁茶山의 調查記에서 桡자는 後人의 補刻 이다 고 하였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단이다 고 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김○○ 교수도 영남대 述先錄의 발견으로 異說이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고 하였습니다. 또한 김○○ 교수의 견해처럼 高麗의 전형적인 楷書體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9) 따라서 위 羅州丁氏宗會가 피장자 제3호분 정윤종(丁允宗)과 제6호분 피장자 정량(丁良)이 사적 지정된 고려 고분군과 관련이 없다 라는 주장은 시장 학자들을 동원하여 만든 허위 날조된 주장일 뿐이며, 金石文도 부정하고 심지어 역사학계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가사적으로 지정한 국가문화재 조차 부정하면서 사적 164호 문화재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상상조차하기 힘든 행위를 서슴없이 자행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 신청인 중중이 편파적으로 임의 작성한 문건에 근거한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인 것입니다.

압해정씨대중회를 상대로 소계파인 나주정씨중친회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과 2002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에서 패소당하고 기각 처분을 받게되자 이번에 또 다시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64호 지정 해제신청’이란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이치에 닿지도 않는 허위주장을 다시 진주시에 제시하고 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신청은 즉각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10) 소위 진주목사 丁載遠과 소위 茶山 丁若鏞의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는 위 2001년 법원 재판시에도 제출한 바 있고 심지어 위 종중의 1931년 辛未譜에 처음 등장하는 문건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고 연대도 맞지않는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사적을 훼손하고 부정하려는 음모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미 위 신청인 종회의 대석학 정○○ 교수에 의해 간행된 압해정씨 종문고록(押海丁氏宗門考錄)(서증 13)에 의해 앞뒤가 서로 뒤틀린 오문(誤文)일 뿐만 아니라 일부 대사헌공파 종원들의 문중이기주의자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이라 지적하였습니다(서증 14)

위 문건은 위 종중이 1870년 발행한 羅州丁氏 경오보(庚午譜)에도 없고, 뒤늦게 1931년 나주정씨 신미보(辛未보)와 1961년 나주정씨 신축보(辛丑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건을 오용한 자료일 뿐입니다.

본 압해정씨대중회 상대계보연구위원회(上代系譜研究委員會)에서는 1999년 이들 문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유당전서에 실린 소위 다산 정약용의 ‘석갑산 정씨육충변의 오류’(서증 14)와 진주목사를 역임한 소위 정재원의 ‘진주석갑산 분산변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위 1999년 11월 10일 발행 압해정씨 종보 제42호에 상세히 게재하였습니다(서증 15)

11) 11세기이후 문중에 전래되는 압해정씨 문중의 족보, 족보서문, 술선록, 가첩 등 많은 문헌과 방대한 자료를 집대성한 위 신청인 종중의 대석학이신 정규복(丁奎福) 교수가 편찬한 압해정씨 종문고록(押海丁氏宗門考錄) 문헌에 의하면, 진주 석갑산에 안장된 선조들은 상대보계에 입적된 선조들이며, 그들의 생몰연대와 관계성이 석갑산 묘지문(墓誌文)의 기록과 너무나 이치적으로 부합, 일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첨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서증 13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①석갑산 제1호분의 피장자인 정열(丁悅)은 고려사에 등장하며 고려헌종1년(1095년)참지정사를 역임한 진숙(陳淑)이 작성한 “檜軒公 丁悅(991~1079)墓誌”에 등장하는 실존인물이며, 정열의 빙부가 강감찬(姜邯贊948~1031)장군으로 기록되어 있고 거란 침입시 강감찬과 지체문 하공진 등의 진영에서 약관의 나이에 전공(戰功)을 세운 외교관이자 별장(別將)과 현종(顯宗) 왕을 호종한 친종낭장(親從郎將)을 역임한 역사적 인물로 연도와 상황이 고려사 기록과 부합되는 것은 피장자 정열의 분묘이며 역사적 인물의 분묘임을 더욱 신빙할 만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陳淑이 쓴 丁悅의 墓誌(1095년)”는 영남대 소장 압해정씨 述先錄(서증 16), 정주우(丁周祐)의 “압해나주정씨족보(押海羅州丁氏族譜)”(1881년)(서증 17), 정석환(丁錫煥)의 “昌原丁氏族譜”(1854년)에도 등재되어 있는 것은 그 문전의 출처가 근거에 의해 작성된 신빙할 만한 문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②제4호 피장자 정언진(丁彦眞)은 고려사열전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大將軍으로 경주민란을 토벌하고, 知門下省事로 있다가 졸한 丁彦眞이며, 그 친형인 丁彦重이 쓴 선부군(先府君) 奕煌<1114~1194>의 墓誌(1194. 10)에서는 彦重은 혁황(奕煌)의 장남으로 시조 大陽君 丁德盛공의 대한 언급 외에도 석갑산 제1호분의 피장자인 정열(丁悅)은 고조(高祖)이며, 제5호분의 피장자인 정변(丁旻)은 증조(曾祖)이고 정경(丁瓊)은 조(祖)이며, 제2호분의 피장자인 정윤화(丁允樞)는 선고(先考)이고, 제4호분의 주인공인 弟氏 丁彦眞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혁황(丁奕煌)의 墓誌역시 정주우(丁周祐)의 “押海羅州丁氏族譜”(1881년)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서증 18).

③석갑산 제4호의 피장자인 丁彦眞은 고려사열전과 고려사절요에 등장하는 인물로 大將軍으로 경주민란을 평정하고 知門下省事로 있다가 1215년 졸한 년도가 이 분묘의 호석에 새겨진 매장 연도인 가정(嘉定)8년(1215년)과 부합되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정언진이 1209년 쓴 화보재구서(華補齋舊序(일명 丁氏世蹟序 고려 희종5년 1209년 지음)의 서문과 관련 내용이 1776년 정몽량(丁夢良)의 의성정씨 용담 병술보(義城丁氏 龍潭 丙戌譜)와 1854년 丁錫煥의 “昌原丁氏族譜”(서증 19), 1881년 정주우(丁周祐)의 압해나주정씨족보(押海羅州丁氏族譜), 1929년 압해정씨 기사 대동보(押海丁氏己巳大同譜)에 모두 등재되어 있습니다.

④신청인 종중인 월헌공계과(고암공파)의 후손이 1725년 쓴 나주정씨술선록(羅州丁氏述先錄)에 의하면 시조 대양군 정덕성(丁德盛)을 1세로 하고 3호분 피장자인 정윤종(丁允宗)을 시조 15세(16세) 제6호분 피장자인 정량(丁良)을 시조17세(18세)으로 하였는데, 이것이 압해정씨 보계와 일치하고 있는 점은 석갑산의 분묘가 丁允宗과 丁良의 선조 가족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⑤1761년 丁最大의 “영광정씨족보”에도 제1호분 피장자인 丁悅, 제3호분 피장자 丁允宗, 제4호분 피장자 彦眞공, 제5호분 피장자 丁旻, 제6호분 피장자 良, 모두 가족관계이며 丁允宗은 丁瓊의 하계(下繼)라고 범례(凡例) 적시하여 모두 丁悅의 후손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이 족보는 다산 정약용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제작된 족보임)

12) 晉州石岬山墳山辨(1931년 辛未譜, 1936년 與猶堂全書 ) 문헌적 비판 다산공 3대 즉 정지해(志該:1712~1750),牧使公 정재원(載遠:1730~1792), 茶山公 정약용(若鏞:1762~1836)의 글로 되어있는 晉州石岬山墳山辨은 석갑산정씨묘의 부정적인, 긍정적인 면이 공존하여 후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글은 상황과 연대가 맞지않아 과연 이 글을 목사공 이나 다산공이 썼다고 볼 수 없는 謬文이며, 僞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위 신청인 종중의 대석확인 정○○ 교수의 논문과 저술에서 아래와 지적하였습니다.

① 丁志該가 서기 1729년 소위 요승 낭혜(朗慧) 정남신(丁南愼)으로 부터 석갑산 육충을 듣고 왜 19년만인 1748년에 겨우 석갑산을 찾았으며 그 당시 역풍습인 개묘까지 하였는가 라는 것이며 당시의 정황들에 대한 상세한 기술도 없다는 것은 이 문헌의 진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② 다산공의 글 말미부분에 “英祖癸亥春 載遠適知晉州” 는 “영조계해년은 서기 1743년으로 재원공이 14세때 진주 목사를 하였다는 것이고, 다산공이 태어나기도 전에 진주로 가서 석갑산육충을 답사하였다는 것”인데, 연대가 맞지않는 謬文이며, 이것이 후세에 조작된 僞作임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분산변에 의하면 낭혜가 丁門에 功을 세우기위해 석갑산 육충을 자의로 개각 변조하고 이를 지해공에게 알렸다는 것인데, 그러나 실존해 있는 석갑산육충은 규모가 거대한 규모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일개인이 그 당시 수공업시대에 그 많은 돌을 운반하여 변조할 수 있었겠는가? 승려의 신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④ 정윤종의 비문을 쓴 최세보(崔世輔)는 고려사에 의하면 무식하고 한미한 가정에서 태어나 악명 높던 무신(上將軍)이어서, 신청인 종중 일부가 정윤종의 분묘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주된 원인일 것으로도 생각되지만, 오히려 최세보이란 인물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고, 비문에 적힌 崔世輔의 관직이 高麗史 기록과 부합됩니다.

⑤ 종중의 화목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석갑산 분산변을 목사공 정재원공이 쓰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 문전이 이루어진 것이 18세기 이었을 텐데 왜 庚午譜(1870년) 삽입되지 않고 己巳大同譜(1929년) 발간으로 경과와 지방과로 분열된 이후 발간된 辛未譜(1931년)에 갑자기 등재되었는가는 것입니다.

⑥ 위와 같이 석갑산육충변은 상황적으로나 당시 풍습으로나 연대적으로 맞지않는 僞作으로 당시 지식인 목사공과 다산공이 썼다고 볼 수 없으며, 경과와 지방과를 분리하고자 하는 소수 문중이기주의자들이 날조한 문서인 것입니다.

13) 위 신청인 종회 정○○ 교수는 1600년대 진양읍지 등에 羅州丁氏가 거주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나주丁씨 일족은 진주지방에 세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세종14년(1432년) 世宗實錄地理志에 보면 義昌縣(昌原)에 村姓으로 丁氏, 仇氏가 있으며 旌州 지방과 가까운 漆原縣에 土姓으로 金, 尹, 丁氏가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이 旌州부근에 丁氏가 集姓村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 위 신청인은 사적지 지정 해제가 어렵다면 고분군중 제3호 丁允宗 묘와 제6호 丁良 묘는 羅州 丁氏 선조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은 羅州丁氏 전체 문중의 뜻이 아니며, 월헌공계중 일부 소수의 문중이기주의자들의 요청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다시 말해 윤종공의 후손인 나주정씨에는 위 신청인 ‘나주정씨중앙종회’의 주류를 이루는 월헌공계과 이외 교리공계과, 생원기응공계과, 연안부사공계과, 덕천과, 사간공계과등 많은 소문중이 있으며, 이번에 신청한 나주정씨중앙종회와는 뜻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문중간 이견에 대한 판단은 진주시나 문화재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며 문중간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서증 20).

15)무엇보다도 진주 석갑산 국가사적 제 164호는 1964년 서울대 김○○교수팀의 철저한 답사와 고증을 통해 고려시대 고분군으로서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 문화재위원회를 통해 국가사적 제164호로 지정된 것이지 丁氏門中の 묘소라서 지정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16) 진주 석갑산 丁氏고분군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이미 1964년 세계적 고고학자인 김○○박사에 의해 고려고분군으로 밝혀져 1968년 국가사적 164호로 지정되었고, 아울러 서기 1999년 경상남도 문화재위원 김○○박사에 의해 丁氏묘의 고려고분으로 재확인 된 바 있습니다.

### 3. 청원사항

위 신청인 나주정씨중앙총회와 위 대리인의, 여러 전문가로부터 검증을 받고 국가사적으로 국가가 공인한 바 있는 진주평거동 고려고분군의 사적 제164호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은 소수의 문중이기주의자들의 합리성이 결여되고 상황과 연대가 맞지 않게 날조된 진주 석갑산분산변 등에 기초한 시장 학자들의 허위주장으로 작성된 문건들이며 허무 맹란한 주장일 뿐입니다.

따라서 본 압해정대총회(押海丁氏大宗會)는 丁氏 문중의 20만 종원을 비롯 국가 문화재를 사랑하는 진주시민과 국민들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위 신청인 소위 ‘나주정씨중앙총회’와 그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태원’이 요청한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164호 지정 해제신청’을 진주시와 문화재위원회에서 즉각 기각(棄却)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2014년 4월 14일

위 청원인

押海丁氏 大宗會長 丁世均

직인

## 서증 목록

1. [서증 1] 2002년 서울지방법원 1심 판결문 (2002. 2. 4)
2. [서증 2] 2002년 서울고등법원 2심 항고 판결문(2002.8. 14)
3. [서증 3] 영남대 고서실 소장(귀중본) 압해정씨술선록
4. [서증 4] 丁最大, 압해영광정씨족보(1761년)
5. [서증 5] 丁周祐, 압해나주정씨족보(1881년)
6. [서증 6] 김무조 외 3인, 진주 석갑산 분산변의 문제 (2000. 10)
7. [서증 7] 김원룡, 진주평거동기년 고려고분군  
(국립중앙박물관 발행 미술자료 제9호, 1964)
8. [서증 8] 정윤하, 진주 석갑산의 大將丁公允宗之墓의 碑文  
(압해정씨종보 제 42호 1999. 11. 10)
9. [서증 9] 정윤하, 찬란한 진주석갑산 丁씨 선영(사적 제164호)의 왜곡  
(압해정씨종보 제45호, 2004. 3. 31)
10. [서증 10] 卞韓國大夫人 柳氏墓誌銘(1344년)  
(1968년 이난영 편저, 이병도 감수 한국금석문 추보)
11. [서증 11] 卞韓國大夫人 崔氏墓誌銘(1347년)  
(1968년 이난영 편저, 이병도 감수 한국금석문 추보)
12. [서증 12] 김수태, 고려초기의 본관제도-본관과 성의 관계를 중심으로(1998)
13. [서증 13] 정규복, 압해정씨종문고록(2007.4)
14. [서증 14] 압해정씨대종회, 석갑산 정씨육충변(여유당 전서)의 오류  
(압해정씨종보 제42호, 1999.10)
15. [서증 15] 압해정씨대종회, 정재원공의 진주정씨육충변(1931년 신미보)과  
진주석갑산분산변(1961년 신축보)의 오류,  
(압해정씨종보 제42호, 1999.10)
16. [서증 16] 회헌 丁悅 선생의 묘지명(1095년)  
[출전:영남대 소장 압해정씨술선록 1751년]
17. [서증 17] 陳淑의 회헌 丁悅의 묘지명(1095년)  
[출전:정주우 편저 압해나주정씨족보, 1881년]
18. [서증 18] 丁彦重의 부군 奕煌의 묘지명(1194.10)  
[출전:정주우 편저 압해나주정씨족보, 1881년]
19. [서증 19] 정규복, 진주석갑산분산변의 문헌 비판,  
[출전: 정규복의 압해정씨종문고록 중(2007.4)]
20. [서증 20] 丁允宗공의 비문 복원을 위한 건립위원회 명단(2009년)

## 자. 의결사항

### ○ 부결

- 평거동 고분군은 피장자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지정근거는 고려시대 축조된 동일 가계(家系)의 묘제방식 및 축조방식에 있어 학술적, 문화적 가치와 희소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사적으로 유지관리 타당함

## 5. 당진 솔피마을 천주교 성지 사적 지정 검토

###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당진 솔피마을 천주교 성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신부와 김대건신부의 증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아버지 등 4대에 걸친 순교자가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는 당진 솔피마을 천주교 성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서의 지정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 당초 ‘당진 김대건신부 생가지’로 지정신청하였으며, 사적분과 제7차 회의(’14.06.11) 시, 시굴조사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어, 시굴조사 후 지정면적, 지정명칭 등을 변경하여 신청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당진 솔피마을 천주교 성지
  - \* 당초 : 당진 김대건신부 생가지(충청남도 기념물 제146호/1998.7.28 지정)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116 외
- (3)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면적 : 3필지(13,121㎡)/ 문화재구역
  - \* 당초 : 3필지 (2,000㎡)/ 문화재구역
- (4) 관리단체(안) : 솔피성지 (대표자 이용호 신부)
- (5) 변경사유
  - 4대에 걸친 김대건신부 가문의 순교정신과 김대건신부의 출생, 천주교 전래과정 및 박해과정 등을 집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유적’ 의미를 내포한 광의의 개념으로 변경, 자연지명인 ‘솔피’와 유적의 핵심 성격을 알 수 있는 ‘천주교 성지’를 포함하고자 함

## 라. 시굴조사 결과

###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14. 6. 20~25(실조사수 3일)
- 조사면적 : 1,110m<sup>2</sup>
- 조사기관 : (재)동방문화재연구원

### ○ 조사결과

- 조선시대 이후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7기, 구상유구 5기, 주혈 6기 등 총 18기의 유구 및 백자편 출토

### ○ 조사기관 의견

- 조사지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형이 대지조성과 관련되어 변경되었으며, 기반층인 적갈색 점토층에 조성된 유구 및 유구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김대건신부 생가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단서는 확인하지 못함
- 하지만 19세기~일제 강점기 이전, 기반층인 적갈색 점토층에 조성된 유구와 이들 유구를 덮고 있는 암회색 사질점토층(1차 성토 다짐층)에서 출토된 유물들로 보아, 조사지역 내에 김대건신부가 생존하였던 19세기 전반기에도 생활유적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 자문의견(충남대학교 ○○○, 공주대학교 ○○○)

- 확인된 유구는 구상의 형태일 뿐 성격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생활의 흔적만 유추할 수 있는 정도이며, 부분적으로 생활면에 19세기 정도로 판단되는 유물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해당 지역에는 19세기 즈음 생활 관련 유적이 존재하였다는 사실 외에는 구체적 성격의 유구는 발견되지 않았음

## 마. 현지조사의견('14.05.25/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 (1) 문화재 현황

####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에 위치한 '솔피'는 소나무 숲이 우거진 산(松山)이라는 뜻에서 유래하며,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신부인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으로 '솔피성지'라 불림. 현재 솔피는 1998년 충남기념물 제14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생가터에 생가를 복원(2004년)하여 관리 중임

#### ○ 연혁·유래 및 특징

- 김대건 신부는 1821년 솔피에서 출생하였고, 1845년 사제로 서품되어

최초의 한국인 신부가 되었다. 1846년 새남터에서 순교하였고, 이후 1984년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집전으로 시성되었음

- 김대건 신부는 1836년 모방(Maubant, 羅) 신부가 부활절을 전후하여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를 방문하던 중 '은이공소'에서 14세대 신학생 후보로 선발되어 세례를 받고 마카오로 유학을 떠났음. 입국 이후 서울 및 은이공소를 순방하고 1846년 5월부터 서해를 통한 선교사의 입국항로를 개척하는데 사명을 수행하였으며, 6월 5일 순위도에서 체포되어 서울의 포도청으로 압송되었음. 김대건 신부는 포도청에서 40여 차례의 문초를 받고, 9월 15일 국가반역죄로 사형이 선고되어 16일 새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으로 순교하였는데 당시 26세였음. 시신은 한강 백사장에 가매장되었다가 40일 후 이민식에 의해 안성 미리내에 안장되었음. 현재 김대건 신부의 유해는 순교자 유해신심에 따라 나뉘어져 서울 혜화동 가톨릭대학교성당(두개골), 솔피(모발), 익산 나바위성당(목뼈), 미리내성지(하악골), 절두산성당(치아) 등 여러 성당과 성지에 분산되어 보존되고 있음

## (2) 종별 및 명칭(안)

- 종별 : 사적
- 명칭(안) : 당진 김대건신부 생가지(唐津 金大建神父 生家址)

## (3) 지정면적

-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116 등 총 3필지 2,000㎡
  - 문화재구역 : 2,000㎡
  - 보호구역 : 없음

##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신청 생가지는 한국 최초의 사제인 聖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탄생한 자리로 전해지며, 김대건 신부의 증조 할아버지인 김진후 비오(1814년 해미에서 순교), 작은 할아버지 김종한 안드레아(1816년 대구 관덕정에서 순교), 아버지 聖 김제준 이냐시오(1839년 서울 서소문 밖에서 순교) 및 리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1846년 서울 한강 새남터에서 순교)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친 순교자가 살았던 곳이라는 가치가 있음
- 이처럼, 생가터인 솔피는 조선후기 천주교 전래과정 및 정치·사상적 격변을 반영하는 대표적 천주교 유적지임은 인정되나, 생가지의 위치에 대하여 1900년대에 구전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근래의 복원은 발굴 등의 고고학적 조사가 없이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복원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바. 참고사항

### (1) 서면자문의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 1. 김대건 생가터 확인의 근거

##### ① 김대건의 신학교 입학관계 문서

- 1836년 12월 3일자 조선에 파견된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 모방(Maubant) 신부가 파리의방 전교회 신학교 학장(Supérieur)에게 보낸 공문 : 김대건 등이 신학공부를 위해 마카오로 파견되기 직전에 김대건으로부터 받은 서약서에 김대건이 “충청도 면천 솔피 태생”으로 기록되어 있음. ‘면천’ 솔피는 1914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재조정 과정에서 당진군으로 편입되었음. 이 공문은 현재 파리의방전교회 고문서고에 보존되어 있음.

##### ② 교회 내의 기타 자료

- 1840년대 이래 김대건에 관해 프랑스 선교사들이 프랑스어로 한 교회 내 많은 자료들에서 그가 ‘충청도 출신’ 혹은 ‘충청도 내포’ 출신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 이는 그의 출생지가 면천을 포함하고 있는 내포 혹은 충청도임을 확실히 말하는 것으로 판단됨

##### ③ 한국교회의 증언 전통

- ‘면천 솔피’에서 현재의 위치가 김대건 생가터라는 증언자료 다수가 확인됨. 천주교에서는 순교자를 특히 존중해 왔으며, 조선인으로 첫 번째 사제였던 김대건에 대한 존경은 그의 생시부터 이어져 왔음. 이러한 풍토에서 김대건이 살아있던 당시부터 신자들은 현재의 솔피성지 안에 있는 그의 생가터 위치를 그가 출생한 곳임을 증언해 왔음

##### ④ 생가터 확보를 위한 노력(1906년)

- 1906년에 합덕 성당의 제3대 주임신부로 부임한 크럼프 신부는 당시 신자들과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현재의 생가터의 위치를 거듭 확인하고 부근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노력했음.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그의 생가터 일대의 토지를 천주교회는 축차적으로 매입해 왔음

##### ⑤ 김대건순교 100주년 기념비(1946년)

- 1946년 김대건 순교100주년을 기념하여 김대건의 순교기념비가 현재 생가터로 지적되어 있는 그 위치에 세워졌음

《小結》 김대건의 생가터와 관련된 문헌자료는 객관적 사료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음. 또한 그의 생가터에 대한 증언도 ‘종교적 열광주의에 의한 조작된 증언’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증언임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이상의 문헌자료와 증언 등에 입각하여 판단할 때, 교회측에서 말하는 현재의 생가터가 김대건의 출생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2. 국가지정 문화재로의 승격에 대한 의견

### ① 세계 가톨릭교회의 존경 대상

- 김대건은 현재 전세계 14억명의 가톨릭신자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성인 (Saint)으로서 그에 대한 존경의 마음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퍼져 있음

### ② 한국 근현대사의 역사적 인물

- 김대건은 조선후기 이후 한국근현대사의 이해과정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발전에 일정하게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역사적 인물의 출생지에 기념의 관행에 따라 김대건의 출생지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③ 한국 종교문화의 특이성

- 한국은 다종교사회이다. 230여년전 한국에 전래된 그리스도교는 현재 전체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교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그 구성원들이 한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한국그리스도교 신앙의 수용과정과 관련된 문화현상에 대한 국가적 인정과 평가가 요청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국가지정 문화재나 사적지로 지정된 그리스도교 문화재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한국이 다종교 사회임을 감안하면, 그 역사적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문화재나 사적지도 국가 지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 3. '국가지정 사적지'의 기대되는 효과

### ① 문화재 및 사적지 보호관리의 강화

- 솔피의 김대건 생가터를 사적지로 지정함으로써 문화재 및 사적지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음. 동시에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여타 주요 사적지에 대한 인식과 보호관리의 방안을 강화하는데 간접적 도움을 줄 수 있음

### ② 문화재와 사적지에 대한 애호심 강화

- 현재 '솔피성지'의 연간 방문자는 10여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외국인 방문자도 2천여 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 방문객에게 문화재 내지 사적지에 대한 애호심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③ 한국사회에 대한 국제홍보의 강화

- 김대건 생가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통해 한국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사적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강화할 수 있음

**(2) 천주교 관련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현황**

지정별	문화재명	비고
사적 제399호('97.11.11)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1866년 병인박해 시 많은 천주교인(약 8천명)이 처형된 곳
사적 제252호('77.11.22)	서울 약현성당	
사적 제287호('98.09.25)	인천 답동성당	
사적 제290호('81.09.25)	대구 계산동성당	
사적 제318호('87.07.18)	익산 나바위성당	
사적 제424호('01.01.04)	대한성공회 강화성당	
사적 제520호('12.06.20)	서울 용산신학교	
사적 제521호('12.06.20)	서울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3) 사적(신청지) 지정 면적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소유자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성명	주소
1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116	대	1,707	1,707	-		
2		116-1	대	9	9	-		
3		산45-3	임	11,405	1,1405	-		
계	3필지			<b>13,121</b>	<b>13,121</b>		사유지 100%	

**(4)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재의 종류	지정기준
사적	<p>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p> <p>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p> <p>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난 것</p> <p>다.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p> <p>라.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p> <p>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p> <p>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p> <p>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p> <p>다. 역사(驛舍)·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p> <p>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p> <p>마.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p> <p>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p>

(5) ‘사적의 지정 및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발췌 (문화재청 예규)

조 항	내 용
제2조 (일반원칙)	<p>사적 지정 명칭 부여의 일반원칙은 아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적 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전래되어 오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적의 소재지와 유형을 조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li> <li>2. 사적 지정 명칭은 사적의 연대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li> <li>3.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고, 괄호( )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다만, 명칭과 한자를 병기할 시 ‘음’이 다를 경우 큰 괄호[ ]로 표기한다.</li> <li>4.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사적의 성격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될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li> </ol>
제3조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유형)	<p>사적 지정명칭의 부여를 위한 유형은 아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유한 명칭(호를 포함한 자연인의 이름)</li> <li>2. 고유한 명칭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도 동일 유형의 사적이 있어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군·구」+(읍·면·동·리)+ 사적명칭”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시·도」+(시·군·구)+ 사적명칭”으로도 할 수 있다.</li> <li>3. 당해 사적이 주변 환경을 포함하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경우 사적명칭에 “일원(지구)”을 붙일 수 있다.</li> </ol>
제4조 (지역명칭 표기 예외사항)	<p>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시 지역명칭 표기의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술적으로 검증되고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지역명은 그대로 살려 쓴다.</li> <li>2. 고증에 의한 지역명이 아니더라도 그 명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역 명칭은 그대로 살려 사용할 수 있다.</li> <li>3. 지역명이 사적명칭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li> <li>4. 2개 이상의 지역이 연관된(포함)된 사적에는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li> <li>5.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은 지역명칭을 붙이지 않는다.</li> <li>6. 지역명을 붙이지 않아도 명칭이 인지되는 경우, 안내판, 교통표지판 등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li> </ol>
제6조 (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서원, 향교, 학교, 병원, 교회, 성당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li> <li>나. 기타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li> </ul> </li> <li>6.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의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인물유적은“지역명+이름+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li> <li>나. 사건유적은“지역명+사건명+유적”으로 사적 명칭을 표기한다.</li> <li>다. 인물(개인)의 제단, 사당 등 제사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li> <li>라. 기타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li> </ul> </li> </ol>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지정명칭 조정 후, 예고토록 함

\* 「당진 솔피마을 김대건 유적」 등

## 6. 강릉 임영관 지정명칭 변경 검토

### 가. 제안사항

강원도 강릉시 소재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의 지정명칭 변경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강릉시에서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 (江陵 臨瀛館)의 명칭을 「강릉 대도호부 관아」 (江陵大都護府 官衙)로 변경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 '13년도 14차 사적분과(12.11) 검토 결과, 건물 중건시기 등 사실관계 확인 등 자료보완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됨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릉 임영관(사적 제388호)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38-1 외
- (3) 신청내용
  - 명칭변경
    - 현행 : 강릉 임영관(江陵 臨瀛館)
    - 변경 :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
      - ※ (2안) 강릉부 관아(江陵府 官衙)
  - 명칭변경 요청사유
    - 관아(官衙)는 조선시대 지방행정 기관이 위치한 읍치(邑治) 공간으로, 관아에는 수령의 정청인 동헌(東軒), 국왕의 위패를 모시는 객사를 비롯한 향청, 절청, 관노청, 군기청 등 지방행정 기구를 모두 갖추어 건립된 곳임
    - 강릉 임영관은 고려 태조 19년인 936년 강릉부의 객사로 창건된 이래 1929년 일제강점기 훼손되기 전까지 유지된 건물로, 훼손 이전에는 정청(正廳)인 전대청(殿大廳)을 중심으로 좌우 익사(翼舍)로 구성되었음. 전대청은 왕의 전패(殿牌) 또는 궐패(闕牌)를 모셔두고 지방관이 대궐을 향해 망궐례를 올리던 장소이며, 좌우 익사는 지방군현에 파견된 사신이나 외국 사신이 오갈 때 머물던 숙박 공간임

- 강릉 임영관은 일제강점기 국권 상실로 객사의 기능이 정지되면서 공립보통 학교로 활용되다가 관아시설과 더불어 훼손되면서 임영관 삼문만 남게 됨
- 현 지정명칭인 강릉 임영관은 1994년 객사 영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며, 2005년 구 강릉 시청사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관아 관련 유적이 확인됨에 따라 관아 건축의 귀중한 자료로 인정되어 지정구역으로 추가지정됨
- 강릉 임영관은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한 복원사업에 따라 2006년 전대청, 중대청 및 좌우 익사가 복원 완료되었으며, 객사 전면인 동헌영역의 아문, 동헌 및 별당 등 복원사업은 2012년 마무리됨
-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의 복원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른 지역 향토 사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지정명칭의 사용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2년 지정명칭 변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 객사공간과 동헌공간을 포괄하는 명칭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당초 지정명칭인 강릉 임영관은 객사공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행정 공간으로서의 동헌공간을 포함한 읍치공간(邑治空間)을 아우르는 명칭으로는 부적합하여 용역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에 따른 조선조 당시 지방행정 편제인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로 지정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라. 참고사항**

**(1) 강릉 관아지 복원 시점 관련 자문의견 ('07.2월/○○○)**

- 복원 시점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유구가 복합되어 있으나, 실제 건물의 훼손시기는 조선후기로 추정되고 있어 복원 건축 양식과 구조는 조선 중기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지정명칭 관련 학술세미나 결과 ('13.11.21)**

- 세미나 명 : ‘강릉 임영관 및 관아’의 사적지 지정명칭 적합성을 위한 학술세미나
- 주요내용

구 분	발표자	토론자
(주제 1) 강릉 관아유적의 발굴조사 현황과 과제	박○○ (강릉원주대 박물관)	이○○ (관동대 박물관)
(주제 2) 근현대 강릉 도심의 변화상에 대한 고찰	임○○ (관동대)	최○○ (울곡연구원)
(주제 3) 강릉대도호부 관아의 구조와 특성	이○○ (강릉원주대)	박○○ (강릉문화원부설평생교육원)

## ○ 세미나 결과 (요약자료집 발췌)

강릉 임영관 및 관아의 사적지 지정명칭 적합성을 위한 학술세미나는 강릉관아 유적의 발굴조사 현황과 과제, 근현대 강릉 도심의 변화상에 대한 고찰 및 강릉 대도호부 관아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학술세미나는 최영희의 사회로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박영구, 관동대 임호민, 강릉원주대 이규대의 주제발표와 관동대학교 박물관 이상수 학예연구실장, 울곡연구원 최호, 관동대 박도식 교수 및 참여 청중들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세미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릉은 공양왕 1년에 대도호부로 편제되었다. 이후 비록 名號의 陞降 사례가 있었으나 곧 복원되었고 조선 말기까지 강릉은 대도호부로서 위상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강릉대도호부의 관아는 邑城으로 에둘러져 있었다. 이곳이 治所로 결정된 시기는 이 지방의 읍호가 '東原京'으로 승격된 고려 초기였다. 이 시기 치소는 이전되면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전의 치소가 어디였는가는 분명치 않으나 치소의 이전은 邑號의 승격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며, 이것은 나말의 혼돈한 시기에 지방사회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온 '溟州豪族'의 역할과 성과를 반영하는 기념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읍성의 형세는 북서쪽이 구릉지이며, 동남쪽은 남대천을 성 밖에 둔 평지에 구축되었다. 조선 초기 읍성은 土城이었으나 16세기 초반에 石城으로 개축되면서 높이 9척에 둘레는 3,782척으로 토성에 비해 다소 규모가 축소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읍성에는 문루가 축조된 東·南門을 비롯해 4대문이 건립되었고, 간선도로가 이어지는 동문과 남문이 중심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邑治 공간에는 관아의 각종 公廡, 鄉吏를 비롯한 官屬들의 생활공간인 읍성마

을, 관아 庭園이 배치되었다. 이로서 읍치는 국가 권력과 수령의 통치권, 아울러 이 지방의 邑勢와 位格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이 공간에 전승되는 고려시대 건축물인 '臨瀛館 三門'과 수령의 생활공간인 '內衙(七事堂)'에서 느낄 수 있는 웅장하면서도 절제된 단아한 멋과 품격은 이 지방의 위상과 풍토의식이 구현된 산물이라 의미를 가진다.

읍치 공간의 공해는 客舍·衙舍·倉으로 3대별 된다. 이러한 기능을 중시하는 구분법은 古地圖 상에서 조선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地理誌 상에서 각종 공해는 18세기 중반까지는 종류별 명칭만이 파악되었으나,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종류별로 부속건물과 칸수를 비롯해 각 부서별 인원 배치 상황까지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양식의 변화는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에 편승하여 관아의 기능이 세분화하고 나아가 읍치 공간의 건축과 조경 의식이 반영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서 읍치 공간은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39개 동의 공해와 2곳의 정원에 수령과 좌수를 비롯한 186명의 향리와 관속들이 배치되었으며, 읍성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규모를 古地圖 상의 배치도에 근거하면 客舍·衙舍·鄉廳·府司가 주요 공해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읍성 내에 배치되었으면서도 각 공해별로 별도의 담장으로 에둘러져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지방사회 운영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서 각각의 기능이 중시되는 데서 비롯된 결과였다. 즉 객사와 아사는 국가권력과 수령의 統治權의 상징적 공간이라면, 향청과 부사는 이 지방 양반 사족의 鄉權과 戶長을 비롯한 향리세력에 邑權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강릉대도호부의 읍성과 관아의 배치 구조 및 인적구성을 염두에 두면 이곳에 설정된 사적지 명칭은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로 명명하는 것이 적합성을 가진다고 보겠다.

기존에 이곳은 사적 제388호의 명칭은 “강릉 임영관(江陵 臨瀛館)”이었다. 이것은 객사 공간만이 사적지로 지정된 데서 비롯되었다. 즉 강릉 객사는 “임영관”이라는 別號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객사 공간을 넘어 내·외아를 비롯해 각종 공해가 배치되었던 공간을 포함하여 사적지가 확대 지정되었고, 이러한 형상 변경으로 그에 준하는 사적지 명칭 변경이 요구되기에 이른 것이다.

요컨대 새로이 확장된 사적지의 명칭은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가 그 적합성을 갖는다. 즉 그동안 전개해 온 복원사업은 조선시대의 상황에서 근거를 확보하였고, 만약에 추후 같은 사업이 계획될 수 있다면 역시 같은 시기의 상황에서 그 근거가 확보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보겠다.

다만, 전주이씨종친회 강원도지회에서 참석하신 청중께서는 ‘도호부’의 용어가 중국에서 이민족을 지배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로써 이러한 용어를 쓰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도호부는 중국 唐代 屬地支配를 위해 설치한 기구였으나, 고려 성종대 처음 설치된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행정기구로 편제되어 기능을 해왔던 역사적 사실과 왕조실록 등 기록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고 내용에 대한 수긍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에 대한 사적지 지정명칭 적합성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와 토론 결과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로 사적지 명칭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수합하는데 무리가 없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또한 지방관아 연구는 공해건물뿐 아니라, 읍치공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향후로도 강릉대도호부 관아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더불어 강릉읍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발표자, 토론자 및 청중의 다수 공감대가 있었다.

### (3) 관계 전문가 의견

#### < 문화재위원 고혜령 >

가. ‘강릉’ → ‘강릉대도호부’ 변경 관련

- 강릉의 행정명칭 연혁을 보면, 통일신라시대의 하서주, 명주도독부를 거쳐 고려시대에는 동원경, 명주도호부, 명주목, 삭방도, 경흥도호부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오다가, 고려말 공양왕원년(1389) 강릉대도호부로 승격하였음. 이후 조선시대에는 대도호부의 명칭이 지속되면서, 일시적으로 현으로 격하된 적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1896년 고종대까지 계속되었음
- ‘사적의 지정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지침’에 의하면, 제6조(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 제2항에, 궁터 관아 성터시설물 등 정치 국방에 관한 유적에는 “고유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라 하였고 그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관아 사적의 명칭 사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음
  -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高敞 茂長縣 官衙와 邑城) / 전북 고창군
  -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濟州牧 官衙) / 제주 제주시
  -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扶餘 鴻山縣 官衙) / 충남 부여군
  - 사적 제482호 김제군 관아와 향교(金堤郡 官衙와 鄕校) / 전북 김제시
  -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羅州牧 官衙와 鄕校) / 전남 나주시
  - 사적 제484호 거제현 관아(巨濟縣 官衙) / 경남 거제시
- 이들은 모두 현, 목, 군 등 관아가 사용되던 당시의 지방행정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에 따르면 강릉의 경우도 조선시대 관아로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던 대도호부의 행정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 대도호부는 부윤과 도호부사가 파견되는 읍의 중간에 해당하며 목사(牧使)가 되는 고을과 같다. 이곳 수령인 대도호부사는 정3품으로 부윤·목

사와 함께 주로 문신이 임명되는 청환직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안동, 강릉, 영변, 영흥 창원에 대도호부를 두었다.

- 그러나, 조선시대 행정 명칭에서 대도호부는 몇 되지 않고,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호부’라는 명칭이 자칫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이후 당나라가 고려 옛 땅에 설치했던 안동도호부, 백제 옛 땅에 두었던 웅진도독부, 신라에 두었던 계림대도독부 등의 명칭을 연상하는 작용을 하므로, ‘도호부’라는 인식이 갖는 좋지 않은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도 부정할 수 없음

나. ‘임영관’ → ‘관아’ 변경 관련

- 임영관은 강릉 객사의 별칭으로 이 객사는 고려 태조 19년(936) 본 부(府) 객사로 총 83칸의 건물을 창건하고 임영관(臨瀛館)이라 하였으며 공민왕 15년(1366) 왕이 낙산사로 행차 도중 현액을 친필로 썼다고 전함
- 강릉시는 2012년까지 객사를 비롯한 관아, 즉 동헌과 별당 그리고 의운루 등을 복원하였고, 이에 따라 ‘임영관’이 객사 공간을 한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새로 복원된 관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의 지번 범위 속에 객사와 관아 들을 복원한 것이라면, 실제와 맞게 전체를 포괄하는 ‘관아’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
- 그러나, ‘관아’ 라는 평범한 일반명칭으로의 변경은 자칫 강릉시 史蹟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임영관” 이라는 명칭에 비해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임
-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일반 지침과 사실의 부합도 중요하지만 문화재 명칭 변경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문화재위원 ○○○>

- 현재 강릉 읍치 공간에는 객사인 임영관과 함께 국보 제51호 ‘임영관 삼문(臨瀛館 三門)’ (1962년 객사문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명칭 변경),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江陵 臨瀛館)’ (1994년 강릉임영관지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명칭 변경),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호 ‘칠사당(七事堂)’이 있다. 국보 제51호 ‘임영관 삼문’은 고려 말엽의 건축물이고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호 ‘칠사당’은 조선시대 건축물임
- 본 사안의 논의대상은 첫째 행정명칭의 부기 문제이고 둘째는 사적 대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첫째 행정명칭은 고을의 지위에 따라 성곽이나 관아의 규모도 달랐으므로 가능하면 붙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모두는 아니지만, 기왕의 사적 명칭 부여에서도 일부를 제외하면 이를 준용하고 있음. 예컨대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高敞 茂長縣 官衙와 邑城),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濟州牧 官衙),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扶餘 鴻山縣 官衙), 사적 제482호 김제군 관아와 향교(金堤郡 官衙와 鄉校),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羅州牧 官衙와 鄉校), 사적 제484호 거제현 관아(巨濟縣 官衙) 등이 그것으로, 이러한 관례를 따라 ‘강릉(江陵)’ 보다는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로 명명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사적 명칭과 대상 문제와 관련하여 객사 ‘임영관’은 단독 건물로 본다면 사적이기보다는 보물이 더 적합하나 최초 지정 당시는 건물이 아닌 객사 영역을 대상으로 ‘임영관지’로 사적 지정(1994년)됨. 그러다가 부속 건물지들이 발굴조사됨으로서 사적 구역이 확대(2005년)되고 복원이 이루어진 문화재임. 현재의 명칭 ‘강릉 임영관’은 이러한 복원에 따른 현상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임영관지’에서 ‘임영관’으로 변경된 것임(2011년)
- ‘강릉 임영관’이라는 사적 명칭은 당초 객사 공간을 한정하여 지정된 것이나, 발굴조사와 복원사업으로 현재는 사적 구역이 확대 지정되어 객사인 임영관과 더불어 동헌, 그리고 칠사당 공간을 아우르는 영역이 되었음. 따라서 ‘강릉 임영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이들 읍치공간(邑治空間) 모두를 아우르는 명칭의 사용이 필요함. 그리고 이 읍치 공간 전체를 함축하는 용어로서는 기존의 사적 지정명칭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관아(官衙)’가 적합하다고 생각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江陵 臨瀛館)’의 명칭을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로 표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강릉 임영관」 및 부속건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 등 내역

일 자	구 분	내 용	비고
1962.12.20	신규지정	「객사문」(국보 제51호)	
1971.12.16	신규지정	「칠사당」(시도유형문화재 제7호)	
1994.07.11	신규지정	「강릉임영관지」(사적 제388호) : 1필지 8,423㎡	
2005.09.06	추가지정	「강릉임영관지」(사적 제388호) - 발굴조사 결과 발견된 관아지 추가지정(10필지 10,528㎡)	
2010.09.29	명칭변경	「강릉객사문」→「강릉 임영관 삼문」 - 임영관 삼문으로 변경, 띄어쓰기 적용	
2011.07.28	명칭변경	「강릉임영관지」→「강릉 임영관」 - 복원에 따른 ‘지(址)’ 삭제, 띄어쓰기 적용	
2012.10월	복원완료	(1차 복원) 2000~2006년 - 전대청, 중대청, 동대청, 좌우 익사 등 (2차 복원) 2007~2012년 - 동헌, 별당, 아문, 의운루 등	

(5) ‘사적의 지정 및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발췌 (문화재청 예규)

조 항	내 용
제2조 (일반원칙)	<p>사적 지정 명칭 부여의 일반원칙은 아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적 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전래되어 오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적의 소재지와 유형을 조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li> <li>2. 사적 지정 명칭은 사적의 연대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li> <li>3.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고, 괄호( )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다만, 명칭과 한자를 병기할 시 ‘음’이 다를 경우 큰 괄호[ ]로 표기한다.</li> <li>4.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사적의 성격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될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li> </ol>
제3조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유형)	<p>사적 지정명칭의 부여를 위한 유형은 아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유한 명칭(호를 포함한 자연인의 이름)</li> <li>2. 고유한 명칭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도 동일 유형의 사적이 있어 <u>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군·구」+(읍·면·동·리)+ 사적명칭</u>”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시·도」+(시·군·구)+ 사적명칭”으로 <u>도 할 수 있다.</u></li> <li>3. 당해 사적이 주변 환경을 포함하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경우 사적명칭에 “일원(지구)”을 붙일 수 있다.</li> </ol>
제4조 (지역명칭 표기 예외사항)	<p>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시 지역명칭 표기의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술적으로 검증되고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지역명은 그대로 살려 쓴다.</li> <li>2. 고증에 의한 지역명이 아니더라도 그 명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역 명칭은 그대로 살려 사용할 수 있다.</li> <li>3. 지역명이 사적명칭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li> <li>4. 2개 이상의 지역이 연관된(포함)된 사적에는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li> <li>5.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은 지역명칭을 붙이지 않는다.</li> </ol>

조 항	내 용
	6. 지역명을 붙이지 않아도 명칭이 인지되는 경우, 안내판, 교통표지판 등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지정명칭 변경)	<p>사적 지정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미 지정 되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적 명칭은 가급적 현행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li> <li>2. 지역·문중·단체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li> <li>3. 반드시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li> <li>4. 행정적·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li> <li>5. 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그 역사성을 고려하여 지역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적의 역사적·학술적 검증을 통하여 변경된 행정구역이 오히려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li> <li>6. 지정 당시의 명칭이 “지”로 되어 있는 사적의 복원·정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에는 복원의 진정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에서 “지”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삭제 할 수 있다.</li> </ol>
제6조 (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궁(宮)터, 전(殿)터에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li> <li>나. 관아, 성곽, 진, 돈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li> <li>다. 병영, 전적지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유적”, “유허”, “전적”으로 표기한다.</li> <li>라. 기타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은 “유적”이라고 사적명칭을 표기한다.</li> </ul> </li> </ol>
제7조 (기타)	제2조 내지 제6조에 의해 부여한 명칭이 해당 사적의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6) 유사 문화재의 명칭 부여 사례

종 별	문 화 재 명	소재지	현 황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高敞 茂長縣 官衙와 邑城)	전북 고창군	객사, 동헌, 읍성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濟州牧 官衙)	제주 제주시	관아건물 복원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 (夫餘 鴻山顯 官衙)	충남 부여군	객사, 동헌
사적 제482호	김제군 관아와 향교 (金堤郡 官衙와 鄕校)	전북 김제시	동헌, 내아, 향교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 (羅州牧 官衙와 鄕校)	전남 나주시	객사, 동헌 등 복원
사적 제484호	거제현 관아 (巨濟縣 官衙)	경남 거제시	객사, 질청

(7) 강릉시 연혁(신라~조선시대/ 강릉시 홈페이지 발췌)

구분	연 도	내 용
신라	397(내물왕 42년)	하슬라주(何瑟羅州)가 신라(新羅)의 영역(領域)이 됨
	512(지증왕 13년)	하슬라주 군주(軍主) 이찬(伊滄)라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정벌함
	639(선덕여왕 8년)	하슬라주를 북소경(北小京)으로 삼고 사창(沙滄) 진주(眞珠)에게 지키게 함
	658(태종무열왕 5년)	북소경을 파(罷)하여 하서주(河西州)로 삼고 도독(都督)을 두어 지키게 함
고려	757(경덕왕 16년)	하서주를 명주(溟州)로 고치고 9군 25현을 둠 고려
	936(태조 19년)	명주를 동원경(東原京)이라 개칭하고 임영관(臨瀛館)을 세움
	940(태조 23년)	동원경을 다시 명주라 칭함
	983(성종 2년)	하서부(河西府)로 칭함
	986(성종 5년)	명주도독부(溟州都督府)로 개칭
	992(성종 11년)	명주목(溟州牧)으로 개칭 목사(牧使)를 임명
	1178(명종 8년)	연해(沿海) 명주도(溟州道)로 개칭
	1261(원종 1년)	경흥도호부(慶興都護府)로 승격됨
	1263(원종 4년)	강릉도(江陵道)로 개칭
	1308(충렬왕 34년)	강릉부(江陵附)로 개칭
	1388(우왕 14년)	교주(交州) 강릉도로 개칭
	1389(공양왕 원년)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로 승격, 별호를 임영(臨瀛)이라 함
조선	1457(세조 3년)	강릉대도호부에 진(鎭)을 설치하고 이부(二府) 사군(四郡)이현(二縣)을 관할함
	1666(현종 7년)	강릉대도호부는 강릉현으로 강등됨
	1675(숙종 원년)	강릉현을 다시 강릉대도호부로 복원함
	1782(정조 6년)	다시 강릉현으로 격이 낮아짐
	1789(정조 13년)	강릉부로 복원됨
	1895(고종 32년)	강릉부의 관할구역이 평해(平海)에서 흙곡군(翁谷郡)까지로 됨
	1896(고종 33년)	강릉군으로 개칭하고 21개 면을 관할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강릉대도호부 관아」로 함

## 7.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옛 서울시장공관 리모델링 검토

###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옛 서울시장공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옛 시장공관을 한양도성 순성안내 및 역사전시공간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검토받고자 신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종로구, 성북구 일원
- (3) 신청내용<옛 서울시장공관 리모델링 검토>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27-1(문화재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부지면적 : 1,034.7㎡
    - 연 면 적 : 683.23㎡
    -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 구 조 : 목구조
    - 내 용 : 한양도성 순성안내, 역사전시, 유구발굴 현장전시, 역대 거주시장 등 건물역사 전시, 주민카페 등 휴게쉼터 조성, 단절구간(16m) 연결 등
    - 세부계획
      - 1층 : 한양도성 역사전시실(170㎡), 카페테리아(30㎡), 영상실(16㎡), 복도·화장실·계단실(120㎡), 유구발굴 전시관(외부마당연계 80㎡)
      - 2층 : 시장역사전시실(60㎡), 사무실(50㎡), 창고·복도 등(35㎡)
      - 단절구간 연결 : 브릿지 연결방식(총연장 16m, 높이 1.7~1.9m, 너비 1.5m)

##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검토의견('14.07.07/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구 서울시장공관을 존치하면서 구 서울시장공관 부지내 발굴을 통하여 한양도성을 복원·정비하고자 제안된 계획으로서,
- 계획에 따르면 구 서울시장공관 부지내 추가 발굴조사, 발굴결과에 따른 유구전시, 구 서울시장공관 리모델링(역사전시실, 카페, 사무실 등으로 리모델링), 도로 단절구간 연결(길이:16m, 폭:1.5m, 높이:1.7~1.9m)을 하고자 함
- 그러나 계획의 주된 내용이 한양도성의 복원정비에 따른 역사성 회복보다는 구 서울시장공관의 리모델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전반적인 계획의 중심에 구 서울시장공관 부지내 발굴, 이에 따른 복원정비 방침, 활용, 타임스케줄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구 서울시장공관 리모델링 계획은 존치하여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내용만 구상하고 발굴이 완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정 가능한 것으로 계획이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 관계전문가 검토의견('14.07.03/문화재위원 ○○○)

- 삼선동 옛 시장공관의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활용여부 및 활용기본계획은 문화재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활용의 구체적인 방안은 실시설계 후 별도 심의를 받아 시행함이 필요하다고 봄
- 활용 필요시 다음사항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관조성으로 성벽내부를 절토한 부분(높이 0.5~1.0m내외)은 원래높이대로 복토하되, 여건을 고려, 성벽내부의 최소 폭(폭: 3m내외)은 필요하다고 보며, 근년에 근거없이 마련된 조잡한 여장은 검토를 통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봄
  - 공관입구의 단절된 성벽은 성곽의 관람동선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며, 근년에 수리된 이질감(異質感)이 나는 경사진 일부 성벽은 정비함이 필요하다고 봄
  - 도로구간의 좌우는 수직형태(ㄷ자)로 차량출입의 높이(기존 성벽높이: 4.5~6m)를 확보하여 기존의 혜화문으로 통하는 관람로(회곽로)조성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공관내부는 현재 전형적인 일본식 조경(석축, 수종, 관리 방법 등)으로 이를 관방유적에 맞게 전통조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3) 옛 시장공관의 역사

- 1941년 : 일본인 田中三郎 보존 등기
- 1945.9.18 : 하준석('39~'40년 중추원 참의) 소유
- 1955.7.26 : 손원일(독립운동가, 국방부 장관) 소유

- 1959~1981 : 대법원 공관으로 사용
- 1981~2013 : 서울특별시장 공관으로 사용
- 2013.12.13. : 서울특별시장 공관 이전

#### (4) 그간의 추진경과

- '07.6, '11.1, '12.2 : 시장공관 이전 요구(문화재청)
- '09.9 : 성곽 해체 보수·복원(86m) 설계완료(서울시)
- '12.2 : 설계승인(문화재청)
- '12.12 :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마스터플랜 마련
  - 복원, 재현→원형 존중·보존
  - 건물 수명 동안 활용
- '11~'12 : 공관 이전을 위한 백인제가옥 리모델링 추진
- '13.2.21 : 국제학술회의 결과
  - 과거의 역사와 흔적을 지워버리는 완전 철거보다는 건물의 가치와 역사성을 감안하여 존치
- '13.9.6 : 시장공관 이전 잠정 확정
- '13.9.11 : 한양도성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 건물가치·역사성, 도성의 진정성을 감안하여 성곽으로부터 이격된 일부 건물은 존치하고 건물 활용과 별도로 서울시장 공관 이전 자체로, 개인의 점유가 아닌 시민 개방으로서 도성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서울시 의지 표현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확대발굴 후 재검토

## 8. 시흥 오이도 유적 종합정비 사업 검토

### 가. 제안사항

경기도 시흥시 소재 사적 제441호 「시흥 오이도 유적」 종합정비 및 전시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시흥 오이도 유적지 종합정비 및 전시관을 조성하려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시흥 오이도 유적(사적 제441호)

- 소재지 : 경기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3) 신청내용

- 시흥 오이도 유적 정비사업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914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사업대상면적 : 335,232㎡(지정면적 434,981.7)

- 교육 체험장 조성(교육움집 5동, 전시움집, 공연움집 등)

- 패총전시각 등의 유적전시시설 설치 및 수목 식재 등

- 관리사무실, 주차장, 화장실 등의 유적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 사업비 약 150억원

- 시흥 오이도 선사유적 전시관 설치사업

-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6-6번지일원(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사업내용

- 역사전시관 건립(전시/수장/교육/사무/편의/유지관리시설)

- \* 사업부지 면적 : 18,801.30㎡

- \* 건축면적/연면적 2,288.86㎡/4,180.69㎡ 최고높이 15m, 지하1층,지상3층

- 외부시설(공원 리모델링)계획, 육교 설치

- \* 건축면적/연면적 284.25㎡/329.61㎡ 최고높이 15m

- 전망대 건립(공원운영/전망/ 편의시설) 등
  - \* 사업부지 면적 : 1,790m<sup>2</sup>
  - \* 건축면적/연면적 164.83m<sup>2</sup>/297.84m<sup>2</sup> 최고높이 4.17m, 지하1층, 지상1층
- 사업비 : 약 200억원

## 라. 참고사항

### ① 종합정비 사업

#### (1) 그간 추진경위

- 2012. 04. 24 시흥 오이도 유적 종합정비계획 승인(문화재청)
- 2012. 05. 29 시흥 오이도 선사 · 해안문화 특구 지정고시
- 2012. 09. 05 오이도 선사유적 정비사업 용역 착수
- 2012. 10. 09 착수보고회 개최
- 2013. 03. 21 시흥시 자문회의 개최(1차)
  - ○○○ 한양대 교수, ○○○ 경기문화재연구원장
  - ○○○ 문화재청 위원, ○○○ 문화재청 전문위원
  - ○○○ 경기문화재연구원 실장, 시흥시 시의원 2인
- 2013. 06. 10 시흥시 주민설명회 개최(1차)
- 2013. 08. 08 시흥시 주민설명회 개최(2차)
- 2013. 08. 13 시흥시 주민설명회 개최(3차)
- 2013. 09. 09 문화재청 자문회의 개최 및 현장실사
  - ○○○ 문화재청 위원, ○○○ 문화재청 위원
  - ○○○ 문화재청 위원, ○○○ 문화재청 전문위원
  -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
- 2013. 10. 22 시흥시 자문회의 개최(2차)
- 2014. 02. 07 시흥 공유협력회의 보고(시장, 부시장, 국과장, 동장 전체참석)
- 2014. 02. 14 문화재청 자문(경북궁 고궁박물관)
  - ○○○ 세종대 명예교수, ○○○ 사적분과문화재위원
  - ○○○ 사적분과 문화재 위원, ○○○ 前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
  - ○○○ 한양대교수, ○○○ 경기 문화재연구원 조사실장
  - ○○○ 보존정책과장, ○○○ 전문위원

## ② 오이도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 사업

### (1) 그간 추진경위

- 2014. 01. 10 오이도 역사전시관 건립 사업 건축설계경기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모 공고 (시흥시청)
- 2014. 04. 04 형상설계 당선작 발표
- 2014. 04. 10~21 기술협상
- 2014. 05. 16 계약체결
- 2014. 05. 23 착수계 제출
- 2014. 07. 02 시흥시 자문회의 개최(1차)
  - 시공무원(4명), 시의원(2명), 시민대표(3~5명)
  - 문화재청 등 전문가(10~13명)
- 2014. 07. 03 시흥시 착수보고회 개최
  - 시청관계자(17명)

### (2) 사업의 배경

- 오이도 역사 전시관은 오이도 유적을 대표하는 곳으로 선사시대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해안 갯벌지역의 인간의 삶과 생활모습이 잘 남아있는 곳이고, 시흥시가 지닌 자연·문화자산을 체득·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를 주제로 오이도의 장소성과 상징성을 담은 공간이 필요.

### (3) 사업의 목적

- ‘오이도 역사전시관’은 오이도 역사유적공원과 연계된 서해안 선사문화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명소로 조성.
-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시흥시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시흥시가 지닌 서해·갯벌·염전·낙조·어업활동 등의 자연·문화자산을 체득·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보존은 물론 교육·행사·조망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흥시의 광역관광거점화.

### (4) 건립의 기본방향

- 시간과 장소를 연결하는 서해안 지역의 랜드마크 전시관 및 전망대
  - 나열 방식의 기존 전시방법을 지양하고 지역 환경의 콘텍스트를 전시의 시퀀스에 도입, 오이도 전체를 전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
- 따라서 오이도 역사 전시관은 서해 바다와 갯벌, 역사 유적공원 및 탐방로를 연계하여 시흥시 고유의 선사문화를 통합적으로 소개하며, 이를 통해 서해안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랜드마크화.
- 전시관 자체가 도시와 바다 전체를 관망하게 해주는 해안선의 연장으로서 시간과 장소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어 시간의 관념적, 물리적 소통을 도모하는 것을 건축의 기본 개념으로 설정.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선사유적전시관 건립은 전시·운영, 디자인 계획 보완 후 재검토

## 9.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안) 협의 요청 검토

###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로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협의 요청받았기에 이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안) 협의 건에 대해 검토 요청 드림

#### ※ 근거 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1항 :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 다. 주요내용

(1) 보고자 :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국가지정 및 시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3) 보고내용<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안) 협의 요청>

#### ○ 요청 사유

-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일괄적으로 정함에 따라 단위 문화재별 특성 미반영 및 보존지역 획일화로 민원 발생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제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일괄적으로 정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문화재보존 영향검토구역’으로 표기됨에 따라 민원 야기

#### ○ 요청 내용

-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조례 제29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경관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문화재별로 별도 보존지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 조례 개정 시 추진계획

- 별도 보존지역의 지정 범위 :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역사문화환경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한다) :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까지의 지역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까지의 지역(단, 5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30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및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한다) :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까지의 지역

2. (현행과 같음)

**라. 참고사항**

(1) 국무조정실로부터 이관된 우리 청 소관 규제민원 현황('14.3.31~'14.6.6)

- 총 45건 중 현상변경허가 관련 민원이 23건(약 51%)
- 민원 유형
  - 문화재 유형별로 거리제한 완화(예 : 비석, 봉수대 등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축소 등) 12건
  - 현상변경 허용기준 등 행위제한 완화 8건
  - 행위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현상변경허가 재량권 축소) 2건
  -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1건

(2) 유사 조례

-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26조의2(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① 건설

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경관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문화재별로 별도의 검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때에는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마. 의결사항

##### ○ 부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허용기준 개선계획과 연계, 종합적인 검토 필요

<붙임> 시·도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단위 : m)

시·도 구분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도시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 지역 (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외 지역 (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서울특별시	100		50	
부산광역시	200	500	200	500
대구광역시	200	500	200	500
인천광역시	200	500	200	500
광주광역시	200	500	200	500
대전광역시	200	500	200	300
울산광역시	200	500	200	500
경기도	200	500	200	300
강원도	200	500	200	300
충청북도	200	500	300	
충청남도	200	500	200	300
전라북도	500		500	
전라남도	200	500	200	300
경상북도	200	500	200	300
경상남도	200	500	200	300
제주도	500		300	

※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상기 범위 외에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에 관한 단서 규정 존재

- 대전, 경기, 강원, 경북, 경남 : 문화재 외곽경계에서 200~500미터 이내 지역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충남, 전남 : 5층 이상 건축물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500미터까지 지역임

##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4-08-033

# 1.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축성 600주년 기념 중장기 정비계획(안) 보고

## 가. 보고사항

울산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축성 600주년 기념 중장기 정비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축성 600주년이 되는 2017년을 목표로, 그간 진행되어온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가시적 성과 도출 및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소재지 : 울산시 중구 서동 149-8번지 외

(3) 신청내용<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축성 600주년 기념 중장기 정비계획(안)>

### ① 병영성 보수·복원을 통한 제 모습 찾기 ('15~'17년/126억원)

- 병영성 주요구간에 대한 보수·정비를 완료하여 병영성 역사성 회복
- 세부내용 : 서문지~북문지~동문지 성벽(약 1km) 정비, 동문 복원, 독당(纛堂, 군신(纛神)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 복원

※ 남문지 주변은 '17년 이후 정비

※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동문지 전체 유구 확인

### ② 병영성 주변 관리 체계 합리화 ('14~'15년/0.3억원)

-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구역 확대 및 기준 세부화
- 세부내용 :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홍일아파트 옹벽, 연못지, 북문지 앞 소광장),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 ③ 병영성 관리의 안정성 확보 ('15~'17년/10억원)

- 병영성 주변 위험구간에 대한 정비를 통해 주민 안전 제고

- 세부내용 : 홍일아파트 주변 옹벽(민원 집중지역) 보강 조치
- ※ 어스앵커 시공 후 옹벽 상부의 기존 경사면에 슛크리트 타설→코아네트와 시드 스프레이로 사면 안전화

**④ 주민과 함께하는 병영성 활용('16년/5억원)**

- 병영성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관광 활성화·문화재 활용
- 세부내용 : 독제(蠶際) 복원, 600주년 기념 엠블럼 개발
- ※ 중구청 자체 사업

(4) 향후계획 : 중장기 정비계획 확정 후 보도자료(청-지자체 공동) 배포  
( '14. 7월 예정)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2. 공주 공산성 성벽 위험구간 조치계획 보고

###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성벽 위험구간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 나. 제안사유

- 본 건은 '13.8월~9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공산성 훼손문제가 언론에 제기되고 와중에 공산성 주변 성벽이 붕괴(9m)되면서 이에 대한 현황 및 조치계획이 사적분과위원회('13.10.16)에 1차 보고(원안접수)되었던 사항임
- 이와 함께 '13.12월~'14.2월 기간 중 실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대책 우선 수립 후 성곽보수 추진”의 처분('14.5.15일)이 있는 사항임
- 이번 보고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붕괴 위험구간으로 분류했던 공산성 성벽(11개 구간)에 대하여 공주대학교 정밀안전진단 용역팀에서 진행한 그간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제출(공주대→공주시→문화재청)한 위험도 분석 의견에 따라 해체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공산성(사적 12호)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등
- (3) 신청내용
  - 문화재연구소에서 위험구간으로 분류했던 11개 구간 중 시급한 보수(2곳) 및 응급보강(3곳)이 필요하다고 판정한 5개 구간에 대한 해체보수공사 추진 《붕괴 위험구간 판정결과/공주대학교 정밀조사용역팀》

구분	총계	보수시급	응급보강	지속관측	보수공사중	비고
판정 결과	11	2	3	5	1	
위치(구간)	5	6,10	3,4,9	1,2,7,8,11	5	

※ 보수공사 중 1개소는 2013년도 공북루 주변 석축보수공사구간에 기포함

《구간별 판정 의견/공주대학교 정밀조사용역팀》

위치	판정결과	판정의견	조치계획	해체범위(면적)
3구간	응급보강	○ 배부름(8cm), 함몰(12cm), 성돌의 균열 및 이격과 탈락 우려	○ 부분적인 해체 후 관계전문가 현지자문 결과에 따라 처리	8m × 2.2m = 17.6㎡
4구간	응급보강	○ 돌출(31cm), 배부름(5cm), 일부 부재 유실로 내력 상실	”	10.5m × 3.3m = 34.65㎡
6구간	시급한 보수	○ 배부름(8cm), 성돌의 심한이격, 변위 진행 중	○ 조속한 해체보수 추진	16m × 3.9m = 62.4㎡
9구간	응급보강	○ 배부름(4cm), 하단 성돌 유실로 균열 및 내력 상실, 인재사고 우려 지역임	○ 부분적인 해체 후 관계전문가 현지자문 결과에 따라 처리	5m × 2.0m = 10㎡
10구간	시급한 보수	○ 급경지지, 기초부 함몰(12cm) 및 배부름(9cm), 변위진행, 인재사고 우려 지역	○ 조속한 해체보수 추진	10m × 3.8m = 38㎡

라. 검토의견

- 본 건은 지난 '13.10.16일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안전진단 결과 및 자문결과 등에 따라 자체 검토·처리 후 보고”토록 권고가 있었던 사항임
- '13.9월 공산정 부근 붕괴 성벽의 기저부 발굴결과, 성벽 붕괴의 근본 원인은 1960~1970년대에 개·보수되는 과정에서 면석의 구조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석의 부족, 뒷 채움석과 면석의 심한 괴리현상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 정밀안전진단 용역팀의 중간 분석결과에서도 면석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성석의 탈락과 유실, 균열 등으로 구조적 내력이 취약한 상태이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점을 감안하여 2개구간(6,10구간)은 조속한 해체보수를 추진하고 3개구간(3,4,9구간)은 추가적인 관찰 후 해체여부가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위치	관정결과	관정의견	검토의견	해체범위(면적)
3구간	응급보강	○ 배부름(8cm), 함몰(12cm), 성돌의 균열 및 이격과 탈락 우려	○ 일정기간 추가적인 관찰 및 데이터 축적 후 관계 전문가 현지자문 결과에 따라 자체 처리	8m × 2.2m = 17.6㎡
4구간	응급보강	○ 돌출(31cm), 배부름(5cm), 일부 부재 유실로 내력 상실	"	10.5m × 3.3m = 34.65㎡
6구간	시급한 보수	○ 배부름(8cm), 성돌의 심한 이격, 변위 진행 중	○ 조속한 해체보수 추진	16m × 3.9m = 62.4㎡
9구간	응급보강	○ 배부름(4cm), 하단 성돌 유실로 균열 및 내력 상실, 인재사고 우려 지역임	○ 일정기간 추가적인 관찰 및 데이터 축적 후 관계 전문가 현지자문 결과에 따라 자체 처리	5m × 2.0m = 10㎡
10구간	시급한 보수	○ 급경사지, 기초부 함몰(12cm) 및 배부름(9cm), 변위 진행, 인재사고 우려 지역	○ 조속한 해체보수 추진	10m × 3.8m = 38㎡

#### 마.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05.30/전 문화재위원 ○○○)

- 성벽은 조적식으로 쌓아있어 성돌의 뒷뿌리 부분 길이와 뒷 채움 정도에 따라 급격히 붕괴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공산성 성벽에 대해서는 현재 공주대학교에서 정밀조사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성벽의 배부를 정도 측정에 따른 보수시점의 공식적인 허용계수가 없어 보수시점 측정이 불가능한 실정임
- 현재 정밀조사용역의 데이터 축적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정밀조사용역 수행자로서의 의견을 토대로, 위험구간에 대한 현황 및 처리방향 등을 제시하여 위험구간에 대한 보수방안 등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서 안전 대책 및 보수범위 등을 결정하도록 함이 좋을 것임

##### (2) 문화재 감리원('14.07.02/공산성 보수공사 감리원 ○○○)

- 응급보강 구간에 대한 의견 : 변형된 현 상태에서 해체하지 않고 드잡이 등의 보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변형된 부분을 부분해체한 후 변형의 원인을 파악한 후 보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3) 2013.10.16일 제12차 사적분과위원회 보고 : “원안접수”

- 조치현황
  - 관람객 안전 강화 : 출입통제, 성벽 위험구간 응급 및 보강 조치 등
  - 성곽 추가훼손방지 : 배수로 정비 등 우수유입 방지, 배부름 구간 긴급보수 등

-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진단 및 계측 등
- 향후 조치계획
  - 지반침하 및 성벽 훼손의 과학적인 원인 규명
  - 세계유산 자문기구 실사('14년 7~9월)전 훼손구역 보수·정비
  - 성곽의 상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안전진단 결과, 관계전문가 자문결과 등에 따른 공산성 보수정비(성곽 보수, 발굴조사 등) 추진은 문화재청에서 자체 검토·처리하고 문화재위원회 보고 ⇒ 의결사항 : 원안접수

## 바. 의결사항

- 원안접수

### 3. 서울 현릉과 인릉 산책로 관리계획 보고

####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사적 제194호 「서울 현릉과 인릉」 내 산책로 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나. 보고사유

- 현릉 뒤 대모산 중턱부분(해발 150m)을 가로질러 설치한 현릉과 인릉을 잇는 제2산책로가 매년 장마로 인해 흩어 유실되고 암석 노출이 반복되고 있으며, 경사가 심하여 관람객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며, 일부구간이 산사태로 위험이 있음
- 이에 따른 현·인릉 제2산책로 폐쇄와,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 다. 보고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현릉과 인릉(사적 제194호)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현인릉길 34(내곡동)
- (3) 신청내용<산책로 관리계획>
  - 위치 : 경기도 서초구 내곡동 산 13-1 내 산책로
  - 신청내용 : 제2산책로 폐쇄 및 정비

####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4.05.26/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지질학 교수 ○○○)
  - 제2산책로의 경우 불투수층 형성으로 산사태의 위험이 높고 주변으로 골짜기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음
  - 경사도가 너무 길어 침식이 가중되고 있어 경사구간을 줄일 수 있도록 배수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토양침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 탐방객 안전과 집중호우에 의한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2산책로에 대한 폐쇄조치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4.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5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5차 소위원회 처리안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나. 소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4.6.26(목) 14:00~16:4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위원 : 김정배, 고혜령, 박소현, 손영식, 최성락
- 회의안건 : 사적 주변 현상변경 허가 심의 31건
- 회의결과 : 원안가결 9건, 조건부가결 10건, 부결 12건

### 다. 처리내용

건 명	내 용	결 과
1. 경주 감은사지 등 주변 자전거 도로 설치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 788-9 일원 (문화재 구역(감은사지)과 500m 이격/1구역(보존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규모 : L=11,200m, B=2.0~4.0m</li> <li>- 토공 : 흙깎기 6,016.0m<sup>3</sup>, 흙쌓기 1,708.0m<sup>3</sup>, 터파기 2,550.0m<sup>3</sup>, 되메우기 1,873.0m<sup>3</sup></li> <li>- 배수공 : BOX(2.0×1.2) L=2.0m, 횡배수관 L=50.0m, 종배수관 L=62.5m, L형측구 L=1,262.5m, J형측구 L=1,431.0m</li> <li>- 구조물공 : 석축찰쌓기 L=531.5m, 중력식옹벽 L=4.0m</li> <li>- 포장공 : 아스팔트포장 A=5,178.0m<sup>2</sup>, 덧씌우기 A=1,394.0m<sup>2</sup>, 콘크리트+덧씌우기 A=6,498.0m<sup>2</sup>, 콘크리트포장 A=760.5m<sup>2</sup>, 도막포장 A=1,186.0m<sup>2</sup></li> <li>- 교통안전시설공 : 1식 / 조경공 : 1식 / 부대공 : 1식</li> </ul> </li> <li>○ 사업예정기간 : 허가일로부터 12개월</li> <li>○ 소요 사업비 : 1,530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견대 주변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li> </ul> </li> </ul>

건 명	내 용	결 과
2. 경주 황룡사지 등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구황동 857-55번지 일원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m 이격/3구역)</li> <li>○ 사업내용 : 오수관로 L=486.0 맨홀 1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공 : 터파기 938m<sup>3</sup>, 되메우기 706m<sup>3</sup>, 잔토 232m<sup>3</sup>, 기존 포장깨기 124m<sup>3</sup></li> <li>- 관로공 : 오수관로(PE관D200~300mm) L=486.0m, 배수설비 79개소</li> <li>- 구조물공 : GRP맨홀(D600~D900) 17개소</li> <li>- 포장공 : 아스팔트포장(t=5~15cm) : A=1,065m<sup>2</sup>, 콘크리트포장(t=20cm) : A=55m<sup>2</sup>, 소형고압포장(t=6cm) : A=230m<sup>2</sup></li> </ul> </li> <li>○ 공사예정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li> <li>○ 사업비 : 400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가결</li> <li>- 관계전문가 입회 하에 사업 시행</li> </ul>
3. 경주 남고루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황오동 160-1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m 이격/1구역(보존구역), 5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공 : 터파기 1,597m<sup>3</sup>, 되메우기 1,240m<sup>3</sup>, 잔토 357m<sup>3</sup> 기존포장깨기 130m<sup>3</sup></li> <li>- 관로공 : 오수관로(PE관D=300~200mm) L=892.0m</li> <li>- 구조물공 : GRP맨홀(D600~D900) 23개소</li> <li>- 포장공 : 아스팔트포장(t=5cm) A=224m<sup>2</sup>, 콘크리트포장(t=20cm) A=243m<sup>2</sup>, 소형고압포장(t=6cm) A=1,186m<sup>2</sup></li> </ul> </li> <li>○ 공사예정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li> <li>○ 사업비 : 600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가결</li> <li>- 관계전문가 입회 하에 사업 시행</li> </ul>
4. 경주 탈해왕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동천동 357번지(문화재구역과 연결 /2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li> <li>- 지붕형태 : 오지기와</li> <li>- 건축규모 : 지상1층, 1동</li> <li>- 연면적합계 262.24m<sup>2</sup></li> <li>- 최고높이 : 8.95m</li> <li>- 대지면적 : 550m<sup>2</sup></li> </ul> </li> <li>○ 공사예정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li> <li>○ 사업비 : 190백만원(자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결</li> <li>-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li> </ul>

건 명	내 용	결 과
5. 경주 천군동 사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천군동 산301-1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10m 이격/1구역(보존구역))</li> <li>○ 사업내용 : 주택 2동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건립(A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징크페널, 최고높이 9.4m</li> <li>·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1층, 1동, 건축면적 및 연면적 195.59㎡, 대지면적 840㎡</li> <li>· 건축용도 : 단독주택</li> </ul> </li> <li>- 단독주택 건립(B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징크페널, 최고높이 5.9m</li> <li>· 건축규모 : 지상1층, 1동, 건축면적 및 연면적 123.63㎡, 대지면적 834㎡</li> <li>· 건축용도 : 단독주택</li> </ul> </li> </ul> </li> <li>○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li> <li>○ 사업비 : 2.5억원(자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결</li> <li>-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li> </ul>
6. 경주 옥산서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471-1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0m 이격/1구역(보존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구조 : 지상 1층, 한식목구조, 골기와 잇기, 최고높이 5.75m</li> <li>- 건축규모 : 건물 1동, 건축면적 및 연면적 88.22㎡, 대지면적 827㎡</li> <li>- 건축용도 : 단독주택</li> </ul> </li> <li>○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li> <li>○ 사업비 : 1.8억원(자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결</li> <li>-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li> </ul>
7. 경주 옥산서원 주변 주택 및 음식점 신축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1509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80~90m 이격/1구역(보존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구조 : 목구조, 전통골기와(경사식)</li> <li>· 최고높이 : 6.1m</li> <li>· 건축규모 : 지상1층(1동), 연면적합계 77.76㎡</li> </ul> </li> <li>-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구조 : 목구조, 전통골기와(경사식)</li> <li>· 최고높이 : 6.1m</li> <li>· 건축규모 : 지상1층(1동), 연면적합계 97.20㎡</li> </ul> </li> <li>- 토목공사 : 석축쌓기57m(H=0.6m~1.0m) 대지내 성토 (0.2m~1.3m) 구거점용(36.0㎡)</li> <li>- 차폐 식재 : 벚꽃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소나무, 연산홍 등</li> </ul> </li> <li>○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0일</li> <li>○ 사업비 : 3억원(자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결</li> <li>-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li> </ul>

건 명	내 용	결 과
8. 파주 삼릉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산65-4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70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1,370㎡</li> <li>- 건축/연면적 : 198㎡/198㎡</li> <li>- 건축규모 : 1동(지상 1층)</li> <li>- 건물 최고높이 : 4.9m(경사지붕)</li> <li>- 구 조 : 철구조+사이딩 판넬</li> <li>- 절토 1,886.8㎡, 성토 784.6㎡(성토고 : 0.66~2.92m)</li> <li>- 석축 119m(H0~3.0m), 콘크리트포장 952㎡, 사면처리(씨드스프레이) 125㎡, 녹지조경(단풍나무 등 20주), 진입로 개설</li> </ul> </li> </ul>	○ 원안가결
9. 파주 삼릉 주변 종교시설(교회)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산65-42번지의 3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35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2,794㎡</li> <li>- 건축/연면적 : 198㎡/198㎡</li> <li>- 건축규모 : 1동(지상 1층)</li> <li>- 건물 최고높이 : 4.9m(경사지붕)</li> <li>- 구 조 : 철구조+샌드위치판넬</li> <li>- 절토 1,604.5㎡, 성토 552.4㎡(성토고 : 0.66~4.19m)</li> <li>- 석축 409m(H0~3.0m), 콘크리트포장 2,041㎡, 사면처리(씨드스프레이) 504㎡, 녹지조경(단풍나무, 철쭉, 싸리 등 20주), 진입로 개설</li> </ul> </li> </ul>	○ 원안가결
10. 남양주 순강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산8-13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2,519㎡</li> <li>- 건축/연면적 : 189㎡(각동 94.5㎡)/189㎡</li> <li>- 건축규모 : 2동(각 1층)</li> <li>- 건물 최고높이 : 7.9m(경사지붕)</li> <li>-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한식형태 건물)</li> <li>- 옹벽설치 : 72.1m(h=1.0~2.9m)/법면설치 : 105.7㎡</li> <li>- 절·성토량 : 1,675.6㎡/227.7㎡(중단면 최고 절토고 4.4m)</li> <li>- 도로개설 : 1,407㎡(폭원 6m), 콘크리트포장 T=20cm</li> </ul> </li> </ul>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11. 아산 맹씨행단 주변 고불 맹사성 기념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중리 275외 3필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80m 이격/2구역(경사지붕 7.5m 1층이하, 농업주택 및 농업창고에 한함))</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4,797㎡</li> <li>- 건축면적/연면적 : 499.5㎡</li> <li>- 용도(면적) : 전시관(439.2㎡), 부속채(51.3㎡), 사주문(9㎡)</li> <li>- 건축구조 : 한옥</li> <li>- 건축규모 : 지상1층, 3동(최고높이 6.42m)</li> </ul> </li> </ul>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건 명	내 용	결 과								
<p>12. 서울 문묘와 성균관 주변 성균관대학교 정문 정비</p>	<p>○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53번지 일대 (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심의구역))</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면적 : 700㎡</li> <li>- 세부내용 : 정문 및 경비실 철거, 경비실 설치, 화강석 포장 등</li> </ul> <table border="1" data-bbox="411 495 1120 898"> <thead> <tr> <th data-bbox="411 495 549 533">구분</th> <th data-bbox="549 495 1120 533">사업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11 533 453 701" rowspan="2">철거</td> <td data-bbox="453 533 1120 571">시설물 기존 경비실 392㎡, 정문 지주 63㎡, 담장 28m</td> </tr> <tr> <td data-bbox="453 571 1120 701">포장 콘크리트 기초 131㎡, 아스콘 포장 480㎡, 아스팔트 포장 절단 48m, 보차도경계석 8m, 포장구분경계석 10m</td> </tr> <tr> <td data-bbox="411 701 453 898" rowspan="2">계획</td> <td data-bbox="453 701 1120 784">시설물 UI 사인구조물 3식(L4,000×H1.500), 담장보수 15m, 경비실(6,000×3200m, H2,800m)</td> </tr> <tr> <td data-bbox="453 784 1120 898">포장 화강석 포장(건식) 80㎡, 화강석 포장(습식) 260㎡, 사교석 포장 251㎡, 화강석 경계석, 점자블럭, 자연석 판석 등</td> </tr> </tbody> </table>	구분	사업내용	철거	시설물 기존 경비실 392㎡, 정문 지주 63㎡, 담장 28m	포장 콘크리트 기초 131㎡, 아스콘 포장 480㎡, 아스팔트 포장 절단 48m, 보차도경계석 8m, 포장구분경계석 10m	계획	시설물 UI 사인구조물 3식(L4,000×H1.500), 담장보수 15m, 경비실(6,000×3200m, H2,800m)	포장 화강석 포장(건식) 80㎡, 화강석 포장(습식) 260㎡, 사교석 포장 251㎡, 화강석 경계석, 점자블럭, 자연석 판석 등	<p>○ 원안가결</p>
구분	사업내용									
철거	시설물 기존 경비실 392㎡, 정문 지주 63㎡, 담장 28m									
	포장 콘크리트 기초 131㎡, 아스콘 포장 480㎡, 아스팔트 포장 절단 48m, 보차도경계석 8m, 포장구분경계석 10m									
계획	시설물 UI 사인구조물 3식(L4,000×H1.500), 담장보수 15m, 경비실(6,000×3200m, H2,800m)									
	포장 화강석 포장(건식) 80㎡, 화강석 포장(습식) 260㎡, 사교석 포장 251㎡, 화강석 경계석, 점자블럭, 자연석 판석 등									
<p>13.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p>	<p>○ 위치 : 충북 충주시 단월동 483-4외 2(문화재구역으로 부터 약 195m 이격/4구역(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3층 이하/평슬라브)))</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545.0㎡</li> <li>- 건축면적 : 264.96㎡</li> <li>- 연면적 : 731.27㎡</li> <li>- 건축규모 : 지상 4층(건물높이 15.45m)</li> <li>-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li> <li>- 용도 : 다가구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li> </ul>	<p>○ 원안가결</p>								
<p>14. 아차산 일대 보루군 주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p>	<p>○ 위치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21-22(문화재보호구역으로 부터 75m 이격/1구역(보존구역))</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336.50㎡</li> <li>- 건축면적 : 201.78㎡</li> <li>- 연면적 : 685.31㎡</li> <li>-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 3층(건물높이 14.2m)</li> <li>-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li> <li>- 용도 : 도시형생활주택(9세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li> </ul>	<p>○ 조건부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전문가 입회 하에 공사 시행</li> </ul>								
<p>15. 부안 유천리 요지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p>	<p>○ 위치 :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123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64m 이격)</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면적 : 1,662.7㎡</li> <li>- 모듈설치 : 기울기 45°, 높이 2.73m</li> <li>- 토사측구(300×300) : 120m</li> <li>- 집수정맨홀(600×600×700) : 1개소</li> </ul>	<p>○ 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li> </ul>								

건 명	내 용	결 과
16. 부안 진서리 요지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768-1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m 이격)</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일반음식점</li> <li>- 규모 : 면적 169.72㎡, 높이 7.4m(1층)</li> <li>- 구조 : 철골조</li> <li>- 지붕 : 10:2 경사지붕(판넬 위 아스팔트싱글 마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이 하향조정 및 디자인 변경 등 설계를 변경하여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 사업 시행</li> <li>- 사업 시행 시 관계전문가 입회할 것</li> </ul> </li> </ul>
17. 성주 성산동 고분군 주변 벌채 및 수종 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성원리 산 105-10 외 5(문화재구역으로부터 220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나무 벌채(골라베기) 및 아카시아나무 벌채 1,560㎡</li> <li>- 낙엽송 벌채(2,062㎡) 후 옻나무 조림</li> <li>- 가설 운반로(임도) 개설 1.5km</li> </ul> </li> <li>○ 사업기간 : 2014년 ~ 2021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부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토의견대로 시행할 것(지표조사와 임도 개설 시 발굴 전문기관의 입회조사)</li> </ul> </li> </ul>
18. 경주 김유신묘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충효동 285-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56m 이격/2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오지기와(최고높이 5.9m)</li> <li>- 건축규모 : 지상 1층(1동), 연면적합계 99.76㎡</li> </ul> </li> <li>○ 사업예정기간 : 허가일로부터 1개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가결</li> </ul>
19. 경주 명활성 주변 천군매립장 삼거리 변속차로 설치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천군동 산333-8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80m 이격/일부 1구역(보존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속차로 L=327m, 토지점용면적 A=4,932㎡</li> <li>- 토공 : 1식 / 전기공 : 1식 / 부대공 : 1식</li> <li>- 배수공 : J형측구 L=239m, V형측구 L=18m, L형측구 L=83m, 도수로 L=12m</li> <li>- 구조물공 : 자연석쌓기(H=1.7~2.5m) L=239m, 돌붙임 A=470㎡</li> <li>- 포장공 : 아스콘포장 A=2,375㎡,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포장 A=1,140㎡</li> </ul> </li> <li>○ 사업예정기간 : 착공일로부터 2년</li> <li>○ 총사업비 : 600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안가결</li> </ul>

건 명	내 용	결 과																					
20. 경주 옥산서원 주변 전선지중화 공사	<p>○ 위치 : 경북 경주시 옥산서원길(안강읍 옥산리 1994번지~1998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90m 이격/1구역(보존구역), 2구역)</p> <p>○ 사업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411 416 1118 763"> <tr> <td>위치</td> <td>산장식당(옥산서원길) ~ 정혜사지십삼층석탑 +200m</td> </tr> <tr> <td>도로굴착</td> <td>L=2,215m</td> </tr> <tr> <td rowspan="3">사업량</td> <td>관종류</td> <td>ELP 175mm * 2공, ELP 100mm * 2공,</td> </tr> <tr> <td>공장</td> <td>2.25 km</td> </tr> <tr> <td>굴착폭</td> <td>도로 : 0.882~1.8m</td> </tr> <tr> <td>전주공사</td> <td>H=13.5m, 재질(콘크리트), 신설4본, 교체2본, 철거69본</td> </tr> </table> <p>○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p> <p>○ 사업비 : 1,072백만원</p>	위치	산장식당(옥산서원길) ~ 정혜사지십삼층석탑 +200m	도로굴착	L=2,215m	사업량	관종류	ELP 175mm * 2공, ELP 100mm * 2공,	공장	2.25 km	굴착폭	도로 : 0.882~1.8m	전주공사	H=13.5m, 재질(콘크리트), 신설4본, 교체2본, 철거69본	<p>○ 조건부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물산포지를 관통하거나 경주정혜사지 십삼층석탑, 독락당 구간은 시·발굴조사 후 사업 시행</li> <li>- 옥산서원 주변은 사업시행 시 관계전문가 입회조사 실시</li> </ul>								
위치	산장식당(옥산서원길) ~ 정혜사지십삼층석탑 +200m																						
도로굴착	L=2,215m																						
사업량	관종류	ELP 175mm * 2공, ELP 100mm * 2공,																					
	공장	2.25 km																					
	굴착폭	도로 : 0.882~1.8m																					
전주공사	H=13.5m, 재질(콘크리트), 신설4본, 교체2본, 철거69본																						
21. 화성 당성 주변 농가주택 및 부속사 조성	<p>○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8-6번지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77m 이격)</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면적 : 659㎡, 건축면적/연면적(126.7㎡/253.4㎡), 지상 2층, 최고높이 9.2m</li> </ul>	<p>○ 원안가결</p>																					
22. 경주 남산 일원 주변 식화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	<p>○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658-3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1, 2구역)</p> <p>○ 사업내용 : 도로규모 L=189m, B=6.0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 공 : 흙깎기 40.0㎡, 흙쌓기 1,199㎡</li> <li>- 배수공 : 이중벽PE관(D300mm) L=183.0m</li> <li>- 포장공 : 아스팔트포장 B=6.0m,L=189.0m</li> </ul> <p>○ 사업예정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p> <p>○ 사업예산 : 92백만원</p>	<p>○ 조건부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전문가 입회 하에 공사 시행</li> </ul>																					
23. 경주 남산 일원 주변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	<p>○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101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20m 이격/1구역(보존구역))</p> <p>○ 사업내용 : 노유자시설(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p> <table border="1" data-bbox="411 1458 1118 1917"> <tr> <td rowspan="2">면적</td> <td>대지면적</td> <td>4,166㎡</td> </tr> <tr> <td>연면적</td> <td>건축면적 662.34㎡ 1동 85.50㎡ 2동 214.32㎡ 3동 149.91㎡ 4동 102.60㎡ 5동 110.01㎡</td> </tr> <tr> <td rowspan="2">건폐율/용적율</td> <td>건폐율</td> <td>16.12%(법적 20% 이하)</td> </tr> <tr> <td>용적율</td> <td>16.12%(법적 60% 이하)</td> </tr> <tr> <td>구조</td> <td colspan="2">철근콘크리트 / 한식기와</td> </tr> <tr> <td>층고</td> <td colspan="2">지하 1층, 최고높이 7.90m</td> </tr> <tr> <td rowspan="2">기타</td> <td>주차장</td> <td>옥외 지주식 주차장(18대 수용, 면적 207㎡)</td> </tr> <tr> <td>정화조</td> <td>오수처리시설(120인용) 설치</td> </tr> </table> <p>- 사업예정기간 : 허가일로부터 12개월</p>	면적	대지면적	4,166㎡	연면적	건축면적 662.34㎡ 1동 85.50㎡ 2동 214.32㎡ 3동 149.91㎡ 4동 102.60㎡ 5동 110.01㎡	건폐율/용적율	건폐율	16.12%(법적 20% 이하)	용적율	16.12%(법적 60% 이하)	구조	철근콘크리트 / 한식기와		층고	지하 1층, 최고높이 7.90m		기타	주차장	옥외 지주식 주차장(18대 수용, 면적 207㎡)	정화조	오수처리시설(120인용) 설치	<p>○ 조건부가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시행 전 시굴조사 실시</li> </ul>
면적	대지면적		4,166㎡																				
	연면적	건축면적 662.34㎡ 1동 85.50㎡ 2동 214.32㎡ 3동 149.91㎡ 4동 102.60㎡ 5동 110.01㎡																					
건폐율/용적율	건폐율	16.12%(법적 20% 이하)																					
	용적율	16.12%(법적 60% 이하)																					
구조	철근콘크리트 / 한식기와																						
층고	지하 1층, 최고높이 7.90m																						
기타	주차장	옥외 지주식 주차장(18대 수용, 면적 207㎡)																					
	정화조	오수처리시설(120인용) 설치																					

건 명	내 용	결 과																								
24. 광주 조선백자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산 255-2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4m 이격)</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2,396㎡, 3동, 1~2층, 건축면적/연면적 282.23㎡/390.11㎡, 최고높이 8m</li> </ul> </li> <li>※ 2009.10월 허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4,950㎡, 2동, 건축면적/연면적 660㎡/660㎡ (각 동당 건축면적/연면적 330㎡/330㎡), 지상 1층, 최고높이 8.55m(옥탑 최고높이)</li> </ul> </li> </ul>	○ 원안가결																								
25.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울산시 중구 동동 816(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0m 이격)</li> <li>○ 사업내용</li> </ul> <table border="1" data-bbox="411 719 1118 981"> <thead> <tr> <th>구 분</th> <th>당초('13.5월/ 부결)</th> <th>금회 신청</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높 이</td> <td>11m(평지붕, 일부 경사)</td> <td>12m(평지붕)</td> <td></td> </tr> <tr> <td>규 모</td> <td>지상 3층, 1동</td> <td>좌 동</td> <td></td> </tr> <tr> <td>대지면적</td> <td>133.00㎡</td> <td>좌 동</td> <td></td> </tr> <tr> <td>연 면 적</td> <td>203.83㎡</td> <td>210.12㎡</td> <td></td> </tr> <tr> <td>건축면적</td> <td>80.18㎡</td> <td>52.28㎡</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당초('13.5월/ 부결)	금회 신청	비고	높 이	11m(평지붕, 일부 경사)	12m(평지붕)		규 모	지상 3층, 1동	좌 동		대지면적	133.00㎡	좌 동		연 면 적	203.83㎡	210.12㎡		건축면적	80.18㎡	52.28㎡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구 분	당초('13.5월/ 부결)	금회 신청	비고																							
높 이	11m(평지붕, 일부 경사)	12m(평지붕)																								
규 모	지상 3층, 1동	좌 동																								
대지면적	133.00㎡	좌 동																								
연 면 적	203.83㎡	210.12㎡																								
건축면적	80.18㎡	52.28㎡																								
26.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울산시 중구 동동 64-1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m 이격)</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773.00㎡</li> </ul> </li> </ul> <table border="1" data-bbox="411 1151 1118 1370"> <thead> <tr> <th>구분</th> <th>1동</th> <th>2동</th> <th>3동</th> </tr> </thead> <tbody> <tr> <td>높이</td> <td>14.7m(경사지붕)</td> <td>14.4m(평지붕)</td> <td>12m(경사지붕)</td> </tr> <tr> <td>규모</td> <td>지상 4층</td> <td>지상 4층</td> <td>지상 3층</td> </tr> <tr> <td>연면적</td> <td>395.46㎡</td> <td>401.94㎡</td> <td>215.21㎡</td> </tr> <tr> <td>건축면적</td> <td>135.00㎡</td> <td>137.16㎡</td> <td>101.29㎡</td> </tr> </tbody> </table>	구분	1동	2동	3동	높이	14.7m(경사지붕)	14.4m(평지붕)	12m(경사지붕)	규모	지상 4층	지상 4층	지상 3층	연면적	395.46㎡	401.94㎡	215.21㎡	건축면적	135.00㎡	137.16㎡	101.29㎡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구분	1동	2동	3동																							
높이	14.7m(경사지붕)	14.4m(평지붕)	12m(경사지붕)																							
규모	지상 4층	지상 4층	지상 3층																							
연면적	395.46㎡	401.94㎡	215.21㎡																							
건축면적	135.00㎡	137.16㎡	101.29㎡																							

건 명	내 용	결 과																												
27.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주변 단독주택 신축	<p>○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553-2(문화재구역            과 연접/1, 2구역)</p> <p>* 1구역 : 최고높이 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p> <p>* 2구역 : 최고높이 평지붕 8m, 경사지붕 11m/ 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p> <p>○ 사업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411 533 1121 1093"> <thead> <tr> <th>구 분</th> <th>당초('14.2월/ 부결)</th> <th>금차('14.4월/ 보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규 모</td> <td>6개동</td> <td>5개동</td> <td>1개동 감</td> </tr> <tr> <td>구 조</td> <td>목구조</td> <td>철근콘크리트조</td> <td>구조변경</td> </tr> <tr> <td>최고높이</td> <td>(4개동) 4.35m, (2개동) 5.15m</td> <td>(4개동) 4.35m, (1개동) 6.1m</td> <td>0.95m 증</td> </tr> <tr> <td>건축면적</td> <td>총 199.85㎡</td> <td>총 265.9㎡</td> <td>66.05㎡ 증</td> </tr> <tr> <td>연 면 적</td> <td>총 183.64㎡</td> <td>총 264.1㎡</td> <td>80.46㎡ 증</td> </tr> <tr> <td>마 감</td> <td>(6개동) 형글 지붕, 스타코 마감</td> <td>(4개동) 인조 초가 지붕, 제주산 호박돌 (1개동) 오지기와, 드라이비트 마감</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당초('14.2월/ 부결)	금차('14.4월/ 보류)	비고	규 모	6개동	5개동	1개동 감	구 조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구조변경	최고높이	(4개동) 4.35m, (2개동) 5.15m	(4개동) 4.35m, (1개동) 6.1m	0.95m 증	건축면적	총 199.85㎡	총 265.9㎡	66.05㎡ 증	연 면 적	총 183.64㎡	총 264.1㎡	80.46㎡ 증	마 감	(6개동) 형글 지붕, 스타코 마감	(4개동) 인조 초가 지붕, 제주산 호박돌 (1개동) 오지기와, 드라이비트 마감		<p>○ 부결</p> <p>-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p>
구 분	당초('14.2월/ 부결)	금차('14.4월/ 보류)	비고																											
규 모	6개동	5개동	1개동 감																											
구 조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구조변경																											
최고높이	(4개동) 4.35m, (2개동) 5.15m	(4개동) 4.35m, (1개동) 6.1m	0.95m 증																											
건축면적	총 199.85㎡	총 265.9㎡	66.05㎡ 증																											
연 면 적	총 183.64㎡	총 264.1㎡	80.46㎡ 증																											
마 감	(6개동) 형글 지붕, 스타코 마감	(4개동) 인조 초가 지붕, 제주산 호박돌 (1개동) 오지기와, 드라이비트 마감																												
28. 제주 향파두리 향몽 유적 주변 단독주택 및 창고 신축	<p>○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173-6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0m 이격/2구역(최고높이            평지붕 8m, 경사지붕 11m/농가주택, 농가창고에 한함))</p> <p>○ 사업내용</p> <p>- 건축면적 56.04㎡, 연면적 121.34㎡, 2층, 최고높이            9.75m</p> <p>- 목조, 칼라 아스팔트 형글 지붕, 스타코 마감</p>	<p>○ 조건부가결</p> <p>- 건축물의 외관에 대            해서는 제주 지역 건            축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p>																												
29. 제주 삼양동 유적 주변 숙박시설 신축	<p>○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삼양2동 2140-1(문화재구역으로            부터 60m 이격/3구역(최고높이 평지붕 8m, 경사지붕            11m/2층))</p> <p>○ 사업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411 1525 1121 1861"> <thead> <tr> <th>구 분</th> <th>당초('14.5월/ 부결)</th> <th>금차</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규 모</td> <td>지하 1층, 지상 6층</td> <td>지하 1층, 지상 5층</td> <td>1층 감</td> </tr> <tr> <td>최고높이</td> <td>19.9m</td> <td>17.2m</td> <td>2.7m 감</td> </tr> <tr> <td>구 조</td> <td>철근콘크리트조</td> <td>철근콘크리트조</td> <td></td> </tr> <tr> <td>건축면적</td> <td>682.28㎡</td> <td>751.58㎡</td> <td>69.3㎡ 증</td> </tr> <tr> <td>연 면 적</td> <td>3,421.43㎡</td> <td>3,425.76㎡</td> <td>4.33㎡ 증</td> </tr> </tbody> </table>	구 분	당초('14.5월/ 부결)	금차	비고	규 모	지하 1층, 지상 6층	지하 1층, 지상 5층	1층 감	최고높이	19.9m	17.2m	2.7m 감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682.28㎡	751.58㎡	69.3㎡ 증	연 면 적	3,421.43㎡	3,425.76㎡	4.33㎡ 증	<p>○ 조건부가결</p> <p>- 사업 시행 전            시굴조사를 시행할            것</p>				
구 분	당초('14.5월/ 부결)	금차	비고																											
규 모	지하 1층, 지상 6층	지하 1층, 지상 5층	1층 감																											
최고높이	19.9m	17.2m	2.7m 감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682.28㎡	751.58㎡	69.3㎡ 증																											
연 면 적	3,421.43㎡	3,425.76㎡	4.33㎡ 증																											

건 명	내 용	결 과
30.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주변 임도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산108-1, 손곡동 22-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50m 이격/1구역)</li> <li>○ 사업내용 : 임도건설 L=380m, B=3.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공 : 벌목 1,584m<sup>3</sup>, 토사절취 542m<sup>3</sup>, 노면정리 1,770m<sup>2</sup></li> <li>- 배 수 공 : 개거(물넘이식) 3개소</li> <li>- 구조물공 : L형측구(야면석메쌓기, H=0.50) 80m, L형측구(야면석메쌓기, H=0.75) 50m, 차단기 1개소, 돌붙임(야면석메붙임) 15m<sup>2</sup></li> <li>-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 190m, 혼합석부설 190m</li> <li>- 피복공 : 7급줄때 130m, 때붙임 200m<sup>2</sup></li> </ul> </li> </ul>	○ 원안가결
31. 연천 은대리성 주변 캠핑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801번지 일원(문화재구역과 인접)</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면적 21,763m<sup>2</sup></li> <li>- 숙영시설 18,000m<sup>2</sup>(카라반, 모빌홈, 오토캠핑 등)</li> <li>- 편의시설 730m<sup>2</sup>(관리실, 매점, 공동 취사장 등), 기타 기반시설 조성 등</li> </ul> </li> </ul>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5.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가. 보고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내외 배수관 설치 및 농로 정비 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28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충남 부여군	○○○	<배수관 설치 및 농로 정비>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465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기존 배수로의 정비) - 배수관 설치 L = 150m - 농로포장 L = 120m	허가	'14.06.27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 송파구	○○○	<영파여중 방음벽 개선공사>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565 ○ 사업내용 - 규모 : 길이 174m, 높이 6m - 내용 : 투명방음벽 교체	허가	'14.07.03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 송파구	○○○	<도시가스 공급관 이설(허가사항 변경 허가)>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220-70 ○ 허가기간 - 당초 : 2014.4.14~6.30 - 변경 : 2014.7.3~9.30	허가	'14.07.03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충남 공주시	○○○	<공산성 내 CCTV설치> ○ CCTV 설치(5개소) - 매표소, 쌍수정, 진남루, 동문루, 토성 주변 ○ 사유 : 문화재 도난 및 재해예방, 백 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현지 실사 대비	허가	'14.06.18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충남 공주시	○○○	<p>&lt;영동루 토성지 주변 수목 정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목 정비</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형이 불량한 수목을 우선 제거하고 간벌 형식으로 시행하도록 합니다.</li> <li>- 관람객이 토성을 잘 인지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li> </ul> </li> <li>○ 사유 : 사적지내 경관개선,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현지실사 대비</li> </ul>	허가	'14.06.27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 고분군	충남 공주시	○○○	<p>&lt;송산리 고분 내 CCTV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TV 설치(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선관 132M 매설, 부대설비 1식</li> </ul> </li> <li>○ 사유 : 문화재 도난 및 재해예방,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현지실사 대비</li> </ul>	허가	'14.06.18
사적 제13호 공주 송산리 고분군	충남 공주시	○○○	<p>&lt;배수로 정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가 배수로 재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수로 설치(U형 측구, 콘크리트포장, 이중벽관 매설)</li> </ul> </li> </ul>	허가	'14.06.18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경기 광주시	○○○	<p>&lt;119안전센터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239번지 1호(문화재구역으로부터 380m 이격)</li> <li>○ 대지면적 : 938㎡, 건축면적/연면적 : 436.97㎡/554.27㎡, 지상2층</li> <li>○ 최고높이 9.6m</li> <li>○ 변경허가 내용 : 지하층 감소 등</li> </ul>	허가	'14.06.23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경기 광주시	○○○	<p>&lt;사방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16번지 일원(지정구역 내)</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나무 흙막이 70경간, 식생토낭쌓기 105m, 비탈면다듬기 등</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성곽분야 관계전문가의 현장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li> </ul> </li> </ul>	조건부 허가	'14.07.07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전남 강진군	이○○	<p>&lt;일반음식점 및 소매점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289-1 외(문화재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음식점: 면적 33㎡, 높이 4.2m, 경량철골조, 기존 콘크리트 바닥 위 건축</li> <li>- 소매점: 면적 32㎡, 높이 4.1m, 경량철골조, 기존 콘크리트 바닥 위 건축</li> </ul> </li> <li>○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터파기 공정 제외</li> <li>- 허가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14.12.31까지</li> <li>· 변경: '15.05.30까지</li> </ul> </li> </ul> </li> </ul>	허가	'14.06.18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전남 강진군	서○○	<p>&lt;마을회관 신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남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383-12(문화재구역으로부터 262m 이격)</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 건축면적 103.53㎡, 연면적 99.36㎡, 높이 5m</li> <li>-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 치장 쌓기, 평지붕</li> <li>- PE 단독 정화조 10인용</li> </ul> </li> </ul>	허가	'14.07.01
사적 제127호 진도 남도진성	전남 진도군	강○○	<p>&lt;농가창고 신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남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163-1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73m 이격)</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 면적 100㎡, 높이 4.5m</li> <li>- 용도: 농업용 창고</li> <li>- 구조: 시멘트블록조</li> <li>- 차폐조경: 후박나무(수고 1m) 20주</li> </ul> </li> <li>○ 변경내용: 허가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14.06.30.까지</li> <li>- 변경: '14.12.31.까지</li> </ul> </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14.06.30
사적 제135호 부여 궁남지	충남 부여군	○○○	<p>&lt;궁남지 내 부여 서동 연꽃 축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기간 : 2014.7.01~8.30(62일)/ 행사기간 : 2014.7.17~7.20(4일)</li> <li>- 임시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무대 및 객석 : 수상무대 247㎡ (19m*13m), 객석 550석(계단식), 음향, 조명 등</li> <li>· 체험코너(15개 부스 내외), 특관장(6개 부스), 경관조명, 관람객 편의시설(간이쉼터, 이동식 편의점 및 기념품 판매대, 이동식 화장실) 등</li> </ul> </li> </ul>	허가	'14.05.22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44호 고양 벽제관지	경기 고양시	○○○	<p>&lt;하수관거 정비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1번지 일원 등(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10m 이격)</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경=D200, 연장=0.125km, 면적=199.05㎡, 굴착=1.5m</li> <li>- 하수관거 : 고강성 PVC 이중벽관</li> </ul> </li> <li>○ 허가조건 : 사업 시행전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 보존정책과로 제출할 것</li> </ul>	조건부 허가	'14.06.23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경기 고양시	○○○	<p>&lt;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고양시 고양대로 2002번길 70-62(문화재구역으로부터 320m 이격/1구역)</li> <li>○ 변경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수개발에 따른 상부 보호공 설치(L1,200*W1,200*H950)</li> <li>- 공사기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 2014.01.14~2014.06.30</li> <li>· 변경 : 2014.01.14~2014.09.30</li> </ul> </li> </ul> </li> </ul>	허가	'14.07.04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충남 홍성군	○○○	<p>&lt;홍성 홍주읍성 내 전광판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홍주아문 앞)</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제23회 충청남도민 생활체육대회 D-100일 전광판 설치</li> <li>- 규격 : 가로 7.5m, 높이 3m</li> <li>- 설치기간 : 2014.6.30~10.20</li> </ul> </li> </ul>	허가	'14.06.20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일원	경북 경주시	○○○	<p>&lt;남간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721-2번지 일원(1구역(보존구역), 2구역,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80~180m 이격)</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구간 중 토지보상이 해결되지 않은 확포장 구간 일부 변경</li> </ul> </li> </ul>	허가	'14.06.20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유적	충남 공주시	○○○	<p>&lt;석장리 유적내 세계구석기 축제(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내용 : 변동 없음</li> <li>○ 사업 기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기간 : '14.4.28 ~ '14.06.30</li> <li>- 변경기간 : '14.4.28 ~ '14.12.31</li> </ul> </li> </ul>	허가	'14.06.1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서울 종로구	○○○	<p>&lt;백범김구선생 추모문화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38-1</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명 : 백범김구선생 추모문화제</li> <li>- 일시 : 2014. 6. 26. 14:00~18:00</li> <li>- 내용 : 식전행사(민속풍물패, 헌무 등), 추념식, 추모 문화제 등</li> <li>- 임시시설물 : 간이무대, 행사용 의자 50개</li> </ul> </li> <li>○ 허가조건 : 종로구가 문화재 보호,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함, 화기사용 금지 등</li> </ul>	허가	'14.06.20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서울 종로구	○○○	<p>&lt;8.15 광복절민족공동행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38-1</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명 : 8.15 광복절민족공동행사</li> <li>- 일시 : 2014. 8. 15. 09:00~18:00</li> <li>· 무대설치(8.14)/ 무대철거(8.15. 18:00 이후)</li> <li>- 내용 : 추모식, 문화축제, 사진 전시회 등</li> <li>- 임시시설물 : 간이무대, 행사용 의자 500개, 몽골텐트 2동, 테이블 등</li> </ul> </li> <li>○ 허가조건 : 종로구가 문화재 보호,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르도록 함, 화기사용 금지 등</li> </ul>	허가	'14.06.20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	경기 파주시	○○○	<p>&lt;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41-65(문화재구역으로부터 412m 이격/1구역)</li> <li>○ 변경 사업 내용(기간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 2013.06.24~2014.06.30</li> <li>- 변경 : 2013.06.24~2015.06.30</li> </ul> </li> </ul>	허가	'14.07.04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경기 여주시	○○○	<p>&lt;현장사무실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138-1번지(보호구역 내)</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설 건축물 설치 2동, 건축면적/연면적(54㎡/54㎡)</li> </ul> </li> </ul>	허가	'14.06.23
사적 제422호 하남 이성산성	경기 하남시	유○○	<p>&lt;도로개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271-1번지 일원(이격거리 303m)</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면적 69㎡, 측구 배수로 설치 등</li> </ul> </li> </ul>	허가	'14.06.2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	경기 광주시	○○○	<p>&lt;소방시설 설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남한산성 행궁 보호구역 내</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저수조(1기) : 10.8×4.1×3.7m, 호스릴 소화전(2기) : 0.6×0.9×1.2m</li> <li>방수층(1기) : 0.6×0.9×1.2m</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파기 공사 시 기 발굴조사 기관 입회하에 실시할 것.</li> </ul> </li> </ul>	조건부 허가	'14.06.23
사적 제500호 용인보정동 고분군	경기 용인시	이○○	<p>&lt;근린생활시설 신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031-3번지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295.5m 이격)</li> <li>○ 부지면적 1,866㎡, 건축면적/연면적 (358㎡/358㎡), 최고높이 7.7m</li> </ul>	허가	'14.06.23
사적 제500호 용인보정동 고분군	경기 용인시	○○○	<p>&lt;발굴조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0-5번지(지정구역 내)</li> <li>○ 대상면적 225㎡</li> </ul>	허가	'14.07.07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경북 경산시	○○○	<p>&lt;도시계획도로 개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경북 경산시 대동 59-4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5~50m 이격/2구역)</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도로 개설</li> </ul> </li> <li>○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굴조사 부분완료된 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을 시행하되, 잔여지역에 대하여는 발굴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토록 함</li> </ul> </li> </ul>	조건부 허가	'14.06.30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전남 여수시	○○○	<p>&lt;농촌체험장 주차장 조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전남 여수시 주삼동 835-8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15m 이격)</li> <li>○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 조성</li> <li>- 면적 1,445㎡, 성토 1.2m</li> <li>- 잔디블럭 포장: 348㎡</li> <li>- 콘크리트 포장: 1,064㎡</li> <li>- 보차도 경계석: 46m</li> <li>- 배수: 측구수로관 53m</li> <li>- 메쉬웬스(H=1.5m): L=22m</li> </ul> </li> </ul>	허가	'14.06.24

####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